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2014.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수탁연구과제『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인 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황준욱(소수연구원 대표)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구성 3

제2장 예술인 노동시장 실태 4

제1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5

1. 문화예술산업과 인력 5
2. 문화예술산업의 임금과 근로시간 7
3. 문화예술산업의 근속기간 11
4. 문화예술산업의 고용보험 적용률 16

제2절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문화예술인력 17

1.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문화예술인력 17
2. 문화예술인력의 임금 19
3. 문화예술인력의 근속기간 20
4. 문화예술인력의 고용보험 적용 22

제3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2

1. 실태조사 경위 22
2. 표본 23
3. 문화예술인력과 일 24
4. 문화예술인력의 소득 31
5. 문화예술인력과 고용보험 37

제3장 프랑스의 엥테르미탕 실업 지원 체계 ····· 43
제1절 개요 및 배경 ····· 43
1. 개요 ····· 43
2. 노동자(계약) 추정 원칙과 엥테르미탕의 특성 ····· 43
3. 탄생 및 변화 ····· 46
제2절 실업 보험 및 급여 ····· 48
1. 개요 ····· 48
2. 적용 대상 ····· 49
3. 참고 기간 ····· 51
4. 가입 기간 ····· 52
5. 수급 기간 ····· 57
6. 실업급여액 ····· 58
7. 재가입 ····· 60
8.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활동 ····· 60
9. 직업훈련급여 ····· 61
10. 실업 지원 ····· 61
11. 급여 수급 ····· 61
12. 고용주 확인서 ····· 62
13. 대상 번호(numéro d'objet) ····· 63
제3절 전문화연대기금 (Fonds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FPS) ·· 63
1. 개요 ····· 63
2. 운영 원칙 ····· 64
3. 수급 자격 요건 ····· 64
4. 수급 신청 ····· 65
5. 수급 자격 횟수 및 수급 기간 ····· 65
6. 수급액과 수급 개시 ····· 66
7. 수급 기간 중 활동 ····· 67
8. 직업적 지원 ····· 67

제4절 기여 68
1. 기여율 68
2. 징수 기관 69
제5절 공연예술관련 기타 사회보장 및 지원 체계 70
1. 저작권을 가지는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70
2. 재해보장보험(prévoyance) 71
3. 집단적 유급휴가제도 71
4. 재직중 직업훈련 72
제6절 시사점 73
1. 엥테르미탕의 활동 양상에 따라 적합한 실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73
2. 실업보험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실업보험 재원은 유일하고, 일반 실업보험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 74
3. 프랑스 엥테르미탕들은 실업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음 74
4.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은 노사는 물론 프랑스 사회가 역사 속에서 오래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물 75

제4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76
제1절 고용보험 적용 76
1. 기본방향 76
2. 적용대상 76
3. 적용방식 89
제2절 고용보험료 91
1. 고용보험 보험료 91
2. 보험료율 93
3.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94
제3절 구직급여 96
1 사업적용범위 96
2 실업 상태 및 실업의 인정 97

3. 구직급여 수급요건 99
4.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101
5 구직급여액 102
제4절 재정추계 104
1. 기본 재정추계 104
2. 재정추계 2: 다소 높은 실업빈도 106
3. 재정추계 3: 취약층의 구성비 증가 107

제5장 결론 109
1. 예술인 실태 요약 109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109
3. 주요 법률 개정안 109

참고문헌 113

부록 1: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문화예술 관련 직종 114
부록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123
부록 3: 프랑스 실업보험 노사협정 부칙 8장에 명시된 직종 128
부록 4-1: 예술인 복지법 165
부록 4-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169
부록 4-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171
부록 5: 문화예술진흥법 175

표목차

<표 2- 1> 문화예술산업 근로자 6
<표 2- 2> 문화예술산업의 임금과 근로시간 7
<표 2- 3> 문화예술산업 임금분포 8
<표 2- 4> 영상업 임금분포 9
<표 2- 5> 방송업 임금분포 10
<표 2- 6> 공연업 임금분포 11
<표 2- 7>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근속기간 12
<표 2- 8> 문화예술산업 근속분포 13
<표 2- 9> 영상업 근속분포 14
<표 2-10> 방송업 근속분포 14
<표 2-11> 공연업 근속분포 15
<표 2-12>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률 16
<표 2-13> 문화예술인력의 취업상태 18
<표 2-14>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직종으로 취업 중인 문화예술인력 18
<표 2-15> 문화예술인의 종사상 지위 19
<표 2-16> 문화예술산업 분야 문화예술인력의 임금수준 20
<표 2-17> 문화예술인력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21
<표 2-18> 문화예술인력 고용보험 가입 비중 21
<표 2-19> 실태조사 표본 25
<표 2-20> 계약의 유무 26
<표 2-21> 계약 유형 27
<표 2-22> 계약기간의 분포 28
<표 2-23> 종사상지위 29
<표 2-24> 1년 중 예술활동 기간 30
<표 2-25>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연간 소득 32

<표 2-26> 문화예술인의 부업 경험 ····· 34
<표 2-27> 문화예술인력의 부업 소득 ····· 35
<표 2-28> 문화예술인력의 총소득 ····· 36
<표 2-29> 문화예술인력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경험 ····· 37
<표 2-30>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 39
<표 2-31> 고용보험 가입 의향 ····· 40
<표 2-32> 고용보험 가입의사 없는 이유 ····· 41
<표 2-33> 고용보험료 부담 의향 ····· 42

<표 4-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 77
<표 4-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 80
<표 4- 3>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적용대상자 ····· 87
<표 4- 4> 산재보험 제도 현황 ····· 90
<표 4- 5> 고용보험 제도 현황 ····· 90
<표 4- 6> 기본 재정추계 설정 ····· 105
<표 4- 7> 재정추계 설정 2 ····· 106
<표 4- 8> 재정추계 설정 3 ····· 10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예술인은 예술활동의 특성 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누락되는 경향

-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0.5%에 불과한 낮은 수준
-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업 시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일 개연성이 높음.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확정

- 과제개요: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검토
- 세부 추진계획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적용가능한 방안 마련(2014년 6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14년 12월)
- 예술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형식으로 적용
  ※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의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예술인복지법을 제정(2011년 11월, 2012년 11월 시행)
- 예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2012년 11월)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 예술인 등이 참여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추진TF'를 운영(2011년 7월~2012년 7월)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논의(2013년 7월) 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추진' 계획을 보고
- 사회보장위원회(2013년 12월)에서 문화관광체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침'을 재확인
- 2014년 부처 업무보고(2012년 2월)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년 3월) 시 대통령 담화문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표

○ 고용보험평가센터 등 고용보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인 논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근로자 등이며, 예술인은 이 두 특성을 모두 띠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

2. 고용보험제도의 국제비교[1)]

○ 고용보험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가능

①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사회보험법에 고유한 '취업자' 개념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경계근로자(marginal worker)도 포섭하는 형태,
② 자영인 전체에게 당연가입방식의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형태,
③ 자영인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가입방식으로 하는 형태,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형태 등

1) 윤조덕외(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된 것임.

□ 제1유형: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사회보험법에 고유한 '취업자' 개념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경계근로자(marginal worker)도 포섭하는 형태

○ 독일에서는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취업자 개념을 사용

- 사회법전 총칙규정인 제4권의 제7조에서는 취업을 '비자영적 노동, 특히 근로관계에서의 노동'이라고 정의
- 고용보험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독일 사회법전 제3권에서도 동법상 당연가입의무가 있는 자로서 취업자 개념을 사용

○ 네덜란드에서는 종속적 취업자(abhängige Beschäftigte), 오스트리아에서는 피용자(Dienstnehmer) 개념을 사용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와는 별도의 고유한 용어를 사용

- 이는 근로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포섭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 근로자는 취업자에 해당하지만, 모든 취업자가 근로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영인과 근로자 중간지대에 있는 자도 취업자에 해당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회보험법상의 취업자가 되어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보호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게 됨.

□ 제2유형: 자영인 전체에게 당연가입방식의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형태

○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인 전체를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실업의 위험에 대비하는 입법례가 있음.

- 각국마다 형태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인과 근로자의 구별 없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영인에게도 당연가입 형태로 실업보험급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료 산정도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인 전체에게 고용보험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자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자영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청에 대한 구직신청과 법정 연금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할 것 등이 됨(예컨대 룩셈부르크).

- 그리고 일부 국가는 자영인은 근로자처럼 국민보험체계에 의무가입하고 실업보험에도 의무가입함. 실업보험의 경우는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는 실업보험의 기본급여보험과 이 토대 위에 소득비례보험으로 이원화하고, 기본급여보험에 대해서는 자영인은 근로자처럼 의무가입하고, 소득비례보험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함(예컨대, 핀란드).

□ 제3유형: 자영인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가입방식으로 하는 형태

○ EU 국가 중 덴마크는 모든 사회보험제도가 임의가입방식을 취하고 있음.

- 덴마크는 사회보험의 근본적용대상을 근로자보험으로 하지 않고, 국민개보험 형식으로 하여 자영인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운영하되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자영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청구권을 갖게 됨.

□ 제4유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각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형태

○ 독일에서는, 수공업자, 농림업종사자, 자영예술인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사회보험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직군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특수직역의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왔음.

- 예컨대 예술인은 자영인이지만,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이들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위하여 1981년 독립 단행법률인 「자영 예술인과 언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und Publizisten)을 제정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보호를 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보장은 건강과 노후생활이다. 즉 이 법률에

의해서 자영 예술인들이나 언론인들은 법정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원칙에 따라 적용이 결정됨.

- **그렇지만 이 법률은 사회보험상의 위험에 노출된 특정 자영인 그룹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1-1> EU국가의 고용보험제도 비교[2)]

	근거법률	기본원칙	적용범위
벨기에	.실업의 규율에 관한 칙령(1991) .실업의 규율에 관한 시행규칙 (1992)	.의무적 실업보험	.모든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 .직업훈련을 종료한 뒤 취업되지 못한 연소자
덴마크	.실업보험법(1970)	.임의적 실업보험	18세 이상 63세 이하의 자로서, .근로자 .최소 18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치고 늦어도 2주 이내에 실업보험에 가입한 자 .군 의무복무자 .자영인과 그를 도와주는 배우자 .공직에 종사하는 자
독일	.사회법전 제3편 (1997) ※ 실업급여II 에 관해서는 최근 제정된 사회법전 제2편	.근로자에 대해서 의무적 보험 ※2006년부터 자영인에 대하여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도입 ※2005년부터 실업급여수급권이 종료된 후 공공부조 유사의 실업급여II가 지급됨.	.의무적 실업보험은 모든 근로자와 장애연소자 ※임의적 실업보험은 자영인, 유럽연합 역외의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핀란드	.실업급여에 관한 법 (1984) . 실 업 급 여 재 정 에 관한 법률(1998) .실업수당에 관해	.실업보험은 기본적 실업급여를 보장하거나 소득에 비례한 실업급여를 실시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험가입제도를 실시	.기본적 실업급여 : 17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인 .소득비례적 실업급여 : 실업보험에 가입한 17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인 .실업급여청구권이 없는 17세 이상 64세 이하의 모든 실직자로서 고용촉

2) **박지순**(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참조**.

	서는 노동시장지원법(1993)	.실업수당제도는 취업한 적이 없는 자나 실업급여를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하여 실시함.	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
프랑스	.실업보험: 노동법전 L. 351-3 내지 L. 351-8 .실업수당: 노동법전 L. 351-9, 351-10	.실업보험 :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제도 .실업수당: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정에 의하여 부담되는 제도	.실업보험 : 모든 근로자(지배인, 업무집행사원은 제외) .실업수당 : 모든 실직자로서 실업보험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자
그리스	.명령 2961/1954 .법률 1545/1985 .법률 1892/1990	.실업보험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직 취업한 적이 없는 자
아일랜드	.사회보장통합법(1993)	.실업보험 : 의무적 가입에 의한 사회보험제도 .실업수당: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정에 의하여 부담되는 제도	.16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 및 직업훈련생, 자영인과 주급 38유로 이하의 근로자는 제외 .실업수당 :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
아이슬란드	.실업보험법 (1997) .자영인실업보험법 (1997)	.모든 생계활동자에 대한 의무보험으로서 능동적으로 취업노력을 다하는 실업자에게 포괄급여를 실시함	.근로자와 자영인
이탈리아	.완전실업 법률 427/1975, 법률 160/1988, 법률 223/1991 .부분실업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금전급여 .완전 실업시 : 통상적 실업급여와 특별실업급여 및 이주지원비 지급 .부분실업시 : 임금보충급여 지급	.완전실업으로서 통상실업급여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별실업급여대상자 : 건설업 종사자 .부분실업급여 : 일정한 부문과 지역의 근로자로서 완전실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법률 223/1991		
리히텐슈타인	.실업보험법(1969)	.의무적 실업보험	.모든 근로자와 직업훈련생
룩셈부르크	.법률(1976)	.실업시 급여지급제도	.모든 근로자 .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연소자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영인
네덜란드	.실업시 급여에 관한 법률	.다양한 급여를 포괄하는 실업보험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노르웨이	.국민보험법 (1997)	.소득비례적 의무보험, 소득상실을 전보	.국민보험에 가입한 67세 미만의 근로자 .자유직업인도 근로자로 간주함. .어부가 자영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됨.
오스트리아	.실업보험법(1977) .특별지원법(1973)	.근로자와 그와 동등시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직업훈련생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월 301유로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는 의무보험이 면제됨.
포르투갈	.명령 119/99(1999) .명령 186-B/99(1999)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제도	.모든 피보험근로자
스페인	.칙령 625/85(1985) .칙령 1/94(1994) .칙령 5/99(1999)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제도 .근로자와 동등시될 수 있는 자	.실업보험 : 사회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 및 그와 동등시될 수 있는 자 .실업수당 : 부양가족을 가진 실업자로서 기여금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소진한 자나 급여청구권은 없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자 부양가족이 없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45세 이상으로 기여금에 기초한 급여청구권이 최소한 12개월 이상 수령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자, 52세 이상의 실직자로서 연령을 제외하고 모든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자, 외국에서 귀환한 이주자, 최소 6개월 이상 수형생활을 한 자

스웨덴	.실업보험법(1997) .실업보험징수 및 지급에 관한 법률(1997)	.1998년부터 이원적 급여구성요소를 지닌 단일체계로 실업보험을 운영: ‣기본보장(실업수당을 대체)과‣보수관련적 실업급여(임의의 보험가입)	.기본보장 : 20세 이상으로 임의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실업보험상의 수급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대기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직업훈련교육요건을 갖춘 자 .보수관련적 실업급여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가입기간과 취업활동과 관련된 요건을 갖춘 자
영국	.실업시 급여에 관한 법률 (Jobseekers Act, 1995)	.실업보험 : 모든 근로자와 일정한 자영인을 대상으로 고정적 급여기준을 갖춘 실업급여 .소득에 기초한 실업수당제도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실업수당 : 일정한 수입기준 이하의 수입을 가진 실직자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식,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대신할 문화예술활동 계약서, 보수 또는 기준보수와 보험료율 및 보험료, 구직급여 등을 현행 고용보험제도(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포함)와 비교 검토하여 예술인에게 최적인 적용방안을 제시**
- **이러한 적용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 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추계를 실시한 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보험료율을 검토**

○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프랑스의 앵떼르미땅을 검토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

4. 연구의 구성

○ 다음 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년 8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의 자료를 분석하여 예술인의 노동시장 실태 및 고용보험에 대한 니즈를 분석

○ 제3장에서는 프랑스의 공연 및 영상 관련 9개 분야에 속하는 문화예술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앵떼르미땅을 소개하는 한편 이의 구조와 재정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

○ 제4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후 다양한 환경 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예술인의 정의, 공연 및 영상 분야 및 직종, 문화예술활동 및 계약관계 등 검토하는 한편 강제가입 방식과 임의가입 방식을 비교 검토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검토
-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보수, 기준보수,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 최저구직급여일액 등에 대해 검토
- 문화예술활동의 복수 계약과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부업을 포함한 복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부분실업과 온전한 실업, 부분실업급여제도 등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
-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추계를 실시

○ 마지막 장에서는 예술인 노동시장 실태를 요약한 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정리하고, 주요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제2장 예술인 노동시장 실태

○ 본 장에서는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예술인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

- 예술인 모집단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정확한 표본추출을 근거로 한 체계적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예술인의 노동시장 또는 경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
-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예술인복지재단이 실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의 자료를 통하여 예술인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수준까지만 변별가능[3)]

- 따라서 예술인은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문화예술인력'이라 부르기로 함
- '문화예술인력'에는 직업소분류에서 보듯

  281 작가 기자 및 출판 전문가
  282 큐레이터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283 연극 영화 및 영상전문가
  284 화가 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9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종사자

3) 문화예술인력 관련 직업은 부록 1을 참조

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직업군이 상당히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분류 수준에서 제대로 변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장의 예술인의 노동시장 상태 파악은 매우 제한적인 분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산업 분류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까지만 변별가능

- 따라서 '문화예술산업'을
  - 58 출판업
  -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출판업을 제외하도록 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두 산업 중분류 수준까지만 변별 가능한 자료를 제공

제1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4]

1. 문화예술산업과 인력

○ 문화예술산업(영상업, 방송업, 공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46.2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09%를 차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6월 급여기간 기준)에서 파악된 근로자는 13,471천 명
- 이 중 영상업이 65천 명, 방송업이 44천 명, 공연업이 36천 명
- 출판업(중분류 58, 148.7천 명)은 제외

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

○ 정규직이 63%(91천 명), 단시간근로가 29%(25천 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업에서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상업에서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으며, 공연업에서 기간제근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특수형태종사자는 2천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 영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당수 문화예술인력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문직이 41%(60천 명)를 차지하고 사무종사자가 29%(42만 명), 판매종사자가 15%(21천 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문화예술인력은 관리직(3천 명) 일부와 전문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 문화예술산업 근로자

(단위: 천 명, %)

	근로자				근로자 비중			
	문화예술산업	영상업 59	방송업 60	공연업 90	문화예술산업	영상업 59	방송업 60	공연업 90
전체	146.2	65.6	44.3	36.3	100.0	100.0	100.0	100.0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116.7	62.6	20.6	33.5	79.8	95.4	46.5	92.3
100인 이상	29.4	2.9	23.7	2.8	20.1	4.4	53.5	7.7
고용형태								
특수형태	2.1	1.5	0.1	0.5	1.4	2.3	0.2	1.4
재택/가내	0.1	0.1	0.0	0.0	0.1	0.2	0.0	0.0
파견	4.8	1.2	3.2	0.5	3.3	1.8	7.2	1.4
용역	3.8	1.2	1.7	0.9	2.6	1.8	3.8	2.5
일일	2.6	1.0	0.1	1.6	1.8	1.5	0.2	4.4
단시간	25.2	19.2	0.1	5.9	17.2	29.3	0.2	16.3
기간제	11.9	2.7	2.7	6.4	8.1	4.1	6.1	17.6
한시직	4.0	2.4	0.1	1.6	2.7	3.7	0.2	4.4
정규직	91.5	36.2	36.4	18.9	62.6	55.2	82.2	52.1
직종								
관리직	3.0	1.7	0.8	0.4	2.1	2.6	1.8	1.1
전문직	59.8	24.4	23.8	11.6	40.9	37.2	53.7	32.0
사무종사자	41.6	13.7	13.2	14.6	28.5	20.9	29.8	40.2
서비스종사자	2.3	1.1	0.0	1.1	1.6	1.7	0.0	3.0
판매종사자	21.3	18.6	1.5	1.3	14.6	28.4	3.4	3.6
농림어업숙련	0.7	0.0	0.0	0.7	0.5	0.0	0.0	1.9
기능원	5.9	0.7	3.7	1.5	4.0	1.1	8.4	4.1
조립조작종사자	1.9	0.4	0.9	0.5	1.3	0.6	2.0	1.4
단순노무종사자	9.8	4.8	0.5	4.4	6.7	7.3	1.1	12.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전문직 만을 문화예술인력으로 한정하면 약 5만 98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 영상업에 2.4만 명, 방송업에 2.4만 명, 공연업에 1.2만 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2. 문화예술산업의 임금과 근로시간

○ 문화예술산업의 월평균임금은 240만 원 정도

- **방송업에서 36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영상업과 공연업에서는 각각 190만 원과 175만 원 정도**

<표 2-2> 문화예술산업의 임금과 근로시간

(단위: 천 원/월, 시간/주)

	월평균 임금				총근로시간			
	전체	영상업 59	방송업 60	공연업 90	전체	영상업 59	방송업 60	공연업 90
전체	2,397.1	1,900.4	3,657.8	1,753.2	35.1	33.0	37.7	35.5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1,980.8	1,806.2	3,028.1	1,662.9	34.4	32.9	38.0	35.2
100인 이상	4,047.8	3,914.3	4,204.3	2,846.1	37.4	36.4	37.4	39.2
고용형태								
특수형태	2,071.5	2,261.0	1,920.0	1,463.2	34.5	37.3	35.5	24.7
재택/가내	577.3	577.3	0.0	0.0	13.5	13.5	.	.
파견	1,462.1	970.8	1,667.7	1,320.7	37.6	28.9	39.6	44.7
용역	1,430.7	873.0	1,788.5	1,488.2	37.2	30.9	38.1	43.9
일일	802.0	596.1	699.6	929.5	23.4	26.3	18.4	21.8
단시간	682.0	677.2	803.6	695.9	22.6	24.0	24.8	18.1
기간제	1,972.0	2,395.0	2,757.3	1,458.2	37.2	36.0	34.9	38.7
한시직	1,064.2	1,217.2	1,696.2	794.4	33.9	29.5	34.3	40.5
정규직	3,129.7	2,644.9	4,006.8	2,367.4	38.4	38.1	37.7	40.4
직종								
관리직	5,529.3	5,616.0	6,014.3	4,263.9	37.2	37.0	35.8	41.0
전문직	2,888.9	2,263.3	3,964.5	1,999.8	36.8	37.1	38.1	33.5
사무종사자	2,536.5	2,686.7	3,412.9	1,605.2	36.1	37.1	36.2	35.2
서비스종사자	1,198.6	733.0	2,843.7	1,623.0	31.5	25.1	36.6	37.8
판매종사자	1,067.2	869.4	3,273.9	1,422.0	27.6	26.0	36.6	39.3
농림어업숙련	1,896.7			1,896.7	40.7	.	.	40.7
기능원	2,560.0	1,990.7	2,840.9	2,148.0	40.8	43.5	40.5	40.3
조립조작종사자	2,156.6	1,745.4	2,141.1	2,524.4	39.1	34.7	38.6	43.5
단순노무종사자	1,015.6	783.9	1,371.8	1,230.2	31.5	26.4	39.0	36.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400만 원을 넘는 반면 100인 미만에서는 200만 원 미만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된 전문직은 289만 원인데 방송업에서 396만 원에 이르고 영상업에서는 226만 원 정도인 반면 공연업에서는 200만 원 정도의 다소 낮은 수준
- 단시간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68만 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방송업에서 80만 원으로 다소 높은 반면 영상업에서 68만 원, 공연업에서 70만 원 정도 수준
- 공연업의 기간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46만 원, 한시직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80만 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산업의 임금분포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 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 문화예술산업 임금분포

(단위: 천 명, %)

	인원	50	100	150	200	250	300	300+
		만원 미만						
전체	146.2	8.5	12.9	16.3	14.4	10.6	8.3	28.8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116.7	10.5	16.0	18.6	16.0	11.0	7.7	20.0
100인 이상	29.4	0.3	0.3	7.5	8.2	9.2	10.5	63.9
직종								
관리직	3.0	0.0	0.0	6.7	6.7	6.7	10.0	70.0
전문직	59.8	2.0	3.3	15.1	16.4	12.5	11.0	39.3
사무종사자	41.6	9.1	6.5	17.1	15.4	11.8	8.9	31.3
서비스종사자	2.3	30.4	17.4	17.4	13.0	8.7	4.3	0.0
판매종사자	21.3	22.5	47.4	13.6	5.6	3.3	1.9	6.6
농림어업숙련	0.7	0.0	0.0	28.6	28.6	14.3	0.0	0.0
기능원	5.9	0.0	1.7	13.6	20.3	25.4	13.6	27.1
조립조작종사자	1.9	0.0	5.3	10.5	31.6	10.5	10.5	15.8
단순노무종사자	9.8	18.4	33.7	31.6	11.2	3.1	1.0	1.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관리직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 전무하고, 전문직에서도 5% 정도에 불과하고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가까운 수준
-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주로 나타나, 문화예술인력 중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문화예술산업 중 영상업의 임금분포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관리직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 전무하고, 전문직에서도 5% 정도에 불과하고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이르고 있음.
-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주로 나타나, 문화예술인력 중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2-4> 영상업 임금분포

(단위: 천 명, %)

	인원	50	100	150	200	250	300	300+
		만원 미만						
전체	65.6	10.7	22.3	17.5	14.0	11.0	7.8	16.8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62.6	11.2	23.2	18.1	14.2	10.7	7.7	15.2
100인 이상	2.9	0.0	0.0	6.9	10.3	17.2	10.3	51.7
직종								
관리직	1.7	0.0	0.0	5.9	11.8	5.9	11.8	58.8
전문직	24.4	1.2	3.7	22.5	22.1	17.2	12.3	21.3
사무종사자	13.7	2.2	5.1	18.2	17.5	13.9	10.2	32.1
서비스종사자	1.1	54.5	27.3	9.1	9.1	0.0	0.0	0.0
판매종사자	18.6	24.7	53.8	11.8	4.3	2.2	1.6	2.2
농림어업숙련	0.0							0.0
기능원	0.7	0.0	0.0	28.6	28.6	42.9	14.3	0.0
조립조작종사자	0.4	0.0	25.0	25.0	25.0	0.0	0.0	0.0
단순노무종사자	4.8	25.0	52.1	18.8	2.1	2.1	0.0	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문화예술산업 중 방송업의 임금분포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은 1% 정도에 불과

- 한편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관리직에서는 대부분 300만 원 이상이고, 전문직에서도 300만 원 이상이 67%로 나타나고 있음.
- 전문직과 사무종사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에서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 저임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방송업 임금분포

(단위: 천 명, %)

	인원	50	100	150	200	250	300	300+
		만원 미만						
전체	44.3	0.2	0.9	8.4	11.5	10.6	9.9	58.2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20.6	0.5	1.5	10.2	16.5	13.6	10.7	47.6
100인 이상	23.7	0.0	0.4	6.8	7.6	8.0	9.3	67.5
직종								
관리직	0.8	0.0	0.0	0.0	0.0	0.0	0.0	100.0
전문직	23.8	0.0	0.4	5.5	8.0	8.4	10.5	67.2
사무종사자	13.2	0.8	1.5	11.4	14.4	11.4	9.8	50.8
서비스종사자	0.0							
판매종사자	1.5	0.0	0.0	6.7	6.7	13.3	6.7	60.0
농림어업숙련	0.0							
기능원	3.7	0.0	0.0	10.8	18.9	24.3	10.8	35.1
조립조작종사자	0.9	0.0	0.0	11.1	44.4	11.1	11.1	22.2
단순노무종사자	0.5	0.0	0.0	60.0	40.0	0.0	0.0	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문화예술산업 중 공연업의 임금분포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 25% 정도로 나타남

- 한편 3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관리직에서는 대부분 300만 원 이상이며, 전문직에서 100만 원 미만은 17% 정도이며 300만 원 이상도 19%에 이르고 있음.
-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비중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주로 나타나, 문화예술인력 중에서는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2-6> 공연업 임금분포

(단위: 천 명, %)

	인원	50	100	150	200	250	300	300+
		만원 미만						
전체	36.3	14.6	10.7	24.0	18.7	9.6	7.4	14.6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33.5	15.5	11.6	24.8	19.4	9.6	6.3	12.2
100인 이상	2.8	3.6	0.0	14.3	10.7	10.7	21.4	35.7
직종								
관리직	0.4	0.0	0.0	0.0	0.0	0.0	0.0	100.0
전문직	11.6	7.8	9.5	19.8	22.4	11.2	10.3	19.0
사무종사자	14.6	24.0	11.6	20.5	15.1	9.6	6.2	13.7
서비스종사자	1.1	9.1	9.1	36.4	18.2	18.2	0.0	0.0
판매종사자	1.3	15.4	7.7	46.2	15.4	7.7	7.7	0.0
농림어업숙련	0.7	0.0	0.0	28.6	28.6	14.3	0.0	0.0
기능원	1.5	0.0	6.7	20.0	26.7	20.0	20.0	13.3
조립조작종사자	0.5	0.0	0.0	0.0	40.0	20.0	20.0	20.0
단순노무종사자	4.4	13.6	18.2	43.2	18.2	2.3	2.3	2.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3. 문화예술산업의 근속기간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0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업에서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연업에서는 43개월, 영상업에서는 29개월로 현재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나 간헐적 노동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2개월로 짧지는 않으며, 한시직 근로자에서는 12개월로 상당히 짧게 나타나고 단시간근로에서는 8개월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영상업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속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고 한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9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인력에 해당하는 전문직에서는 평균 근속기간이 79개월로 짧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방송업 전문직의 근속기간이 138개월에 이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상업에서는 3년이 채 안 되고 공연업에서는 4년을 조금 넘는 수준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약 27%가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남

<표 2-7>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근속기간

(단위: 월)

	전체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
		59	60	90
전체	60.8	29.0	122.2	43.3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42.7	27.5	93.5	39.8
100인 이상	132.8	60.9	147.1	85.6
고용형태				
특수형태	21.2	24.9	10.0	10.6
재택/가내	9.5	9.5	.	.
파견	9.8	8.2	9.7	14.1
용역	22.2	7.3	33.5	20.1
일일	2.5	1.0	5.0	3.3
단시간	8.3	5.0	17.6	19.0
기간제	32.4	38.3	52.0	21.6
한시직	12.2	8.7	16.5	17.3
정규직	88.1	44.8	142.4	66.5
직종				
관리직	101.8	55.8	196.0	97.6
전문직	78.8	35.5	137.6	49.3
사무종사자	65.8	48.6	112.3	40.1
서비스종사자	27.7	13.4	21.6	42.2
판매종사자	15.1	8.5	85.0	31.2
농림어업숙련	61.9	.	.	61.9
기능원	74.0	46.5	87.2	54.7
조립조작종사자	40.6	35.2	38.4	48.6
단순노무종사자	20.7	10.5	47.1	29.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표 2-8> 문화예술산업 근속분포

(단위: 천 명, %)

	전직업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조작직	단순
전체 근로자	146.2	3.0	59.8	41.6	2.3	21.3	0.7	5.9	1.9	9.8
6개월미만	39.6	0.3	10.5	8.7	1.0	12.3	0.1	0.6	0.6	5.5
1년미만	15.4	0.2	5.0	4.5	0.2	4.2	0.0	0.2	0.2	0.8
2년미만	19.9	0.4	8.6	6.2	0.2	2.0	0.1	1.0	0.3	1.1
3년미만	10.3	0.3	5.2	2.8	0.2	0.5	0.1	0.4	0.1	0.6
5년미만	13.3	0.4	6.3	4.0	0.3	0.7	0.1	0.7	0.1	0.6
5년이상	47.6	1.4	24.2	15.3	0.3	1.5	0.2	2.9	0.5	1.1
비중										
6개월미만	27.1	11.2	17.5	20.9	44.1	57.9	15.8	10.6	31.4	56.0
1년미만	10.5	5.5	8.3	10.9	7.7	19.9	6.7	4.1	11.9	8.3
2년미만	13.6	12.8	14.3	14.9	10.6	9.5	15.2	17.1	17.1	11.4
3년미만	7.1	9.3	8.7	6.8	9.4	2.6	11.0	7.2	7.2	6.0
5년미만	9.1	12.1	10.6	9.7	14.3	3.1	14.0	12.1	7.3	6.6
5년이상	32.6	49.1	40.6	36.8	14.0	7.0	37.2	48.8	25.1	11.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반면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 넘는 종사자의 비중 역시 33%로 매우 높게 나타나 근속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되는 전문직을 보면, 6개월 미만이 1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1년 미만 역시 8%, 2년 미만 14%로 나타나며 5년 이상은 41%를 차지.

○ 문화예술산업 중 영상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약 37%가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남

- 반면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 넘는 종사자의 비중은 18%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은 종사자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영상업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되는 전문직을 보면, 6개월 미만이 24%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1년 미만 역시 13%, 2년 미만 20%로 나타나며 5년 이상은 21%를 차지.

○ 문화예술산업 중 방송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6개월 미만은 8%에 불과

<표 2-9> 영상업 근속분포

(단위: 천 명, %)

	전직업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조작직	단순
전체 근로자	65.6	1.7	24.4	13.7	1.1	18.6	0.0	0.7	0.4	4.8
6개월미만	24.3	0.3	5.8	2.1	0.8	11.8	0.0	0.1	0.2	3.3
1년미만	9.8	0.1	3.1	1.9	0.1	4.0	0.0	0.0	0.0	0.6
2년미만	10.1	0.2	4.8	2.6	0.1	1.7	0.0	0.2	0.1	0.4
3년미만	4.1	0.2	2.4	0.9	0.1	0.3	0.0	0.0	0.0	0.1
5년미만	5.8	0.3	3.3	1.6	0.1	0.3	0.0	0.2	0.0	0.1
5년이상	11.5	0.6	5.1	4.7	0.1	0.5	0.0	0.2	0.1	0.3
비중										
6개월미맘	37.1	16.6	23.6	14.9	67.4	63.6		20.1	43.1	68.4
1년미만	14.9	7.6	12.5	13.8	8.0	21.4		5.8	0.0	11.8
2년미만	15.4	14.8	19.7	19.1	7.2	9.2		21.5	13.5	8.5
3년미만	6.2	12.1	9.9	6.4	6.7	1.5		6.1	7.4	2.8
5년미만	8.9	15.8	13.3	11.8	4.8	1.5		25.2	8.8	2.7
5년이상	17.6	33.0	21.0	34.0	5.8	2.9		21.4	27.2	5.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표 2-10> 방송업 근속분포

(단위: 천 명, %)

	전직업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조작직	단순
전체 근로자	44.3	0.8	23.8	13.2	0.0	1.5	0.0	3.7	0.9	0.5
6개월미만	3.7	0.0	1.6	1.4	0.0	0.1	0.0	0.2	0.2	0.1
1년미만	2.6	0.0	1.1	1.0	0.0	0.2	0.0	0.1	0.2	0.0
2년미만	4.9	0.1	2.2	1.6	0.0	0.1	0.0	0.5	0.2	0.1
3년미만	3.0	0.0	1.5	0.9	0.0	0.1	0.0	0.3	0.1	0.1
5년미만	3.2	0.0	1.5	0.9	0.0	0.2	0.0	0.4	0.0	0.1
5년이상	27.1	0.7	15.8	7.4	0.0	0.7	0.0	2.2	0.2	0.1
비중										
6개월미맘	8.3	4.3	6.9	10.8		3.8		6.1	26.4	20.1
1년미만	5.8	1.0	4.8	7.3		10.7		3.8	19.4	2.1
2년미만	10.9	6.8	9.4	12.3		10.2		14.3	21.1	15.5
3년미만	6.7	3.2	6.5	6.7		8.8		6.9	6.3	16.1
5년미만	7.1	2.9	6.1	7.0		16.0		10.6	5.3	17.0
5년이상	61.1	81.9	66.3	56.0		50.4		58.4	21.4	29.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 반면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 넘는 종사자의 비중은 6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종사자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방송업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되는 전문직을 보면, 6개월 미만이 7% 미만으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1년 미만 역시 5% 미만, 2년 미만 10% 미만으로 나타나며 5년 이상은 66%를 차지

○ 문화예술산업 중 공연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약 32%가 6개월 미만으로 나타남

- 반면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 넘는 종사자의 비중은 25%로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은 종사자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공연업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되는 전문직을 보면, 6개월 미만이 27%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1년 미만 역시 7%, 2년 미만 13%로 나타나며 5년 이상은 29% 정도에 불과

<표 2-11> 공연업 근속분포

(단위: 천 명, %)

	전직업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조작직	단순
전체 근로자	36.3	0.4	11.6	14.6	1.1	1.3	0.7	1.5	0.5	4.4
6개월미만	11.6	0.0	3.1	5.2	0.2	0.5	0.1	0.3	0.2	2.1
1년미만	3.0	0.0	0.8	1.7	0.1	0.1	0.0	0.1	0.0	0.2
2년미만	5.0	0.1	1.5	1.9	0.1	0.2	0.1	0.3	0.1	0.6
3년미만	3.3	0.0	1.2	1.1	0.1	0.1	0.1	0.1	0.0	0.4
5년미만	4.3	0.1	1.6	1.5	0.3	0.2	0.1	0.2	0.1	0.4
5년이상	9.0	0.2	3.3	3.3	0.3	0.2	0.2	0.6	0.2	0.7
비중										
6개월미만	32.0	4.1	26.6	35.5	21.7	37.9	15.8	17.1	30.0	46.4
1년미만	8.3	6.4	6.6	11.3	7.5	8.4	6.7	4.3	9.2	5.0
2년미만	13.8	16.5	13.2	13.3	12.6	14.1	15.2	22.1	14.2	14.1
3년미만	9.1	10.1	10.7	7.4	12.0	11.2	11.0	8.6	8.4	8.6
5년미만	12.0	15.8	13.9	10.2	23.6	11.9	14.0	9.9	9.4	9.9
5년이상	24.8	47.1	28.9	22.3	22.6	16.6	37.2	37.9	28.8	16.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4. 문화예술산업의 고용보험 적용률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률은 85%로 낮지는 않은 편**

- **방송업에서 98%로 거의 대부분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영상업에서는 83%, 공연업에서도 73%의 예상보다는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음.**
-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되는 전문직을 보면, 전체적으로 88.8%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송업에서 99%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영상업에서도 83%에 이르고 있는 반면 공연업에서는 다소 낮아 80% 미만의 수준**

○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문화예술인력의 상당수는 이미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는 통상적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2-12>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률

(단위: 천 명,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률			
	전체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	전체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
전체	146.2	65.6	44.4	36.3	84.9	82.5	98.4	72.8
사업체규모								
100인 미만	116.7	62.6	20.6	33.5	81.5	81.7	97.0	71.4
100인 이상	29.4	2.9	23.7	2.8	98.7	99.3	99.7	88.8
직종								
관리직	3.0	1.7	0.8	0.4	85.1	82.0	91.7	84.1
전문직	59.8	24.4	23.8	11.6	88.8	83.3	98.9	79.4
사무종사자	41.6	13.7	13.2	14.7	84.8	93.4	98.4	64.4
서비스종사자	2.3	1.1	0.0	1.1	79.6	78.1	100.0	79.8
판매종사자	21.3	18.6	1.5	1.3	80.4	79.5	95.9	76.0
농림어업숙련	0.7	0.0	0.0	0.7	94.0			94.0
기능원	5.9	0.7	3.7	1.5	99.0	100.0	99.7	96.8
조립조작종사자	1.9	0.4	0.9	0.5	91.9	88.6	96.6	86.8
단순노무종사자	9.8	4.9	0.5	4.4	62.8	57.5	89.6	65.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 원자료.

제2절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문화예술인력

○ 통계청은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다양한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비정규직 근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음.

- 초기에는 8월에 연 1회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매년 3월과 8월 2차례 부가조사를 실시
- 부가조사에서는 다양한 설문을 통하여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근로형태별 근로자를 파악하는데, 이에는 한시적근로(기간제와 비기간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내근로)가 포함됨.
- 근로형태별로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근로복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수혜 여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

1.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문화예술인력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최근 1년 이내 실직자 포함)는 58.6천 명이며, 문화예술직종으로 종사하는 자(최근 1년 이내 실직자 포함)는 637천 명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중 취업자는 25,885천 명, 1년 이내 실직자(실업자 612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2,718천 명)를 포함하면 29,215천 명
- 521천 명이 현재 문화예술산업(출판업,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에, 573천 명이 문화예술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 취업
- 문화예술산업 일자리 또는 문화예술직종에서 일하다가 1년 이내에 실직하였으나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는 문화예술산업 기준 65천 명(실업자 20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45천 명), 문화예술직종 기준으로는 63천 명(실업자 21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42천 명)

- **문화예술 종사자 중 1년 이내 실직하고 미취업한 문화예술인력의 비중은 업종별로는 8.6~20.3% 정도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10%를 전후한 수준으로 판단됨.**

○ **현재(2014년 8월 기준) 문화예술직종으로 문화예술산업(출판업,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에 취업 중인 문화예술인력은 176.5천 명(출판업을 제외하면, 130.0천 명)**

<표 2-13> 문화예술인력의 취업상태

(단위: 천 명, %)

	문화예술인력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근로자 수				
문화예술산업	586	521	20	45
출판업	306	278	13	15
영상업	64	51	1	12
방송업	66	61	1	4
공연업	150	131	5	14
문화예술직업				
28′	637	573	21	42
취업상태 구성				
문화예술산업		88.9	3.4	7.7
출판업		90.8	4.2	4.9
영상업		79.7	1.6	18.8
방송업		92.4	1.5	6.1
공연업		87.3	3.3	9.3
문화예술직업				
28		90.0	3.3	6.6

직종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주: 문화예술산업(중분류 58, 59, 60, 90) 또는 문화예술직종(중분류 28)에서 일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일을 그만 둔 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년 8월) 원자료.

<표 2-14>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직종으로 취업 중인 문화예술인력

(단위: 천 명, %)

	문화예술산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
문화예술인력	176.5	46.5	25	32.9	72.2
비중	100.0	26.3	14.2	18.6	4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년 8월) 원자료.

○ **문화예술인력 중 임금근로자는 116.1천 명으로 65.8%를 차지**

- **이 중 85천 명(48.2%)가 상용직이고 31천 명(17.6%)가 임시직**
- **비임금근로자는 60.4천 명(고용주 6.9천 명, 자영자 53.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2%를 차지**
- **상용직 비중은 출판업과 방송업에서 높고, 공연업에서 18%에 불과한데 공연업에서는 60%가 자영자로 분류**

<표 2-15> 문화예술인의 종사상 지위

(단위: 천 명, %)

	취업자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문화예술산업	176.5	85.1	31.0	6.9	53.2	0.3
산업						
출판업	46.5	36.8	4.5	1.1	4.0	0.0
영상업	25.0	12.1	5.3	5.1	2.5	0.0
방송업	32.9	22.9	6.6	0.0	3.4	0.0
공연업	72.2	13.3	14.7	0.7	43.2	0.3
		구성비				
문화예술산업	176.5	48.2	17.6	3.9	30.1	0.2
산업별						
출판업	46.5	79.1	9.7	2.4	8.6	0.0
영상업	25.0	48.4	21.2	20.4	10.0	0.0
방송업	32.9	69.6	20.1	0.0	10.3	0.0
공연업	72.2	18.4	20.4	1.0	59.8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4년 8월) 원자료.

2. 문화예술인력의 임금

○ **문화예술인력 중 임금근로자(116천 명)의 평균 임금은 월평균 183만 원**

- **월평균 임금은 방송업에서 343만 원에 이르고, 출판업과 영상업에서는 200만 원을 넘는 반면 공연업에서 77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

-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은 없고, 100만 원 미만이 5%, 150만 원 미만이 9.5%, 200만 원 미만이 17.8%를 차지하며, 300만 원 이상도 33%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공연업에서 100만 원 미만이 11%, 150만 원 미만이 2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6> 문화예술산업 분야 문화예술인력의 임금수준

(단위: 천 명, %, 만 원/월)

	문화예술산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
취업자	116.0	41.4	17.3	29.6	28.0
평균임금	182.8	212.0	223.8	343.3	76.7
임금대별 비중					
50 만 원 미만	0.0	0.0	0.0	0.0	0.0
100	5.0	3.6	0.0	4.1	11.1
150	9.5	1.9	1.7	9.5	25.4
200	17.8	23.4	26.0	4.4	17.9
250	22.2	29.2	11.6	20.9	19.3
300	12.7	22.2	6.9	9.8	5.4
300만 원 이상	32.9	19.6	53.8	51.4	2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4년 8월) 원자료.

3. 문화예술인력의 근속기간

○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71.6개월로 그리 짧지는 않은 편**

- **방송업에서 98개월에 이르고 영상업에서 50개월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공연업에서도 6년 이상으로 긴 편**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85천 명)에서 87개월에 이르는 반면 임시직(31천 명)에서는 28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인데, 방송업에서는 6% 미만인 반면 출판업과 영상업에서 15~16%로 다소 높은 편이고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에서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

<표 2-17> 문화예술인력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단위: 천 명, %)

	문화예술 인력	문화예술산업				종사상지위	
		출판업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	상용직	임시직
전체 인력	116.1	41.4	17.3	29.5	28.0	85.1	31.0
평균근속기간	71.6	60.7	50.1	97.8	73.3	87.3	28.4
근속별 인원							
6개월 미만	14.3	6.6	2.6	1.7	3.5	3	11.3
1년 미만	10.9	5	0	2.2	3.7	6.6	4.3
2년 미만	21.5	6.6	4.2	7.6	3.3	16.9	4.6
2년 이상	69.2	23.5	10.3	18.2	17.5	58.7	10.6
근속별 구성							
6개월 미만	12.3	15.9	15.0	5.8	12.5	3.5	36.5
1년 미만	9.4	12.1	0.0	7.5	13.2	7.8	13.9
2년 미만	18.5	15.9	24.3	25.8	11.8	19.9	14.8
2년 이상	59.6	56.8	59.5	61.7	62.5	69.0	3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4년 8월) 원자료.

<표 2-18> 문화예술인력 고용보험 가입 비중

(단위: 천 명, %)

	취업자						미적용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가입	미가입	미적용		
문화예술산업	176.5	116.1	92.3	20.6	3.2	60.4	63.6
출판업	46.5	41.3	38.4	3.0	0.0	5.1	5.1
영상업	25.0	17.4	13.2	4.2	0.0	7.6	7.6
방송업	32.9	29.5	24.1	5.4	0.0	3.4	3.4
공연업	72.2	28.0	16.7	8.1	3.2	44.2	47.4
	취업자	가입률	가입률2	가입률3			
문화예술산업	176.5	52.3	79.5	81.8			
출판업	46.5	82.6	93.0	92.8			
영상업	25.0	52.8	75.9	75.9			
방송업	32.9	73.3	81.7	81.7			
공연업	72.2	23.1	59.6	67.3			

주: 가입률 = 가입자/취업자x100 취업자 대비 가입자

가입률2 = 가입자/임금근로자x100 임금근로자 대비 가입자

가입률3 = 가입자/(가입자+미가입자)x100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대비 가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4년 8월) 원자료.

4. 문화예술인력의 고용보험 적용

○ **문화예술인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92천 명으로 문화예술인력 취업자 대비 52%, 임금근로자 대비 80%**

- **비임금근로자 60천 명과 임금근로자 중 미적용 대상자 3.2천 명을 합해 63.6천 명이 미적용 대상으로 나타나며, 적용대상자 중 가입률은 82%**
- **가입률은 공연업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음으로는 영상업에서 낮은 편**

제3절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1. 실태조사 경위

○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술인 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승인자'를 대상으로 고용 및 계약, 작품 활동 여부, 소득,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조사를 실시**

○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5일~7월 4일(1개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를 실시**

-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으로 구분**
- **예술분야는 연극, 영화, 음악/국악, 연예, 무용, 미술/사진/건축, 만화, 문학으로 구분**
- **해당하는 직업은 배우, 작가, 연출가, 작곡가, 연주가, 기타로 구분**

○ 조사내용은 종사실태와 고용산재보험 관련으로 구성

- 종사실태는
  . 현재(혹은 최근) 계약 형태
  . 현재(혹은 최근) 체결한 계약 종류 및 고용 근로계약 시 취업형태
  . 예술활동 참여 방식: 예술활동 계약 기간, 종사 예술활동 재계약 상황, 계약 해지 및 만료 이유
  . 2013년 예술활동 현황
  . 2013년 중복 예술활동 여부: 중복 예술활동 작품 수
  . 2013년 예술활동 기간
  . 실업기간 생계비 마련 방법
  . 예술활동 이외의 부업 경험: 부업하는 이유, 최근 부업 유형, 직종
  . 연간 평균 소득

  등이 포함됨
- 고용산재보험 관련 설문은
  . 산재보험 제도 개선사항 인지 여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부담 방법, 보상신청 여부, 보상 여부,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일부 지원시 가입 의사 여부
  .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인지 여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부담 방법, 실업급여 수급 경험,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 고용보험 가입 의향: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 의향, 고용보험 가입 의사 없는 이유
  . 고용보험 납부 선호 방식

  등이 포함됨

2. 표본

○ 실태조사 표본을 예술분야별로 보면, 연극, 연화, 음악/국악이 각각 200~260명으로 60% 가까이 차지

- 그 외에 연예 및 무용이 각각 123~129명,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술/사진/건축, 만화, 문학이 35~123명으로 20% 정도를 차지
- 예술활동 유형별 표본분포를 보면, 창작이 61%(735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실연이 29%(353명)을 차지하는 한편 기술지원과 기획은 각각 36명과 76명으로 상당히 적은 수의 표본
- 직업별 분포를 보면, 배우와 작가가 각각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연출가가 160명, 작곡가가 100명, 연주가가 93명이며, 기타 직업이 33%를 차지
- 통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3%, 50대 이상이 13%를 차지
- 교육수준별로는 44%가 대졸이고 대학원졸도 29%에 이르러 상당히 고학력임을 알 수 있으며, 고졸 이하는 11% 정도

3. 문화예술인력과 일

가. 계약

○ 계약 없이 일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한 낮은 수준

- 대부분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나 서면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정도로 여전히 구두계약의 비중이 44%로 적지는 않은 편
-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비중을 보면, 예술활동 유형별로는 기술지원과 기획에서 각각 78%와 63%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실연에서는 40% 미만의 낮은 수준이고 창작에서는 50%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
- 예술분야별로 서면계약을 체결한 비중을 보면, 만화와 영화에서 각각 83%와 69%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음악/국악에서는 30% 정도로 매우 낮고, 연극, 연예, 무용에서도 40%를 전후한 낮은 수준
- 서면계약을 체결한 비중을 직업별로 보면, 작가, 연출가 및 기타 직업에서는 50%를 상회하는 반면 작곡가와 연주가에서는 20%대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계약 없이 일하는 비중을 보면, 문학에서 24%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이에 따라 직업별로는 작가에서, 예술활동유형별로는 창작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9> 실태조사 표본

(단위: 명, %)

표 본 특 성		표본 규모(명)	구성비(%)
성별	남성	712	59.3
	여성	488	40.7
연령	20대	271	22.6
	30대	492	41.0
	40대	279	23.3
	50대	109	9.1
	60대 이상	49	4.1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137	11.4
	대학	195	16.3
	대학교	525	43.8
	대학원 이상	343	28.6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61.3
	실연	353	29.4
	기술지원	36	3.0
	기획	76	6.3
예술분야	연극	258	21.5
	영화	250	20.8
	음악/국악	202	16.8
	연예	123	10.3
	무용	129	10.8
	미술/사진/건축	80	6.7
	만화	35	2.9
	문학	123	10.3
직업	배우	228	19.0
	작가	218	18.2
	연출가	160	13.3
	작곡가	106	8.8
	연주가	93	7.8
	기타	391	32.6
	무응답	4	0.3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표 2-20> 계약의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서면계약	구두계약	계약형태가 없다	구두와 서면계약 복합	무응답
전 체		1,200	48.0	43.7	6.8	1.2	0.4
성	남성	712	47.8	44.1	6.6	1.1	0.4
	여성	488	48.4	43.0	7.0	1.2	0.4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49.1	41.2	7.9	1.1	0.7
	실연	353	39.4	53.3	5.9	1.4	0.0
	기술지원	36	77.8	19.4	2.8	0.0	0.0
	기획	76	63.2	34.2	1.3	1.3	0.0
예술분야	연극	258	39.9	56.2	1.9	1.9	0.0
	영화	250	68.8	24.8	5.2	1.2	0.0
	음악/국악	202	29.7	61.4	5.4	2.0	1.5
	연예	123	40.7	51.2	8.1	0.0	0.0
	무용	129	41.9	52.7	4.7	0.0	0.8
	미술/사진/건축	80	51.3	37.5	8.8	2.5	0.0
	만화	35	82.9	17.1	0.0	0.0	0.0
	문학	123	54.5	21.1	23.6	0.0	0.8
직업	배우	228	43.4	52.2	3.5	0.9	0.0
	작가	218	58.7	25.2	15.1	0.9	0.0
	연출가	160	54.4	39.4	4.4	1.9	0.0
	작곡가	106	27.4	63.2	5.7	0.9	2.8
	연주가	93	23.7	65.6	9.7	1.1	0.0
	기타	391	53.5	40.4	4.6	1.3	0.3
	무응답	4	50.0	25.0	0.0	0.0	25.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중은 21% 정도에 불과

- 11%는 용역계약을, 10%는 위탁 또는 위촉계약을, 4%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42%가 계약의 유형을 잘 모르겠다고 나타나 구두계약의 상당 부분에서 계약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파악됨.
-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은 비중을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기술지원과 기획에서 각각 44%와 36%로 다소 높은 편이며, 창작에서는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실연에서는 25% 정도
- 이를 예술분야별로 보면, 무용, 연극, 영화에서 30%를 전후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음악/국악, 연예에서는 10%대 초반의 낮은 수준

- 직업별로 보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는 비중은 배우와 연출가에서는 30%를 넘는 반면 작가에서는 10% 미만

<표 2-21> 계약 유형

(단위: 명, %)

		사례수	고용·근로계약	용역계약	위탁·위촉계약	도급계약	계약없음	기타	잘 모르겠음	무응답
전 체		1,200	21.1	11.0	9.9	4.3	1.4	8.8	42.1	1.4
성	남성	712	20.2	13.9	10.8	3.8	1.5	8.1	39.6	2.0
	여성	488	22.3	6.8	8.6	4.9	1.2	9.8	45.7	0.6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16.3	11.4	11.8	4.9	1.9	10.5	42.0	1.1
	실연	353	25.5	6.8	7.1	2.3	0.6	7.4	48.7	1.7
	기술지원	36	44.4	16.7	0.0	11.1	0.0	0.0	25.0	2.8
	기획	76	35.5	23.7	9.2	3.9	1.3	3.9	19.7	2.6
예술분야	연극	258	30.2	6.6	6.6	3.1	0.0	7.4	46.1	0.0
	영화	250	31.6	19.6	4.0	5.6	0.4	4.4	33.6	0.8
	음악/국악	202	14.4	11.4	15.8	1.0	1.0	7.9	45.0	3.5
	연예	123	12.2	17.9	17.1	0.0	4.1	4.9	43.1	0.8
	무용	129	29.5	5.4	8.5	2.3	0.8	7.0	45.0	1.6
	미술/사진/건축	80	7.5	8.8	15.0	2.5	1.3	21.3	41.3	2.5
	만화	35	14.3	11.4	8.6	14.3	2.9	8.6	40.0	0.0
	문학	123	2.4	2.4	10.6	13.8	4.9	20.3	43.1	2.4
직업	배우	228	31.6	5.3	4.8	1.8	0.0	4.4	51.8	0.4
	작가	218	8.7	12.8	10.6	10.6	3.7	12.8	39.4	1.4
	연출가	160	32.5	14.4	8.8	3.8	0.0	6.3	33.8	0.6
	작곡가	106	6.6	13.2	23.6	0.0	2.8	8.5	43.4	1.9
	연주가	93	12.9	7.5	10.8	1.1	2.2	7.5	53.8	4.3
	기타	391	23.3	12.3	9.2	4.3	1.0	10.7	37.6	1.5
	무응답	4	0.0	0.0	0.0	0.0	0.0	0.0	10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

- 기간이 아닌 작품(건당)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적지 않은 편
- 서면계약 상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중이 2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며, 6개월 미만도 14%나 차지하고, 12개월 이상은 6%에 불과한 낮은 수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창작과 실연에서 각각 38%와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술지원에서는 10% 미만의 낮은 수준이며, 예술분야별로 보면, 문학에서 57%로 가장 높고, 음악/국악과 연예에서 4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연극, 영화, 무용에서는 20%대의 다소 낮은 수준이며, 직업별로는 작가, 작곡가, 연주가에서 40%대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2-22> 계약기간의 분포

(단위: 명, %)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기간의 정함없음	작품(건당)계약	기타	무응답
전 체		931	19.4	14.3	9.3	5.6	33.9	13.7	1.8	1.8
성	남성	576	19.4	13.7	9.4	4.0	36.8	13.7	1.4	1.6
	여성	355	19.4	15.2	9.3	8.2	29.3	13.8	2.5	2.3
예술활동 유형	창작	598	17.1	12.9	9.0	6.5	38.1	12.2	2.3	1.8
	실연	254	28.0	10.6	5.5	3.9	29.9	18.9	1.2	2.0
	기술지원	32	12.5	50.0	15.6	3.1	9.4	6.3	0.0	3.1
	기획	47	8.5	27.7	29.8	4.3	19.1	10.6	0.0	0.0
예술분야	연극	188	39.9	17.0	4.3	3.7	20.2	13.3	0.0	1.6
	영화	219	12.8	23.3	20.5	4.1	22.8	13.2	1.8	1.4
	음악/국악	145	17.2	4.8	6.2	4.8	46.2	17.2	2.1	1.4
	연예	99	13.1	8.1	8.1	9.1	43.4	14.1	1.0	3.0
	무용	82	26.8	22.0	6.1	4.9	28.0	8.5	1.2	2.4
	미술/사진/건축	60	13.3	8.3	8.3	3.3	40.0	20.0	3.3	3.3
	만화	31	6.5	19.4	9.7	12.9	32.3	16.1	3.2	0.0
	문학	107	7.5	5.6	3.7	9.3	57.0	10.3	4.7	1.9
직업	배우	170	38.2	12.9	4.1	2.4	23.5	15.9	0.0	2.9
	작가	194	9.3	12.9	8.2	8.8	44.3	10.3	4.1	2.1
	연출가	137	21.2	19.0	19.0	4.4	21.2	13.9	0.7	0.7
	작곡가	86	22.1	3.5	7.0	1.2	44.2	17.4	2.3	2.3
	연주가	61	8.2	3.3	6.6	8.2	49.2	21.3	1.6	1.6
	기타	281	16.0	19.6	10.0	6.8	32.4	12.1	1.8	1.4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0.0	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나. 종사상지위

○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은 253명 중 정규직은 7.1%에 불과

- 72%가 계약직이며 임시직이 11%를 차지
- 정규직 비중은 기술지원과 기획에서 13~15%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반면 창작이나 실연에서는 5~6% 정도에 불과하고, 예술분야별로는 미술/사진/건축에서 1/3(2명)로 다소 높고 음악/국악에서 17%로 높은 편인 반면 만화와 문학에서는 전무하고 영화에서는 1%를 넘는 매우 낮은 수준
-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창작과 실연에서 70%를 넘고 기술지원과 기획에서 60%대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표 2-23> 종사상지위

(단위: 명, %)

		사례수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무응답
전 체		253	71.5	11.1	9.5	7.1	0.8
성	남성	144	72.2	9.7	11.1	6.3	0.7
	여성	109	70.6	12.8	7.3	8.3	0.9
예술활동유형	창작	120	75.0	10.0	9.2	5.8	0.0
	실연	90	70.0	11.1	11.1	5.6	2.2
	기술지원	16	62.5	6.3	18.8	12.5	0.0
	기획	27	66.7	18.5	0.0	14.8	0.0
예술분야	연극	78	71.8	11.5	10.3	6.4	0.0
	영화	79	86.1	10.1	2.5	1.3	0.0
	음악/국악	29	62.1	10.3	10.3	17.2	0.0
	연예	15	46.7	13.3	26.7	6.7	6.7
	무용	38	60.5	15.8	10.5	10.5	2.6
	미술/사진/건축	6	33.3	0.0	33.3	33.3	0.0
	만화	5	80.0	0.0	20.0	0.0	0.0
	문학	3	100.0	0.0	0.0	0.0	0.0
직업	배우	72	76.4	6.9	12.5	2.8	1.4
	작가	19	78.9	15.8	5.3	0.0	0.0
	연출가	52	78.8	7.7	9.6	3.8	0.0
	작곡가	7	57.1	28.6	14.3	0.0	0.0
	연주가	12	66.7	16.7	0.0	16.7	0.0
	기타	91	63.7	13.2	8.8	13.2	1.1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다. 일한 기간

○ 1년 간(2013년) 예술활동을 한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

-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기획에서 다소 길어 8개월에 가까운 반면 나머지 유형에서는 6.2~6.5개월 정도이며, 예술분야별로는 무용, 미술/사진/건축에서 7개월을 넘어 상대적으로 긴 반면 영화나 연예는 6개월 미만으로 상당히 짧은 편

<표 2-24> 1년 중 예술활동 기간

(단위: 명, %)

		사례수	0개월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1개월	12개월	평균
전 체		1,200	2.8	22.5	32.9	15.4	10.5	15.9	6.5
성	남성	712	3.5	25.1	33.8	14.3	10.1	13.1	6.1
	여성	488	1.6	18.6	31.6	17.0	11.1	20.1	7.0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3.0	21.9	34.8	12.9	9.3	18.1	6.5
	실연	353	2.0	25.8	31.7	18.7	12.7	9.1	6.2
	기술지원	36	5.6	25.0	30.6	8.3	16.7	13.9	6.3
	기획	76	2.6	11.8	21.1	27.6	9.2	27.6	7.9
예술분야	연극	258	1.9	18.6	37.6	20.5	12.0	9.3	6.5
	영화	250	5.6	25.6	38.0	12.4	6.8	11.6	5.8
	음악/국악	202	0.5	25.7	28.7	12.9	12.4	19.8	6.8
	연예	123	4.1	26.8	33.3	15.4	6.5	13.8	5.9
	무용	129	0.0	18.6	28.7	22.5	14.7	15.5	7.2
	미술/사진/건축	80	5.0	13.8	22.5	13.8	17.5	27.5	7.6
	만화	35	0.0	11.4	34.3	17.1	8.6	28.6	7.7
	문학	123	3.3	27.6	30.1	8.1	7.3	23.6	6.4
직업	배우	228	1.8	28.9	36.4	17.5	11.0	4.4	5.6
	작가	218	4.1	25.7	33.5	8.3	7.8	20.6	6.3
	연출가	160	6.3	14.4	42.5	15.6	6.3	15.0	6.4
	작곡가	106	0.0	30.2	34.0	11.3	6.6	17.9	6.3
	연주가	93	1.1	24.7	23.7	16.1	18.3	16.1	6.9
	기타	391	2.3	17.4	28.9	19.2	12.8	19.4	7.1
	무응답	4	0.0	50.0	0.0	0.0	0.0	50.0	6.8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

- 직업별로는 기타에서 7.1개월로 다소 길고 배우가 5.6개월로 상당히 짧고, 나머지 직업에서는 6.3~6.9개월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6.5개월을 전후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1년 간(2013년) 12개월 예술활동을 한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고 전혀 하지 않은 예술가도 3% 정도

- 12개월 동안 예술활동을 한 비중은 기획에서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전혀 예술활동을 하지 않은 비중은 2.6%), 실연에서 9%를 넘는 수준(전혀 예술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은 2.0%)이며 창작과 기술지원에서는 각각 18%와 14% 정도
- 이를 예술분야별로 보면, 미술/사진/건축, 만화, 문학에서는 12개월 예술활동을 한 비중이 20%를 넘고, 음악/국악에서 20%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연극에서는 9%를 다소 넘는 낮은 수준이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12~16% 정도에 불과
- 직업별로 보면, 작가와 기타 직업에서 12개월 예술활동을 하는 비중이 20%를 전후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배우는 4.4%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나머지 직업에서는 15~18% 정도에 불과

4. 문화예술인력의 소득

가.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

○ 문화예술인력의 연간 총소득은 1천만 원을 다소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며, 이 중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은 5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이 458만 원 정도

- 예술활동 기간이 6.5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예술활동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은 8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 연간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기술지원에서 128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창작에서는 440만 원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고 실연에서도 509만 원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고, 기획에서는 1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25>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연간 소득

(단위: 명, %, 만 원/연)

		사례수	없음	1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평균
전 체		1,200	12.8	15.1	36.9	18.0	10.1	7.1	519.5
성	남성	712	11.5	14.0	36.0	18.1	12.1	8.3	579.6
	여성	488	14.8	16.6	38.3	17.8	7.2	5.3	431.8
연령	20대	271	11.1	24.4	35.8	19.2	6.3	3.3	355.5
	30대	492	12.4	12.8	39.6	17.7	10.6	6.9	536.5
	40대	279	15.1	6.8	33.7	18.3	14.0	12.2	694.3
	50대	109	9.2	19.3	37.6	16.5	10.1	7.3	540.7
	60대이상	49	22.4	24.5	32.7	16.3	4.1	0.0	213.3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16.6	17.1	36.2	16.6	7.9	5.6	439.9
	실연	353	7.1	13.3	41.4	22.1	9.9	6.2	509.3
	기술지원	36	5.6	5.6	22.2	16.7	25.0	25.0	1,285.0
	기획	76	6.6	7.9	30.3	13.2	25.0	17.1	973.8
예술분야	연극	258	6.2	10.1	41.1	22.5	13.2	7.0	589.2
	영화	250	20.0	6.0	36.8	16.4	11.6	9.2	606.5
	음악/국악	202	6.4	21.8	34.7	19.3	8.9	8.9	555.3
	연예	123	12.2	23.6	23.6	17.9	13.0	9.8	611.1
	무용	129	12.4	14.7	46.5	14.7	8.5	3.1	369.4
	미술/사진/건축	80	33.8	18.8	27.5	7.5	6.3	6.3	341.4
	만화	35	5.7	2.9	37.1	37.1	8.6	8.6	643.1
	문학	123	12.2	26.0	41.5	14.6	4.1	1.6	284.1
직업	배우	228	4.4	10.5	47.8	21.9	8.8	6.6	517.8
	작가	218	17.4	15.1	37.2	15.6	6.9	7.8	492.8
	연출가	160	21.9	7.5	32.5	19.4	11.9	6.9	538.8
	작곡가	106	5.7	33.0	34.0	18.9	3.8	4.7	378.0
	연주가	93	10.8	21.5	33.3	18.3	11.8	4.3	453.9
	기타	391	13.6	14.3	34.0	16.4	13.3	8.4	585.7
	무응답	4	50.0	25.0	25.0	0.0	0.0	0.0	11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 예술분야별로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연간소득을 보면, 영화, 연예, 만화에서 6백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 반면 문학에서는 3백만 원 미만이고, 무용과 미술/사진/건축에서는 3백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아주 낮은 수준
- 직업별로는 연출가, 배우, 기타 직업에서 5백만 원을 넘는 반면 작곡가는 4백만 원 미만
- 다른 실태조사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대상이 '예술인 활동증명 승인자'라는 점으로 보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이 매우 열악한 집단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이들 집단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 없는 비중은 13%에 이르고 있으며, 2천 만 원 이상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5)]

- 이를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창작에서 1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6~7% 정도로 낮은 편
- 예술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 없는 비중은 미술/사진/건축에서 34%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영화에서 20%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연극, 음악/국악, 만화에서는 6%를 전후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예술분야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직업별로는 연출가에서 20%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작가에서도 17% 정도로 높은 반면 배우나 작곡가는 4~6% 정도의 낮은 수준

나. 부업소득

○ 문화예술인력 4명 중 3명이 '소득이 모자라서' 부업을 하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에서 '프리랜서' 또는 파트타임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부업 경험 비중을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실연에서 77%로 더욱 높고 기술지원에서 6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예술분야별로는 미술/사진/건축에서 80%를 넘고, 연극과 무용에서도 80%에 가까운 수준이고 만화에서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문화예술인력의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은 458만 원이며 20%는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업소득을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기획에서 550만 원으로 다소 높고 기술지원에서 367만 원으로 다소 낮으며, 부업소득이 없는 비중은 19~22% 정도

5) 문화예술 10개 분야 각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전혀 없는 비중은 문학 33%, 미술 33%, 사진 51%, 건축 14%, 국악 35%, 음악 18%, 연극 13%, 무용 15%, 영화에서 36%, 대중예술 17%로 나타나고 있음.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문학 4%, 미술 6%, 사진 11%, 건축 48%, 국악 13%, 음악 18%, 연극 11%, 무용 13%, 영화에서 10%, 대중예술 36%로 나타나고 있음.

- **부업소득을 예술분야별로 보면, 문학에서 665만 원으로 가장 높고(부업소득 없는 비중은 20%), 만화에서 203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부업소득 없는 비중은 43%)으로 나타남.**

<표 2-26> 문화예술인의 부업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200	74.3	25.8
성	남성	712	73.2	26.8
	여성	488	75.8	24.2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73.9	26.1
	실연	353	76.5	23.5
	기술지원	36	66.7	33.3
	기획	76	71.1	28.9
예술분야	연극	258	78.7	21.3
	영화	250	71.6	28.4
	음악/국악	202	74.3	25.7
	연예	123	72.4	27.6
	무용	129	79.1	20.9
	미술/사진/건축	80	82.5	17.5
	만화	35	48.6	51.4
	문학	123	69.1	30.9
직업	배우	228	79.8	20.2
	작가	218	67.0	33.0
	연출가	160	70.6	29.4
	작곡가	106	77.4	22.6
	연주가	93	74.2	25.8
	기타	391	75.4	24.6
	무응답	4	10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표 2-27> 문화예술인력의 부업 소득

(단위: 명, %, 만 원/연)

		사례수	없음	1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1,200	19.5	6.9	36.0	21.8	12.8	2.9	458.2
성	남성	712	19.4	5.1	36.1	22.9	12.9	3.7	483.9
	여성	488	19.7	9.6	35.9	20.3	12.7	1.8	420.7
연령	20대	271	12.9	8.5	42.8	25.1	9.6	1.1	396.6
	30대	492	18.7	6.3	35.0	23.6	14.0	2.4	455.1
	40대	279	21.1	5.4	34.8	20.1	14.7	3.9	519.8
	50대	109	21.1	10.1	33.9	15.6	11.9	7.3	536.2
	60대이상	49	51.0	6.1	20.4	10.2	10.2	2.0	305.9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19.5	6.4	34.7	23.0	13.1	3.4	478.4
	실연	353	18.7	9.3	38.0	20.7	11.9	1.4	405.8
	기술지원	36	22.2	5.6	41.7	19.4	11.1	0.0	366.8
	기획	76	22.4	1.3	36.8	17.1	15.8	6.6	548.9
예술분야	연극	258	15.9	5.8	41.5	24.0	11.2	1.6	422.8
	영화	250	20.8	5.2	37.6	24.8	10.8	0.8	393.4
	음악/국악	202	23.8	7.9	30.7	19.3	14.9	3.5	464.8
	연예	123	22.0	8.9	35.8	22.8	8.9	1.6	356.2
	무용	129	10.9	7.0	38.8	20.2	18.6	4.7	549.8
	미술/사진/건축	80	15.0	8.8	37.5	21.3	10.0	7.5	560.9
	만화	35	42.9	11.4	31.4	8.6	5.7	0.0	203.3
	문학	123	20.3	6.5	27.6	20.3	18.7	6.5	664.7
직업	배우	228	14.9	7.0	45.2	22.8	9.2	0.9	389.8
	작가	218	26.1	6.4	31.7	19.7	12.8	3.2	492.0
	연출가	160	16.3	5.6	34.4	31.3	10.6	1.9	445.8
	작곡가	106	20.8	10.4	25.5	31.1	11.3	0.9	413.9
	연주가	93	22.6	7.5	35.5	16.1	15.1	3.2	426.3
	기타	391	18.9	6.4	36.8	17.4	15.6	4.9	504.2
	무응답	4	0.0	25.0	25.0	25.0	25.0	0.0	425.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

다. 총소득

○ **문화예술인력의 연간 총소득은 1천만 원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며, 소득이 없는 비중도 3%로 나타나고 있으며, 2천만 원 이상 상대적 고소득은 13% 정도**

- **총소득은 기술지원과 기획에서 1500만 원을 전후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창작 및 실연에서는 9백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낮은 수준**
- **예술분야별로는 847만 원(만화)에서 1020만 원(음악/국악)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28> 문화예술인력의 총소득

(단위: 명, %, 만 원/연)

		사례수	없음	100 만원 미만	500 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1,200	2.9	3.7	24.7	30.1	26.1	12.6	977.7
성	남성	712	3.1	3.2	23.3	27.5	28.1	14.7	1,063.5
	여성	488	2.7	4.3	26.6	33.8	23.2	9.4	852.5
연령	20대	271	1.8	5.5	27.7	39.5	19.9	5.5	752.1
	30대	492	2.2	2.8	21.5	33.5	27.2	12.6	991.5
	40대	279	2.9	1.4	23.3	20.1	33.0	19.4	1,214.1
	50대	109	0.9	5.5	31.2	22.9	22.0	17.4	1,076.9
	60대이상	49	20.4	10.2	32.7	16.3	18.4	2.0	519.3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3.5	3.8	26.8	30.1	24.5	11.3	918.3
	실연	353	2.0	4.0	23.2	34.0	27.2	9.6	915.2
	기술지원	36	2.8	2.8	8.3	19.4	36.1	30.6	1,651.8
	기획	76	1.3	1.3	18.4	17.1	31.6	30.3	1,522.7
예술분야	연극	258	0.4	1.6	24.0	34.1	27.5	12.4	1,012.0
	영화	250	4.0	1.2	23.2	33.6	26.4	11.6	999.9
	음악/국악	202	4.5	5.0	20.3	28.7	26.7	14.9	1,020.1
	연예	123	4.1	6.5	22.0	27.6	27.6	12.2	967.3
	무용	129	0.8	3.9	28.7	24.0	32.6	10.1	919.3
	미술/사진/건축	80	5.0	7.5	33.8	22.5	12.5	18.8	902.3
	만화	35	5.7	0.0	20.0	48.6	17.1	8.6	846.5
	문학	123	2.4	6.5	30.1	25.2	24.4	11.4	948.8
직업	배우	228	0.4	1.8	25.9	39.5	22.8	9.6	907.6
	작가	218	5.0	5.0	27.5	26.6	22.0	13.8	984.8
	연출가	160	3.8	1.9	20.6	32.5	30.6	10.6	984.5
	작곡가	106	4.7	8.5	22.6	32.1	25.5	6.6	791.9
	연주가	93	5.4	5.4	19.4	33.3	26.9	9.7	880.2
	기타	391	1.8	3.1	25.6	24.3	28.4	16.9	1,089.8
	무응답	4	0.0	0.0	50.0	25.0	25.0	0.0	535.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5. 문화예술인력과 고용보험

○ **문화예술인력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중은 37%**

- **예술활동 유형별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기획에서 5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실연과 기술지원에서는 30% 미만의 낮은 수준이고 창작에서는 34% 정도이며, 실업급여 수급 비중은 실연과 기술지원에서 70%를 넘는 반면 기획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9> 문화예술인력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경험

(단위: 명, %)

		표본	가입	가입비중	수급경험
전 체		1,200	400	33.3	37.3
성	남성	712	224	31.5	39.3
	여성	488	176	36.1	34.7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251	34.1	40.2
	실연	353	98	27.8	31.6
	기술지원	36	10	27.8	20.0
	기획	76	41	53.9	36.6
예술분야	연극	258	102	39.5	29.4
	영화	250	76	30.4	46.1
	음악/국악	202	67	33.2	32.8
	연예	123	26	21.1	19.2
	무용	129	48	37.2	29.2
	미술/사진/건축	80	25	31.3	48.0
	만화	35	11	31.4	81.8
	문학	123	45	36.6	48.9
직업	배우	228	69	30.3	33.3
	작가	218	80	36.7	45.0
	연출가	160	57	35.6	40.4
	작곡가	106	29	27.4	31.0
	연주가	93	28	30.1	25.0
	기타	391	135	34.5	37.8
	무응답	4	2	5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 예술분야별로 보면, 연극에서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연예에서는 21%에 그치고 있어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만화에서 82%로 매우 높고, 영화, 미술/사진/건축, 문학에서 5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 반면 연예에서는 20% 미만의 낮은 수준
- 직업별로는 작가와 연출가의 고용보험 적용 비중이 30%대 중반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반면 작곡가에서 다소 낮고, 실업급여 수급 경험 역시 작가와 연출가에서 40%대로 높은 편이며, 연주가에서 20%대로 다소 낮은 편

○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과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각각 38%와 31%로 나타나 '강제가입'이 아닌 듯한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서면계약 체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나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해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중반대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
- 미가입사유로 보험료 부담을 드는 비중은 기획에서 46%로 기술지원의 15%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예술분야별로는 연극과 만화에서 40%를 넘는 반면 무용과 문학에서는 30%를 전후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가입한 비중은 기술지원과 기획에서는 40%를 전후한 높은 수준이지만 창작과 실연에서는 30%를 다소 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예술분야별로 보면, 만화에서 40%를 넘는 높은 수준이고 연극, 영화, 음악/국악, 연예에서는 30% 정도의 수준
- 직업별로 미가입사유를 보면, 작곡가와 배우에서 보험료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작가와 기타 직업에서 수급조건 충족이 어려울 것 같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인력의 81%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중은 기술지원에서 90% 가까운 높은 수준이며, 창작에서 80%를 하회하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

- 예술분야별로 보면, 연예와 무용에서 각각 85%와 88%가 가입 의향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만화에서는 71%로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인 것으로 판단됨.
- 직업별로는 연주가, 기타, 배우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고 작가에서 76%로 다소 낮은 편

<표 2-30>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

(단위: 명, %)

		사례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수급조건 충족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서면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해서	가입 및 보험료 납부절차가 번거로워서	보장수준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기타
전 체		800	37.5	31.4	6.4	5.6	5.5	3.4	2.0	6.0
성	남성	488	36.5	31.1	5.5	6.4	5.1	3.7	1.6	7.2
	여성	312	39.1	31.7	7.7	4.5	6.1	2.9	2.6	4.2
예술활동유형	창작	484	37.0	31.0	6.8	5.6	5.0	3.5	2.1	6.8
	실연	255	39.6	30.2	5.9	6.7	4.7	3.5	2.0	5.1
	기술지원	26	15.4	38.5	3.8	3.8	19.2	3.8	3.8	7.7
	기획	35	45.7	40.0	5.7	0.0	8.6	0.0	0.0	0.0
예술분야	연극	156	43.6	29.5	4.5	8.3	3.8	3.2	2.6	3.2
	영화	174	38.5	29.9	5.2	5.2	8.0	1.7	1.7	6.9
	음악/국악	135	39.3	30.4	7.4	5.9	4.4	2.2	1.5	6.7
	연예	97	36.1	29.9	9.3	5.2	3.1	7.2	2.1	4.1
	무용	81	30.9	33.3	6.2	6.2	6.2	7.4	3.7	2.5
	미술/사진/건축	55	36.4	34.5	7.3	0.0	7.3	5.5	0.0	7.3
	만화	24	41.7	41.7	8.3	4.2	0.0	0.0	4.2	0.0
	문학	78	28.2	34.6	6.4	5.1	7.7	0.0	1.3	15.4
직업	배우	159	45.9	27.0	4.4	8.2	3.1	3.1	2.5	3.8
	작가	138	34.1	34.8	8.0	5.1	4.3	2.2	0.7	10.1
	연출가	103	39.8	28.2	3.9	5.8	7.8	2.9	2.9	5.8
	작곡가	77	48.1	28.6	3.9	6.5	1.3	2.6	2.6	5.2
	연주가	65	33.8	27.7	9.2	6.2	6.2	4.6	1.5	7.7
	기타	256	31.3	34.8	7.8	3.9	7.8	4.3	2.0	5.1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0.0	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표 2-31> 고용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200	80.8	19.3
성	남성	712	82.6	17.4
	여성	488	78.1	21.9
예술활동 유형	창작	735	79.2	20.8
	실연	353	81.9	18.1
	기술지원	36	88.9	11.1
	기획	76	86.8	13.2
예술분야	연극	258	79.1	20.9
	영화	250	81.2	18.8
	음악/국악	202	79.7	20.3
	연예	123	85.4	14.6
	무용	129	87.6	12.4
	미술/사진/건축	80	78.8	21.3
	만화	35	71.4	28.6
	문학	123	77.2	22.8
직업	배우	228	82.0	18.0
	작가	218	75.7	24.3
	연출가	160	80.0	20.0
	작곡가	106	80.2	19.8
	연주가	93	83.9	16.1
	기타	391	82.9	17.1
	무응답	4	50.0	5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26%를 차지하여 현재의 미가입 사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밝힌 예술인 중 고용보험료 부담 의향은 월 1만 원 미만이 25%, 1~2만 원이 35%, 2~3만 원이 24%

- 일하는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연간 6.5개월 일하고 520만 원 소득)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료율 1.3%를 적용하고 근로자 분담금을 적용하면 5천 2백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담 의향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임.

<표 2-32> 고용보험 가입의사 없는 이유

(단위: 명, %)

가입의사 없는 이유 (단위 : 명, %)		사례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수급조건 충족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가입 및 보험료 납부절차가 번거로워서	서면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기타	무응답
전 체		231	54.5	26.4	5.6	4.3	3.9	3.5	1.7
성	남성	124	55.6	22.6	5.6	5.6	4.0	4.8	1.6
	여성	107	53.3	30.8	5.6	2.8	3.7	1.9	1.9
예술 활동 유형	창작	153	52.9	28.8	5.9	4.6	4.6	2.6	0.7
	실연	64	59.4	25.0	4.7	3.1	0.0	4.7	3.1
	기술지원	4	50.0	0.0	25.0	0.0	25.0	0.0	0.0
	기획	10	50.0	10.0	0.0	10.0	10.0	10.0	10.0
예술 분야	연극	54	64.8	22.2	1.9	3.7	3.7	1.9	1.9
	영화	47	53.2	27.7	6.4	6.4	4.3	2.1	0.0
	음악/국악	41	56.1	14.6	12.2	4.9	4.9	4.9	2.4
	연예	18	66.7	22.2	0.0	5.6	0.0	5.6	0.0
	무용	16	68.8	25.0	0.0	6.3	0.0	0.0	0.0
	미술/사진/건축	17	29.4	29.4	17.6	0.0	5.9	11.8	5.9
	만화	10	50.0	40.0	0.0	10.0	0.0	0.0	0.0
	문학	28	35.7	46.4	3.6	0.0	7.1	3.6	3.6
직업	배우	41	65.9	26.8	2.4	2.4	0.0	0.0	2.4
	작가	53	52.8	34.0	1.9	1.9	5.7	1.9	1.9
	연출가	32	50.0	28.1	6.3	9.4	0.0	6.3	0.0
	작곡가	21	66.7	19.0	4.8	0.0	9.5	0.0	0.0
	연주가	15	60.0	13.3	6.7	6.7	0.0	6.7	6.7
	기타	67	47.8	22.4	10.4	6.0	6.0	6.0	1.5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표 2-33> 고용보험료 부담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월1만원 미만	월1만원-2만원 미만	월2만원-3만원 미만	월3만원-4만원 미만	월4만원-5만원 미만	월5만원 이상
전 체		969	24.9	35.4	24.1	7.0	4.9	3.7
성	남성	588	24.3	33.2	24.1	8.5	6.1	3.7
	여성	381	25.7	38.8	24.1	4.7	2.9	3.7
예술활동유형	창작	582	26.6	34.7	23.5	6.5	5.0	3.6
	실연	289	24.2	39.1	22.5	5.5	4.2	4.5
	기술지원	32	6.3	21.9	40.6	25.0	3.1	3.1
	기획	66	21.2	31.8	28.8	9.1	7.6	1.5
예술분야	연극	204	17.6	41.7	26.5	6.9	4.9	2.5
	영화	203	22.7	36.0	24.1	10.3	3.0	3.9
	음악/국악	161	23.0	35.4	25.5	9.3	3.1	3.7
	연예	105	28.6	37.1	18.1	4.8	4.8	6.7
	무용	113	32.7	30.1	21.2	4.4	8.8	2.7
	미술/사진/건축	63	38.1	28.6	23.8	6.3	3.2	0.0
	만화	25	24.0	24.0	44.0	4.0	0.0	4.0
	문학	95	26.3	32.6	22.1	3.2	9.5	6.3
직업	배우	187	26.2	38.5	22.5	5.9	3.2	3.7
	작가	165	24.8	38.8	20.0	4.8	7.9	3.6
	연출가	128	16.4	35.2	32.0	8.6	3.9	3.9
	작곡가	85	30.6	32.9	18.8	9.4	3.5	4.7
	연주가	78	21.8	42.3	19.2	3.8	6.4	6.4
	기타	324	26.5	31.2	26.5	8.3	4.6	2.8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2014년 6월)

제3장 프랑스의 엥테르미탕 실업 지원 체계[6)]

제1절 개요 및 배경

1. 개요

○ **프랑스 공연 분야 엥테르미탕 실업시 지원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

- **첫째는 실업보험 체계로, 2014년 5월 14일 체결된 실업보험대상 노사협정(convention) 중 부칙 8장과 10장에 규정**
- **8장은 주로 공연 분야 기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장은 예술인들을 대상**

○ **실업보험 제도에 더하여, 프랑스는 공연 분야 엥테르미탕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두고 운영**

- **실업보험 수급이 종료된 공연 분야 엥테르미탕에 대하여 전문화및연대기금(le Fonds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을 두어 추가적인 지원**

2. 노동자(계약) 추정 원칙과 엥테르미탕의 특성

○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크게 자기의 책임하에 노동을 하는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책임하에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활동**

---

6)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에 대한 설명은 프랑스 현지 출장 중 입수한 내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 민법상의 용역 계약을 통해 자영업자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 일정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소위 '정규직'으로 기간 제한없이 일을 하거나,
- 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사업체에 고용되어 '계약직'으로 일함

○ 프랑스의 문화예술인 대상 실업보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임금근로자들을 대상

- 자영업 용역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방식의 노동은 대상으로 하지 않음
-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명백한 용역계약도 아니고, 명백한 노동 계약도 아닌 형태(구두 계약 포함)로 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이는 주로 예술가의 활동에서 많이 발견
- 이 경우, 명백한 계약 형태만 고집하게 되면, 실업 보험 혜택의 대상이 축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 법은 예술가들의 활동에서 명백한 사적 용역계약이 아닌 경우, 노동이 이루어지는 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간주

○ 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professions et activités) 공연예술인에 대한 규정(Article L7121-3)에서 근로계약 추정을 규정

- "자연인이 보수를 대가로 공연예술인의 협력을 확보하는 모든 계약은 공연예술인이 상업영역에 속하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7]
- 이 추정은 보수의 지급 방식이나 액수 및 계약 당사자들이 부여한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연출자, 무대장치 종사자 등)이 포함
- 창작에 있어서 예술인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일절 받지 않는다거나 창작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가 예술인의 소유라거나 예술인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보조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 추정을 파기하지 않음[8]

---

7) Tout contrat par lequel une personne s'assure, moyennant rémunération, le concours d'un artiste du spectacle en vue de sa production, est présumé être un contrat de travail dès lors que cet artiste n'exerce pas l'activité qui fait l'objet de ce contrat dans des conditions impliquant son inscription au registre du commerce.

○ 이러한 고용체계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 및 시청각 분야 종사자들 중 제작자 등 고용주와 작가 등 프리랜서 방식으로 활동하는 독립 노동자(travailleur indépendant)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은 임금 근로자로 간주

- 이들은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은퇴연금 등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과 가족수당은 물론 직업 훈련에 있어 임금 근로자들의 일반적 권리를 향유
- 다만, 이들의 근로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단기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 노동의 특성을 가지므로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엥테르미탕이라는 구분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

○ 이러한 예술 분야 노동 추정원칙은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 역시 활동의 결과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초

- 프랑스 엥테르미탕 전문 연구자인 피에르 미셸 멩거(Pierre-Michel Menger) 교수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오랫동안 예술활동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것과
- 실업보험 체계가 만들어지기 오래전부터 정도 혹은 양태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술분야 직업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9]
- 또한, 그는 세계적으로 예술활동 혹은 노동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예술가의 지위는 노동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 섞여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 단속적 혹은 간헐적 노동자를 의미하는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이러한 논리적 기반하에서 구성

- 프랑스에서 임금노동자의 주요한 형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 계약을(CDI) 맺어 노동을 하는 사람과 기간을 정한 노동 계약을(CDD) 통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
-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기간을 정한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에 비해 계약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여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는 기간을 정한 계약의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

---

8) 노동부(2009), 『문화.예술산업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9) Menger 교수가 예술분야 저술가이며 정책전문가인 Anne Quentin에게 보낸 엥테르미탕 및 예술분야 노동에 관한 질문과 답변서에서 인용.

- 엥테르미탕이 활동하는 주요 영역인 공연 및 시청각 분야는 특성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빈번하게 활용
- 따라서, 엥테르미탕은 반복적인 실업을 경험하게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계약에 비해 소득과 고용안정성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상황에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 프랑스는 엥테르미탕이라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정한 계약(CDD d'usage)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런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한 실업보험 제도를 두어 운영
- 또한, 예술가의 활동 또한, 노동계약 추정 원칙에 따라, 명백한 용역계약이 없는 한 노동계약으로 추정하고 부칙 10장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실업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3. 탄생 및 변화

○ 프랑스에서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험 및 지원은 의료, 연금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조금 늦게 마련되었고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초기에는 영화제작사 및 공연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

- 1898년 산재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법이 제정
- 1913년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한 퇴직연금관련법이 제정
- 1930년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관련 법령이 제정
- 본격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시작은 1945년[10)]

○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는 당시 프랑스에 앞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던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를 기초로 하여 고안

-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시작된 독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노사가 공동관리하는 제도
- 반면, 영국은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했으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 출범 당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연대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영국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실제 제도는 영국과 독일의 중간 정도 지점에서 시작[11)]

10) 이승렬외(2013), 프리랜서 노동과 위험, pp.258.

○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의 기원은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시기인 1936년[12)]

- 이 해에 영화 분야 기술직과 관리자들에 대해 다수의 고용주들과 계약을 맺는 엥테르미탕을 위한 체계가 구축

○ 일반적 보험 체계 속에 엥테르미탕이 포함된 것은 1965년 1월 1일

- 프랑스에서 일반적인 실업보험 체계는 1958년 12월 31일 만들어졌으며, UNEDIC이라는 노사간 협의 조직를 만들고 노사간 협상에 의해 운영이 되도록 설계
- 일반실업보험 체계에 부칙 8장이 제정되었으며, 영화제작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 적용
- 1967년에는 전국 단위의 고용지원센터인 ANPE가 설립되었으며 공연분야를 담당하는 지점이 처음으로 설립
- 부칙 10장은 3년 뒤인 1968년 1월 1일자로 적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연분야 사업체들에게 실업보험을 적용한다는 것

○ 1969년에는 예술가와 재연자들이 엥테르미탕 체계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공연 분야 기술직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공연분야 예술가들과 모델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관련법이 제정

○ 2003년에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매우 큰 변화를 겪음

- 당시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적자상태에 처해 있었고 적자규모가 8억 4천만 유로에 이르게 되자 수혜자수 감소를 위해 규정을 개정
- 사용자단체와 일부 전국단위 노조는 당시 12개월로 되어 있는 실업보험 수혜를 위한 피보험 고용기간 산정시 참고기간을 부칙 8장 10개월, 부칙 10장 10.5개월로 줄이는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

---

11) 전게서, p.259.

12)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주요 역사는 Frédéric Chhum(2013), Les intermittents du spectacle. LexisNexis를 참고.

- 이로 인해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말까지 현재의 보험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2년에 걸쳐 참고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
- 파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이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그 결과 매년 전세계에서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아비뇽 축제를 비롯, 많은 공연과 축제가 취소[13]
-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국민들은 아비뇽 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의 취소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음

○ 하지만, 이러한 개혁방안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보여 주었고 다시 2014년 들어 보험 규정 개정이 이루어짐

제2절 실업 보험 및 급여

1. 개요

○ 프랑스 실업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기여를 통해 운영되는 보험체계[14]
- 실업보험 운영의 모든 사항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
- 하지만, 사회보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도 존재하며, 보험 체계의 운영 및 손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존재

○ 프랑스 공연 및 시청각 분야 엥테르미탕에 대한 실업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프랑스 실업보험 체계 속에 포함하지만 공연분야 노동 특성을 반영

---

13) 국제노동브리프, 2003년 7월-8월호, vol1 , N. 4.

14) 이후 설명되는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에 대한 설명은 2014년 6월 프랑스 방문시 입수한 공연분야 고용지원센터(Pôle emploi)의 내부 문건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설명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에 비교하여 주요한 변화인 기여율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자 개정을 반영하였다. 실업보험에 관한 2014년 5월 노사협정에서 개정한 또 다른 변화는 급여의 개시 유예기간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영하지 않았다.

- 프랑스 일반적인 실업보험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노사간 협상을 통해 운영 방법을 정하며, 급여의 명칭도 동일하며 회계단위도 단일
- 하지만,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단속적 노동을 하는 공연 및 시청각 분야 노동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 가입, 수급 조건 등에서 일반 원칙보다 완화된 특별한 규정을 두고 노사협정 본문이 아닌 부칙을 통해 이를 규정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일반 실업보험보다 손실 가능성이 커서 재정상태 악화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음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이 일반적인 실업보험과 같은 회계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험의 손익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
- 그런데, 엥테르미탕 보험체계가 일반적 보험체계에 비해 보다 완화된 가입 및 수급 자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실업보험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큼
- 실제로 2013년 기준 10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보험 전체의 재정상태가 악화

○ 프랑스에서 이러한 엥테르미탕과 일반 노동자들의 실업보험 체계를 동일한 회계단위에 두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직업적 연대 덕분

- 직종들간에 근로조건 및 소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좀 더 나은 근로조건 혹은 좀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 노동자들이 그렇지 못한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사회적 직업적 연대를 도모
-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직업적 연대에 기초한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누적되는 재정적 손실로 수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도 변화는 계속 진행

2. 적용 대상

○ 부칙 8장과 10장에 규정된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기간을 정한 계약(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을 통해 활동한 기간이 대상[15]

15) 실업보험관련 노사협정(2014.5.14.)은 총 11장의 부칙을 가지고 있다. 부칙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기자, 어

가. 부칙 8장

○ **부칙 8장은 프랑스 직종 분류체계 중 일반 노동자와 기술직(Ouvriers et techniciens)을 대상으로 하며 8장에 규정된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는 고용주의 활동 영역 조건이며 해당영역은 총 9개로,**
  1. **시청각 제작**(Production audiovisuelle),
  2. **영화 제작**(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3. **음향편집**(Edition phonographique),
  4. **창작 및 행사서비스 기술지원**
     (Prestations techniques au service de la création et de l'évènement),
  5. **라디오 방송**(Radiodiffusion),
  6 **및** 7. **민간 및 지원된 공연**
     (Spectacle vivant privé et spectacle vivant subventionné),
  8. TV **방송**(Télédiffusion),
  9. **애니메이션 제작**(Production de films d'animation)
- **두번째 조건은 노동자의 직종이며 부칙 8장에 규정된 실업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목록에 명시된 활동을 해야 함**
- **해당 직종은 위에서 설명한 9개의 영역에 대하여 각각 규정(첨부 1 참조)**
- **예를 들어 1. 시청각 제작 영역에서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제작 (애니메이션 제외) 과 교육 또는 홍보 목적의 영화 제작 분야의 분장사, 조명기사 등 총 193개 직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 **2. 영화 제작에서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 촬영 및 애니메이션 제외) 분야의 연출감독, 촬영 기사 등 101개가 규정**
- **각 영역에서 규정하는 직종 범위 및 규모는 상이하며 유사한 직종을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예를 들어 분장사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직종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명기**

부, 선원, 조종사 등 다양하다.

- **시청각 제작에서는 분장사(Maquilleur), 영화제작에서는 영화 분장사(Maquilleur cinéma) 등으로 각 영역에서 불리는 명칭으로 규정**
- **각 영역의 차이점을 반영한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부칙 8장에 규정된 직종이 각 영역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

나. 부칙 10 장

○ **부칙 1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는 그들의 고용주가 민간, 공공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직종에 관계없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형태에 관계없는 법인일 때도 적용**

3. 참고 기간

○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수급을 위해서는 참고 기간 중 507시간 동안 보험체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참고기간은 부칙 8장과 10장에 따라 각각 규정**

가. 부칙 8장

○ **부칙 8장에 규정된 경우, 참고 기간은 304일(10 개월)**

- **즉, 이전 304일 동안 최소한 507시간 이상 기간을 정한 고용 계약을 통해 근로를 하고 실업 보험에 가입되어야 적용**
- **실업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 304일동안 507시간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참고 기간과 가입 기간이 처음에는 335일 동안 557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30일 동안 추가적인 50시간을 더하는 식으로 변경**
- **즉, 365일 동안 607 시간 등이며, 이러한 확장은 계속적으로 진행**
- **한편, 해당 보험 가입기간 계산 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산된 보험 가입기간은 다음 보험가입 기간 산정에 활용되지 못함**

나. 부칙 10장

○ **부칙 10장에 규정된 예술인들에게는 8장 기술직 및 일반 근로자에 비해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319일(10개월 반) 기간 동안 507 시간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8장과 마찬가지로 재가입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사전에 대하여 보다 확장된 조건을 제시**
- **이전 310일 동안 507시간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35일 동안 531시간 동안 가입이 되었는지가 조건**
-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30일 동안 추가적인 48일(예를 들어, 365일 동안 579 시간)이 더 해진 시간동안 가입 여부를 판단**
- **부칙 8장과 마찬가지로 이전 실업보험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이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

다. 공통 규정

○ **부칙 8장과 10장 모두에 적용되는 가입기간 관련 다른 규정으로 참고기간의 종료 시점은 직전 고용 계약 종료시점이라는 것과 질병, 육아 등으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은 기간만큼 참고 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 등이 존재**

4. 가입 기간

○ **위에서 살펴 본 가입 기간(507시간 등) 판단 기준은 크게 노동 기간과인정노동기간(périodes assimilées)으로 구분**

가. 노동 기간

○ **노동 기간 계산 방식도 부칙 8장과 10장에서 다르게 규정**

○ 일반 노동자와 기술직에게 적용되는 8장에서 노동시간은 고용주가 신고한 노동시간

- 질병, 임신, 입양, 육아, 산재 등으로 노동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당 5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계산
- 노동시간 계산에서 매 월 208시간의 월별 한도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각 지역의 노동청(DIRECCTE)의 승인이 있으면 260시간까지 가능

○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칙 10장에서 고려되는 노동시간은 고용주가 신고한 노동시간 혹은 스탬프(cachets)

- 노사협정에 따르면, 1 스탬프는 동일한 고용주와 연속되는 5일 미만 노동을 하였을 경우 12시간과 동일하며, 5일 이상의 연속 노동의 경우 1 스탬프는 8시간과 동일
- 스탬프의 시간변환은 예술가가 행한 노동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고용주의 고용주월간보고(attestations d'employeur mensuelles, AEM)를 통해 증명
- 고용주가 예술가의 노동이 독립적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1 스탬프가 12시간으로 환산되며, 집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8시간으로 환산
- 부칙 10장에서 규정하는 노동시간에는 반복적 작업시간도 포함
- 질병, 임신, 입양, 육아, 산재 등으로 인한 계약 연장기간동안은 하루당 5시간씩 노동시간으로 산정
- 노동시간 산정의 최대치는 월당 28 스탬프
- 8장에 규정된 직업목록에 포함되는 연출자(réalisateur)는 예외적으로 예술가처럼 스탬프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
- 예술가 레지던스(résidence d'artistes)에서 이루어진 창작활동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실업보험 수급 자격이 종료된 엥테르미탕들에게 지급되는 전문화연대기금 수급 자격 획득은 위에서 설명한 실업보험 재가입 노동시간 산정 기준을 준용

나. 인정 노동기간

○ **인정 노동기간 역시 8장과 10장 대상에 각각 적용**

○ **8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은 질병, 양육과 계약기간 연장이 동반된 산재 등에 대해서 하루 5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으로 인정**

- **실업보험 급여를 받지 않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338 시간을 최대치로 혹은 수급 자격을 취득하는데 이용되는 연장된 참고기간의 2/3을 최대치로 하여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간들은 노동계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칙 10장에 적용되는 인정 노동기간에는 8장에 규정된 것에 더하여 강의 시간이 포함**

- **즉,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한 교육을 55시간 이내로(50세 이상에 대하여는 90시간)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
- **교육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종료 혹은 중단된 계약 모두가 포함**

○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은 해당 예술가의 전공에 맞는 자신의 역량을 전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인정된 교육기관이어야 함**

- **공립 혹은 계약을 맺은 사립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대학, 국가 혹은 지방 정부의 위탁을 받은 공공 직업훈련 기관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
- **민간 기관으로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공공지원을 받거나, 장인회의소(chambres de métiers et d'artisanat), 상공회의소(chambres de commerce et d'industrie)의 위탁을 받거나, 공연, 영화, 시청각,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국가로 부터 국가자격에 이르는 훈련을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기관**
- **각 지역의 공공기관인 음악, 무용, 연극 분야의 꽁세르바트와(conservatoires)들**
- **그 밖에도 국립시청각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 등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강의에 대한 기관들이 있음[16]**

- **특성상 강의는 부칙 8장의 대상에 적용될 수 없으며,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스탬프를 부여할 수 없음**

다. 직업훈련을 위한 휴가(congés individuels de formation, CIF)

○ **프랑스 노동자들은 실업보험 체계하에서 직업훈련을 위한 휴가를 가짐**

-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직업훈련휴가, 직업훈련 기금 등 직업훈련관련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활동보험및훈련기구(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 AFDAS)는 엥테르미탕에 대한 직업훈련휴가 제도를 따로 운영**

○ **이러한 환경하에서 AFDAS가 지급한 직업훈련휴가 1시간은 엥테르미탕의 실업보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노동 1시간으로 환산되어 산정**

- **훈련휴가 중 받은 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공연과 연관될 필요는 없음**

라. 노동시간 산정 사례

○ **지금까지 살펴 본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노동시간 산정 과정을 사례를 통해 설명**

<상황>

실업보험 수급 대상자는 2012년 1월 7일 부칙 8장에 의한 실업보험 수급이 종료되었다. 대상자의 이전 노동 및 실업 급여 수급 상황은 아래 그림에 정리되어 있다. 2011년 1월 31일 노동계약 종료 후 자격 심사 대기기간(7일)을 거쳐 수급자격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동안 170시간의 엥테르미탕 노동을 하였고, 다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을 하지 못하여 실업 급여를 수

16) 예술가의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의 목록은 2007년 4월 5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7년 4월 19일자 관보에 기재되어 있다.

급하였다. 이후 9월 한달 동안 역시 170시간의 노동을 하였고, 10월에는 실업급여, 11월에는 엥테르미탕으로 노동을 하였다.

<그림 1> 프랑스 엥테르미탕 참고기간 및 가입기간(노동시간) 산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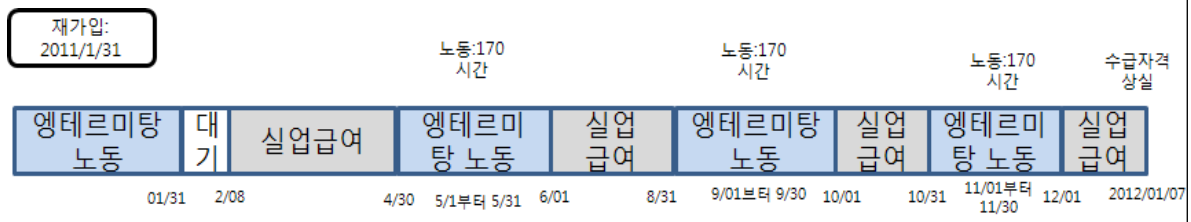

대상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 실업보험 체계에 재진입하기 위해 2012년 3월 25일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담당기관은 서류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수급 자격 획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동시간 산정은 이전 실업보험 급여 종료일(2012년 1월 8일) 직전 직전 노동계약 종료 시점인 11월 30일이 된다. 이로부터 부칙 8장에서 규정하는 참고 기간 304일이 되는 시점은 2011년 1월 31일 된다.

304일의 참고 기간 동안 가입 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일한 노동 시간의 총합이 되며 2011년 5월, 9월, 11월 각각 170시간씩 총 510시간이 된다. 따라서 해당 가입자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마. 활동(노동) 유형의 혼합

○ 부칙 8장에서 규정한 일반 노동자 또는 기술직으로 일하는 것과 10장에서 규정한 예술가로 일하는 활동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들의 노동시간은 형태에 관계없이 누적

- 두 가지 유형의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시간 산정은 두 단계로 구성
-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규정으로 노동 시간을 산정하는가를 결정
- 가입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 직전 노동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8장에 의한 304일, 10장에 의한 319일을 참고하고, 두 개 기간 동안 심사대상자가 더 많은 노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 규정으로 선택
- 두 번째 단계는 노동 시간 산정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선택된 규정의 방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산정

○ 부칙 8장 혹은 10장이 규정한 활동이외에 다른 유형의 활동(노동)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예: 참고 기간 중에 예술 활동 이외의 일을 하거나, 엥테르미탕이 아닌 정규직 노동을 하는 경우)

- 첫 번째는 보험 수급 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최종 노동 계약이 부칙 8장 혹은 10장에 해당되고, 노동 기간 조건이 충족되면, 참고 기간 중 다른 유형의 노동이 있더라도 그대로 수급 자격을 인정
- 두 번째는 최종 노동 계약이 부칙 8장 혹은 10장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업보험 수급 자격이 엥테르미탕이 아닌 다른 실업 보험 체계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이고, 동시에 부칙 8장 혹은 10장이 규정하는 급여 수급을 위한 노동시간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
- 세 번째는 대상자가 부칙 8장 혹은 10장의 노동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다른 보험 체계에 의해 수급자격을 부여 받거나 구제조치의 대상
-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칙 8장 혹은 부칙 10장 실업보험 체계를 선택하여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은 비급여 기간에 다른 실업보험 체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없음

5. 수급 기간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수급 기간은 243일 혹은 8개월로 퇴직시기(퇴직연금 개시시기)까지[17]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60.5세에 급여를 받는 상태이어야 하며,
- 둘째, 부칙 8장 혹은 10장 규정에 맞는 노동시간이 총 9,000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최근 3년간 1,521 시간을 노동하였거나 임금 노동자로서 다른 실업보험 체계에 최소 15년간 가입되었어야 하며,
- 셋째, 노령 연금에 100 분기 납입 인정이 필요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급여 수급자가 퇴직하여 100%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엥테르미탕 급여 수급은 중단

17) 퇴직 연령은 100% 연금을 받는 연령을 의미하며 1955년 이후 출생자들은 62세이다.

6. 실업급여액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급여액은 해당자가 받은 임금, 일한 시간, 정해진 계수 등 3 가지를 종합하여 결정

- 임금은 부칙 8장과 10장에 해당되는 노동을 통해 받은 것과 유급인 교육훈련휴가(CIF) 동안 받은 것만 인정되며, 부칙 10장 적용을 받는 예술가는 유럽연합과 스위스에서 받은 임금도 포함
- 각 계약에 대해 고려되는 임금 최대상한선이 존재
- 노동 시간 역시 부칙 8장과 10장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인정되며, 앞에서 설명한 유사 노동 시간 규정에 의해 인정된 노동 시간 중 임신, 입양, 산재에 의한 경우는 인정되지만, 직업훈련 및 강의 시간은 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노동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급여액 계산에 사용되는 계수들로는 부칙 8장, 10장에 공통 적용되는 일당 최소 급여액(allocation journalière minimale), 8장에 대해 일당최소급여액에 0.4를 곱한 값, 부칙 10장에 대해 0.7을 곱한 값 등이 있음
- 2014년 1월 1일 기준 일당 최고급여액은 31.36 유로이고[18], 부칙 8장에 대해서는 31.36 유로 × 0.4의 값인 12.54 유로, 10장에 대해서는 31.36 유로× 0.7 값인 21.95 유로가 계수로 활용
- 이 계수들은 실제 급여액이 아니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계수

○ 위에서 설명한 것을 활용하여 실제 급여액 산정 예를 제시

> 총 급여액은 임금 부분 결과(A), 시간 부분 결과(B), 계수 부분 결과(C)의 합으로 정해진다.
>
> 임금 부분은 일당 최소급여액인 31.36에 12,000 유로이내 해당자의 참고급여의 50%와 12,000 유로가 넘는 부분의 5%를 더한 값을 곱하고 전체 결과를 참고기간 중 수행한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18) 일당 최소급여액은 2014년 7월 1일 28.58 유로로 변경되었다.

$$A = \frac{\text{일당 최소급여액} \times [(\text{참고임금의 } 50\%(12,000\text{유로까지}) + (\text{참고임금의 } 5\%(12,000\text{유로 초과 부분}))]}{\text{급여산정 노동기간} \times \text{시간당최저임금}^{19)}}$$

이 된다.

시간 부분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되고,

$$B = \frac{\text{일당 최소급여액} \times [(\text{급여산정 노동시간의 } 30\%(60\text{시간}) + (\text{급여산정 노동시간의 } 10\%(600\text{시간 초과})]}{\text{급여산정 노동시간}}$$

계수 부분(C)은 일당 최소급여액의 40 %로 정해져 있다.

즉, 총 일당 급여액은 해당자의 임금, 노동 시간 등이 정해진 기준보다 얼마나 많거나 적은가를 계산하여 이를 일당 최소급여액에 반영하여 결정되는 방식이다. 계산을 통해 나온 총 일당 급여액은 2014년 1월 1일 기준 141.55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실제 계산을 통해 도출된 일당 총 급여액은 계수 중 하나인 일당 최소급여액(2014.1.1. 기준 31.36 유로보다 적을 수 있다.

○ 위의 과정을 거쳐 계산된 총 일 급여액에서 사회보장관련 기여액을 공제하면 순 일 급여액이 도출

-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퇴직보충연금 기여액, 사회부채 상환기여액, 일반적 사회적 기여액이며, 지역에 따라 지역의보 기여액이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총 일 급여액이 기준 금액인 31.36 유로에 미달하면 어떠한 공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31.36 유로에서 48 유로 사이이면 퇴직보충연금 기여가 면제[20)]

○ 엥테르미탕 실업급여 지급은 신청 후 일정기간 심사대기(7일) 및 임금 수준에 따른 지급지연 기간을 거쳐 지급

19) 2014.1.1. 기준(주 35시간) 9.53 유로

20) 일 최저급여액과 마찬가지로 총 일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48 유로 또한 매년 변경된다.

7. 재가입

○ **부칙 8장과 10장에 따른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재가입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이거나 종료 이전 엥테르미탕의 명시적인 요청에 의해 가능**

- **이전 급여수급 자격이 종료된 경우, 종료 이후 30일이 지나면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이전 노동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심사가 진행**

○ **자격 종료 이전 엥테르미탕의 요청에 의해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요청은 전화, 편지,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

- **요청자는 요청시 자격심사 기준인 최소 507시간동안 엥테르미탕 노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의 종료가 자동적으로 재가입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음**

8.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활동

○ **엥테르미탕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엥테르미탕은 노동계약을 통한 임금 노동 혹은 비임금 노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유예기간(jours de décalage)이라고 불리며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

○ **유예 기간은 8장과 10장에 개별적으로 적용**

- **8장에서는 임금을 받는 노동인 경우 (노동시간/8)×1.4일을 유예 기간으로 상정**
- **비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2 단계로 유예기간을 산정하는데, 우선 비임금 노동을 통한 소득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나누어 해당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임금 노동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된 노동시간/8)×1.4일을 유예 기간으로 산정**

○ **10장에서는 8장에 비해 유예 기간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

- **임금 노동에 대해서 (노동시간/10)x 1.3일을 유예기간으로 산정하고, 비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계산된 노동시간/10)x 1.3일을 유예기간으로 산정**

9. 직업훈련급여

○ **부칙 8장, 10장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미리 규정된 직업훈련을 위한 급여인 훈련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훈련급여는 243일 한도에서 지급되며 최대 20.34 유로가 지급**
- **하지만, 243일이 지난 후에도 실업보험 재가입이 이루어지면 훈련급여가 연장**
-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훈련종료보상 혹은 특정연대급여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

10. 실업 지원

○ **부칙 8장, 10장에 의한 실업보험 수급자는 급여이외에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추가 지원은 실업급여 및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인 고용지원센터(Pôle emploi)를 통해 이루어짐**
- **지원 내용은 구직을 위한 교통비 지원(철도 및 항공), 재취업 지원, 한부모가정의 아동 탁아 지원, 채용전 훈련지원 등**

11. 급여 수급

○ **급여 수급을 위해 엥테르미탕은 기본적으로 매월 인터넷 혹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활동 상황을 기재한 현황표를 작성하여 고지해야 함**

- **고지하지 않은 활동은 향후 실업보험 및 지원 자격을 얻는데 반영되지 못 함**

- 비고지에 대하여 엥테르미탕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Pôle emploi)는 실업급여 중단을 판단해 달라는 문서를 지방 고용노동청에 보낼 수 있음
- 고지해야 할 내용은 계약의 시작과 종료 일시, 노동시간, 받은 스탬프 횟수, 총 임금액, 고용주 이름과 성격 등

○ 엥테르미탕의 매월 활동 고지를 통해 급여 지급은 중단될 수 있음

- 수급 기간 중 활동 재개가 있는 경우, 고지 이후 급여 지급은 임시적이며, 고용주의 월간 증명서(Attestations d'employeur mensuelles, AEM) 혹은 유일간단확인서(Déclarations uniques et simplifiées, DUS Guso) 등 고용주의 확인서를 받은 이후 급여의 확정적인 지급 여부를 판단
- 일반 실업보험 및 기타 특수 실업보험 체계와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가 다른 점은 임시적 급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12. 고용주 확인서

○ 고용주는 증명서를 통해 엥테르미탕의 노동 기간을 증명

- 영화 및 공연 분야가 중심활동 분야인 고용주는 월간 증명서를 통해서,
- 공연분야가 중심활동 분야가 아닌 경우,유일간단확인서를 통해 증명
- 이 과정은 실업급여 담당 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 체계적으로 전달되며, 엥테르미탕은 확인서 중 노동자 부분을 센터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또한 고용주는 엥테르미탕을 채용하였을 경우 보험료 징수기관인 Urssaf에 고지하여야 함

○ 월간 증명서와 유일간단확인서 제출은 인터넷 혹은 문서를 통해 가능하고, 미리 약정된 고용주들과는 전산망(EDI)으로도 가능

○ 고용주는 노동계약 체결 이후 엥테르미탕의 노동활동에 관한 확인서인 월간 증명서와 유일간단확인서와는 달리 노동계약 발효 시점 이전에 엥테르미탕 채용을 Urssaf에 채용전 고지서(déclarations préalables d'embauche, DPAE)를 통해 고지하여야 함

13. 대상 번호(numéro d'objet)

○ **고용주 혹은 엥테르미탕 단위가 아닌 작품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상번호를 활용하여 동일한 공연, 제작에 관여되어 있는 고용주와 엥테르미탕을 묶어 행정적 관리**

- **대상 번호는 위에서 설명한 고용주의 월간 증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므로 일부분 강제적**
- **고용주는 부칙 8장 혹은 10장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번호를 신청하고 얻어야 함**
- **대상번호는 월간 증명서는 물론 임금 대장, 노동계약서에 기재**

제3절 전문화연대기금

(Fonds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FPS)

1. 개요

○ **앞서 설명하였듯이, 엥테르미탕들은 실업보험이외에 전문화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실업보험이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기여를 통해 운영되는 것에 반해, 전문화연대기금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

○ **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엥테르미탕을 지원**

- **한 측면은 보험급여이고, 다른 측면은 사회적 혹은 직업적 지원**

○ **급여적 측면에서 기금은 전문화연대 급여**(allocation de professionnalisation et de solidarité, APS)**와 권리종료후 급여**(allocation de fin de droits, AFD)**를 지급**

- **두 급여 모두 부칙 8장과 10장이 규정한 실업 급여가 종료되고 재가입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지급**
- **급여 지급은 실업급여 지급기관인 고용지원센터(Pôle emploi)에 위탁**

○ **사회적 혹은 직업적 지원측면에서 기금 운영은 엥테르미탕 퇴직보충보험과 질병/장애/사망 보험 운영기관인 오디엉스(Audiens)가 담당**

2. 운영 원칙

○ **전문화연대 기금은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급여를 받았던 대상자가 노동 기간이 부족하여 급여를 위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

- **일반적으로 부칙 8장과 10장 실업보험에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은 다른 실업보험 체계를 통해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이며,**
- **다음으로 전문화연대 급여, 구제조항[21], 특정연대 급여(ASS), 권리종료후 급여 순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

3. 수급 자격 요건

○ **전문화연대 기금의 두 급여인 전문화연대 급여와 권리종료후 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은 부칙 8장과 10장의 실업급여 조건과 기본적으로 동일(참고기간 중 필요 노동시간 충족)**

- **수행한 노동시간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차이**
- **추가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노동계약 밖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혹은 91일 이상 사회보험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은 질병 기간, 법령에 사전에 규정된 질병으로 사회보험에 의해 100% 환급된 질병 기간(기간의 장단은 상관없다)이며 이 경우, 일당 5시간이 노동시간으로 계산**

---

21) 구제 조항은 일반보험 체계, 다른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 체계, 부칙 8장과 10장 모두를 통해 보험 수급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모든 종류의 보험체계를 종합하여 122일 혹은 610 시간의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122일이다.

- **또한, 예술인과 기술직에 대해 120시간 한도내에서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행한 강의시간도 노동시간으로 포함**

○ **권리종료후 급여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특별한 요건을 두어 수혜자를 확대하려는 노력**

- **참고 기간이 365일로 늘어나고 부칙 8장과 10장 실업보험에 사용된 이전 노동시간이 자격요건 심사에 다시 이용 가능(참고기간내).**

4. 수급 신청

○ **전문화연대 급여의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하지만 권리종료후 급여의 신청 절차는 따로 규정**

- **권리종료 후 급여는 마지막 노동 계약 종료시점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하지만, 신청 시점이 마지막 노동계약 종료시점 이후 2개월 이후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마지막 노동계약 종료시점이 기존 실업급여 종료시점이후 2개월 이내일 때**
- **또한, 반대로, 권리종료후 급여는 기존 실업급여 종료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서류 이송 등 필요한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 **급여 신청은 기존 급여 종료 이후 마지막 노동계약이 종료되고, 급여 신청이 마지막 노동계약 종료 시점 이후 2개월이내일 때 접수 가능받**

5. 수급 자격 횟수 및 수급 기간

○ **전문화연대기금의 두 가지 급여 중 전문화연대 급여의 수급 기간은 실업보험 급여 기간인 243일과 동일**

○ 반면, 권리종료 급여에는 자격 획득 횟수와 급여 수급 기간이 연공에 따라 차이

- 자격 획득 횟수는 연공 5년을 단위로 5년 미만 엥테르미탕은 1번,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번, 10년 이상은 3번
- 연공의 개념은 부칙 8장과 10장이 규정하는 직업과 국가가 지정한 직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한 것을 의미
- 실업보험에 가입이 중단된 경우는 계속적 종사에 해당하지 않음
- 임신휴가 중 이동, 질병, 등록기간 중 훈련 기간은 중단이라고 보지 않음
- 권리종료후 급여 수급 기간도 계속된 연공에 따라 달라져서, 5년 미만은 61일, 5년 이상~10년 미만은 92일, 10년 이상은 182일

○ 전문화연대 기금의 두 가지 급여는 모두 부칙 8장과 10장이 규정하는 실업급여에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면 지급이 종료

- 두 가지 급여 수급 기간 중 노동계약의 종료가 다시 일어나면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짐

6. 수급액과 수급 개시

○ 전문화연대 급여의 총 급여액은 실업 급여액과 동일하지만, 순 급여액은 총 급여액에서 사회보장 기여 중 일반사회기여와 사회부채기여를 제외한 금액

○ 수급 개시시점도 실업급여와 동일하여 일정 기간의 지급지연 기간이 존재

○ 권리종료후 급여액은 하루당 30 유로이며 어떠한 사회적 기여도 공제되지 않고 지급도 지연기간 없이 즉시 이루어짐

7. 수급 기간 중 활동

○ **부칙 8장과 10장에 규정된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전문화연대 급여 수급 기간중에도 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급이 되지 않는 유예기간이 존재**

- **유예기간 산정은 실업급여와 동일**
- **권리종료후 급여에서 유예 기간은 월간 총급여/50(일)로 규정**

8. 직업적 지원

○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문화연대 기금은 사회보험 급여에 더하여 사회적 직업적 지원을 제공**

- **지원은 대상자가 그들의 직업적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제공**
- **대상자는 부칙 8장 혹은 10장의 실업보험을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5년간 수급한 자로 직업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내용은 직업전문화 단계별로 나누어지는데, 초기 단계의 직업적 인터뷰와 이후에 직업적 보조 및 지원으로 구분**

가. 직업적 인터뷰

○ **직업적 인터뷰는 면담을 통해 엔테르미탕의 필요를 판단하고, 직업적, 사회적,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찾아주는 방법**

나. 직업적 보조

○ **직업적 보조는 대상자가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취하는 동반 조치**

- **현황 평가, 직업계획 인증, 직업계획 수행과정 관찰 등의 조치들이 대상자의 개인적 필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짐**

다. 직업적 지원

○ **직업적 지원은 대상자의 직업화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

- **이전 단계인 직업계획 인증 혹은 현황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직업계획내 수행계획에 기초하여 개인적이고 특정화된 지원이 이루어짐**
- **지원의 종류는 다양하여, 일자리 접근을 도와주기 위한 재정 지원 및 현물 대여가 이루어지고, 이사 및 이동 비용 지원, 차량 대여 비용 지원, 임대 주택 보증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훈련기간 중 일상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무용수와 서커스단원들을 위해서는 직업전환 훈련도 제공**

제4절 기여

1. 기여율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기여율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규정되며 여기서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설명**

○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의 8%, 엥테르미탕은 4.8%를 기여**[22)]

○ **고용주 기여는 단기간 노동 계약에 대해 기간에 따라 추가로 증가**

- **기본적으로 3개월 미만 계약에 대하여 기여율이 0.5%p가 증가**
- **특히, 잠정적으로 1개월 미만일 때는 3%, 1개월부터 3개월간은 1.5%가 증가**

22) 2013.7.1. 기준은 고용주 7%, 엥테르미탕 3.8% 이었으며, 1년 사이 양 쪽 모두에서 1%p씩 증가하였다.

○ **사회보장 기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사회보장 기여 최고금액의 4배로 규정**

- 2014년 1월 1일 기준 12,516 유로

○ **실업보험 기여이외에 민간 분야 고용주들에게는 임금채권보장운영협회**(Association pour la gestion du régime de garantie des créances des salariés, AGS) **기여 3%가 추가**

2. 징수 기관

○ **엥테르미탕 실업보험료 납부는 징수센터**(centre de recouvrement) **혹은 예술인 사회보장 기관인** GUSO**가 담당**[23]

○ **징수센터는 국가 조직으로 공연분야가 주요 활동인 고용주들에게 고용된 엥테르미탕의 실업보험 기여를 담당**

- **징수센터에 납부하는 고용주는 항상적이거나 일시적 고용주**
- **항상적 고용주는 엥테르미탕 고용을 매우 정기적으로 하는 고용주**
- **징수센터는 항상적 고용주들에게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용주는 고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같이 징수센터에 다음 달 15일까지 송부**
- **고용주는 시간에 맞추어 월간증명서를 제출**
- **일시적으로 엥테르미탕을 고용하는 일시적 고용주들은 고용이 있을 경우, 월간증명서를 통해 현황을 알리고 보험료를 납부**

○ GUSO**는 공연활동이 중요 활동이 아닌 고용주의 엥테르미탕 고용에 따른 실업보험료 징수를 담당**

23) **공연분야 무한기간 계약에 대해서는 실업보험료 납부는 일반 사회보장 기관인** URSSAF**가 담당한다.**

- GUSO는 엥테르미탕의 보험료 징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분야 다양한 형태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단일 창구
- 따라서, 공연관련 고용을 하는 고용주는 GUSO에 하나의 형식으로 한 번만 신고하면 사회보장관련 신고가 이루어지게 됨
- GUSO가 담당하는 사회보험 영역은 일반 사회보험, 실업 보험, 보충적 퇴직 보험 및 질병보험, 직업훈련 급여, 유급 휴가, 산재보험 등 6개 분야

제5절 공연예술관련 기타 사회보장 및 지원 체계[24)]

1. 저작권을 가지는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 예술인이 작가, 작곡가 등 저작권을 가지는 저자인 경우에는 엥테르미탕과는 다른 사회보장 체계를 가짐

- 저자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 권리를 가짐
- 출판사들은 원천징수의 형태로 저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총 9%를 3가지 사회보장 보험 기여금으로 납부하며 이는 출판사 등 저작물 공급자가 원천적으로 납부
- 저자는 자신의 직업훈련을 위한 기여로 0.35%의 기여
-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 보험에 따라 상이
- 일반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저자의 소득 100%를 기준으로 1%를 기여하며, 일반사회기여보험, 사회부채상환기여는 각각 저자 소득의 98.25%에 7.5%, 0.5%를 기여

○ 저자인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AGESSA에 등록이 필수

- 이를 위해서는 저자활동을 통해 얻은 직전 년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 사회보험 기여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2014년 현재 8,487 유로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24) 이 부분은 노동부(2009), 『문화.예술산업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내용을 기초로 최근 개정된 사항을 보완하였다.

2. 재해보장보험(prévoyance)

○ 2009년 1월 1일자 새로운 노사 협정은 공연예술, 시청각예술(영화, 영상제작, 방송 및 라디오)음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엥테르미탕으로 일하는 관리자, 비관리자, 예술가, 기술직 모두에게 재해보장보험과 건강 비용에 대한 보험체계를 규정

- 보험 내용은 사망재해보상, 고아자녀지원보상, 자녀교육보상, 장애보상 등이며 내용과 보장 한도는 옵션으로 보험가입자가 선택 가능

3. 집단적 유급휴가제도

○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동안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의 일부로 부여되며 해당 고용주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기간이 짧고 이에 따라 단속적 노동이 이루어지며 관련되는 고용주가 자주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일반적 제도와 다른 조치를 두어 운영

- 프랑스는 공연과 영상예술 분야에서 상용직이 아닌 형태로 노동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한 제도와 기관을 두어 유급휴가제도를 운용

○ 일반적 제도와 차이가 나는 점은 유급휴가가 개별 사업체에서 개별 고용주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유급휴가창구(La caisse Les Congés Spectacles)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어 이 곳을 통해 휴가를 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지급한다는 점

○ 집단적 유급휴가제도 활용은 아래와 같은 대상에 적용

- 휴가 신청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같은 고용주와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노동법 D 762-1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주,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공연유급휴가창구에 등록한 공연 제작자, 영화제작사, 영상 제작 및 배급자 등

○ 기여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고(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기여율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는 14.30%가 적용

○ 이 제도를 통해 유급휴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참조기간(해당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동안 최소한 24일 동안 일하였거나 24번의 근로확인 도장을 받아야함
- 하지만 노동법 D. 762-8조에 의해 계약기간이 24일 혹은 24번의 근로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한 시간(혹은 한번의 근로)를 일하는 경우, 유급휴가 권리가 발생함을 의미
- 제공되는 휴가는 24일 노동(24회 스탬프) 당 2.5일이 주어짐

○ 휴가급여는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고용확인서에 기재된 기준임금과 참조기간동안 납부한 유급휴가기여액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의 1/10

4. 재직중 직업훈련

○ 재직중 직업훈련을 규정한 1971년 7월 16일자 법에 의거하여 1972년 9월 공연분야 노사 양측은 엥테르미탕 특성을 감안한 직업훈련기구인 AFDAS를 만들어 재직중 직업훈련을 관리

-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공연, 광고 및 배급, 여가(레저), 영화 및 영상 예술 분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까지 포함

○ 재직중 직업훈련은 엥테르미탕을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기여에 기반

- 2014년 현재 기여율은 분야별,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책정
- 예를 들어 공연 분야 엥테르미탕들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사업체는 임금총액의 1.3%, 10인 이상에서 20인 미만은 1.3%, 20인 이상은 1.6%로 책정되어 있으며 영화배급업에서는 10인 미만 1%, 10인 이상~20인 미만과 20인 이상은 1.6%

○ **훈련 비용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AFDAS가 지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당사자는 3 가지의 방법을 통해 지원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음**

- **첫째는 직업훈련계획(plan de formation)으로 주로 숙련 강화를 위해 단기간 훈련을 원할 때 사용**
- **둘째, 개인훈련휴가(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로 주로 직업전환을 위해 장기간 훈련을 원할 때 사용**
- **셋째, 개인훈련권리(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로 앞의 두 가지 훈련방법을 보충할 때 사용**

제6절 시사점

1. 엥테르미탕의 활동 양상에 따라 적합한 실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예술 활동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용역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는 실업 보험 등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명시적 용역계약의 경우는 독립 노동자(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체계를 적용하지 않음**

○ **우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한기간 계약으로 활동을 하는 예술인력(관리직, 비관리직, 기술직 모두 포함)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실업보험 체계에 가입되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음**

○ **기간을 정한 유한기간 계약에 대해서는 실업보험관련 노사협정에 부칙을 두어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직을 의미하는 엥테르미탕이라는 특별한 체계를 두어 운영**

- **엥테르미탕은 부칙 8장의 기술직과 일반 노동자, 부칙 10장의 예술가를 포함하며, 예술가가 이에 해당하는 근거는 예술활동의 노동 추정 원칙**

2. 실업보험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실업보험 재원은 유일하고, 일반 실업보험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

○ **부칙 8장과 10장을 포함하여 프랑스 실업보험 체계는 재원과 운영 모두 노사간 협상에 의해 운영되는 체계**

- **따라서, 기여, 보험료, 가입 조건 등 모든 사항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손익도 노사가 부담**
- **재정적으로 볼 때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도 일반 실업보험 체계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는 직종간 사회연대라는 큰 틀 속에서 지속**

○ **민간 주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는 최종 승인 단계에서 추인(agrement)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재정적 손실에 빠진 실업보험 기금에 융자를 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적 기금(전문화연대 기금)을 통해 보조적 역할을 수행**

3. 프랑스 엥테르미탕들은 실업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엥테르미탕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한 회차의 실업보험 급여가 종료되면 재가입 여부를 확인**
- **이를 위한 노동기간이 부족하면 전문화연대 급여 가능성을 검토**
- **급여가 종료되면 권리종료후 급여를 검토**
- **이외에 교육훈련, 유급휴가, 취업지원, 재해보장보험 등 수급자의 형편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 지원을 두고 운영**

4.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은 노사는 물론 프랑스 사회가 역사 속에서 오래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물

○ 엥테르미탕 제도는 수십년 동안 국가적 의제 설정, 노사간 협상, 사회적 파장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

- **2차대전 후 실업 문제 극복이라는 국가 명제를 노사간 협상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실업 보험 제도로 해결**
- **공연 및 영상 분야 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정문에 부칙을 달아 운영하였으며 이의 포함범위와 내용들을 재정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개정**

○ 갈등이 생길 때 마다 관련주체들간 협상의 통해 제도를 변화시켰고, 국가는 이를 조정

-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노조는 파업 등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협상력을 제고**
- **국가는 노사간 문제에 대해 추인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개입**
- **사회는 문화예술 향유 권리와 재정적 위험이라는 양 측 사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지지**

제4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제1절 고용보험 적용

1. 기본방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 중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정**

- **기타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사업(실업부조)을 통해 지원**

○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적용방식과 유사하게 설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아직 미정이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음**

2. 적용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

-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6. 그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25]

  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
-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예술(의 분야)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
-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제시

<표 4-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5) 시행령 제2조 제②항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제1항 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제③항은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별표의 세부기준에 따름.

	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만화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비고 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및 예술품 판매대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으로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

- 「예술인 복지법」 개정(제5조의2 신설)을 통해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
- 시행령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갖는 문화예술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등 공연 및 영상 분야로 제한하고, 문학, 미술(응용미술),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는 제외
- 이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직업중분류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중 <표 4-2>의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제한

<표 4-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세분류	직종	세부 직종(세세분류)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1)	28111 방송작가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2832	배우 및 모델1)	28321 배우 28322 개그맨 및 코미디언 28324 성우 28329 그 외 배우 및 모델
2834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2839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28391 무대의상 관리원 28392 소품관리원 28393 방송영화연출 보조원 28394 보조연기자 28399 그 외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2845	지휘자·작곡자 및 연주가	
2846	가수 및 성악가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주: 제외 직종

28112 작가 및 평론가, 28113 광고문 작성가, 28114 스크립터, 28119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323 모델

※ 프랑스의 공연 및 시청각 분야 엥떼르미땅 실업보험체계에서는 시청각 제작(Production audiovisuelle), 영화 제작(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음향편집(Edition phonographique), 창작 및 행사서비스 기술지원(Prestations techniques au service de la création et de l'évènement), 라디오 방송(Radiodiffusion), 민간 및 지원된 공연(Spectacle vivant privé et spectacle vivant subventionné), TV 방송(Télédiffusion), 애니메이션 제작(Production de films d'animation) 등 9개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라고 각 사업영역별로 직업분류(NAF)에 따른 해당 직종을 열거

※ 미국의 SAG-AFTRA는 영상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과 미국방송예술인협회(the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의 연합체로 배우(actors), 아나운서(announcers), 방송가(broadcast), 저널리스트(journalists), 무용가(dancers), 디제이(DJs), 방송기사작가(news writers), 방송기사편집인(news editors), 프로그램 호스트(program hosts), 인형조작자(puppeteers), 녹음(recording artists), 가수(singers), 스턴트(stunt performers), 가수(voiceover artists), 그 외 미

디어 전문직(media professionals) 등 165,000명을 대표하는 단체로 해당하는 다양한 직종에 대해 표준 계약금액 등을 제시하는 한편 'Actor's Guide to California Unemployment Benefits(2008, Screen Actors Guild, Inc.)'에서 실업보험 가입에 대해 해설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음

-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중
  - 2812 번역가
  - 2813 통역가
  -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 2815 출판물 전문가
  - 2811 작가 중 28111 방송작가를 제외한
  - 28112 작가 및 평론가
    - 28113 광고문 작성가
    - 28114 스크립터
    - 28119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 282 큐레이터·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중
  -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중
  - 2841 화가 및 조각가
  -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 285 디자이너
- 289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예술인 고용보험특례 적용을 위한 계약의 필요 항목

- 계약의 상대방: 예술인 고용보험특례 적용에서 사업주로 간주

- 계약기간·갱신·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의 개시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본다.

  계약기간의 완료일 또는 해지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 본다.

- 계약수행 소요시간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기간 전체에 걸친 소요시간 또는 계약기간 중 주당 평균 소요시간

- 계약금액 또는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요율 및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으로부터 단위기간(연, 월, 주, 시간) 당 보수(품, 인건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품)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보수 또는 단위기간 당 보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3항의 '임금'에 가름하는 것으로 일(여기서는 계약의 수행)의 대가로 예술인에게 임금, 봉급, 품, 인건비,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예술인복지법에서 서면계약에 관한 조항을 신설

- 제5조의2(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또는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글상자 4-1>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1항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로 정의

. 보험료징수법 상 근로자

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제2항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정의

. 보험료징수법 상 자영업자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제3호에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제4호에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

<글상자 4-2>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7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글상자 4-3>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2.30.]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으로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종전 제49조의4는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1.7.21.>]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나 '자영업자'**
  - **※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 중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당연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고용보험법 상 자영업자 중 자영업 특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당연제외**
- **고용보험법 상 적용제외자는 예술인고용보험 특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 65세 이후에 예술인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

<글상자 4-4> 고용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글상자 4-4> 고용보험 적용제외(계속)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다만 최근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개월 간 60시간 이상이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공연·영상 분야 예술인 약 95,099명 중 57.6%인 57.7천 명 정도로 추정**

<표 4-3>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적용대상자

(단위: 명)

구 분	음 악	무 용	연 극	영 화	연 예	국 악	합 계
합 계	1,070	720	2,853	1,445	696	470	7,254
창 작	495	346	737	762	280	89	2,709
실 연	529	347	1,878	283	358	353	3,748
기술지원/기획	46	27	238	400	58	28	797

주: 2014년 10월 17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12,596명 중 근로자인 정규고용직과 자영업자인 자영·고용주를 제외한 예술인고용보험 특례 적용대상자 7,254(57.6%)명의 문화예술분야 및 예술활동별 분포

○ 독립계약자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제외하여야

-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례는 현행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 즉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되 '근로자성'이 강한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것이 목적
- 그러나 적용대상 예술인 중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예술인 취업자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용자(계약의 상대방)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을 독립계약자로 보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해당되는 예술인이 계약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예술활동의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2) 그러한 예술활동의 노무 공급이 (그러한 노무 수행의 목적이 되는) 통상적인 과정의 외부에 있거나 또는 (그러한 노무 수행의 목적이 된) 통상적 노무공급이 행해지는 모든 사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러한 예술활동의 노무 공급이 수행된다.
  (3) 그러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관례적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직업, 전문영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따로 갖지 않는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으로 실업보험제도에서는 일단 취업자를 고용관계에 있는 것(employee)으로 간주하고, 취업자가 상기 세 조건(소위 'ABC Test')을 만족시킴을 사용자가 입증할 때에만 해당 취업자를 실업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일부 주에서는 이들 중 1 또는 2개 조건을 적용). 다만, 사용자가 취업자를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하는 것(misclassification)을 막고자 '취업자 분류법(Employee Classification Act)'를 제정, 적용하고 있음.
  ※ 'ABC Test'를 적용하지 않는 주는 20요소 검증(20 factor test)를 실시하는 미시간, 노스다코타, 버지니아, Master-servant rule 알라바마, 켄터키, 미네소타, 미시시피, Common law를 적용하는 미주리, 텍사스 등.

3. 적용방식

○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은 엄격히 구분하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강제가입토록 하는 것이 원칙

- '임의가입' 방식을 취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사회보험(여기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적용대상(근로소득 또는 보수가 낮은 자)이 사회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회보험제도의 근본 취지를 상실하게 됨.
- 둘째 문제는, 이와는 전혀 반대로, 사회보험이 대상이 되는 위험(고용보험에서는 실업)이 실현될 확률이 높은 집단(상대적으로 사회보험 기여도가 낮은 집단)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는 집단(상대적으로 사회보험 기여도가 높은 집단)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여 재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예술인을 '중소기업사업주'(자영업자)로 보아 '임의가입' 방식으로 설계한 예술인 산재보험을 보면, 실시 2년이 지났지만 가입자가 약 8백 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

- 이러한 현상은 예술인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의 미흡 및 산재보험료 부담에 따라 예술인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재 고용보험 자영업 특례에서는 자영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의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현재 자영자 및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주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
- 견실한 자영자 및 자영업주는 고용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 수급 확률이 없는 것으로 판단,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한편 폐업 위험이 높은 자영자나 자영업주만 가입함으로써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표 4-4> 산재보험 제도 현황

구 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보험설계사, 레미콘 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예술인* 등
보험료 부담	사용주 부담	사용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균등 분담	본인 부담
보험료율	업종·직종별 상이(0.6~34%), 예술인은 0.7~1.1%*		
적용방식	강제가입	·원칙 : 강제가입 ·예외 : 적용제외 신청 가능	임의가입

<표 4-5> 고용보험 제도 현황

구 분	근로자	자영업자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자영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자영업주(사업자 등록 필수)
보험료 부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	전액 자영업자 부담
보험료율	1.3%	2%
적용방식	강제가입	임의가입

○ 결론적으로 취업자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예술인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하였으므로 예술인 고용보험도 역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가입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
- 그러나 예술인 산재보험에서 임의가입 방식을 취함으로써 가입자가 미미한 수준인 점까지 고려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강제가입 방식에서 더 나아가 예술인 산재보험 역시 강제가입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제2절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 보험료

○ 고용보험법 상 보험료의 정의 및 별도 계정 운영

-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는 보험료를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밝힘.**
-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가 별도 계정임과 동시에 자영업 고용보험 역시 일반 고용보험과 별도의 계정임을 명시**

<글상자 4-5>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신설 2011.7.21.>

○ 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정의하고 이의 결정방식을 정의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을 각각 곱**

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보험료징수법 제3조(기준보수)는 보수총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보수를 보수로 간주**

<글상자 4-6> 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6.4.>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2.30.]

<글상자 4-7> 보험료징수법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7.>

[전문개정 2009.12.30.]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위한 기준보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

등급	기준보수
1등급	1,540,000원
2등급	1,730,000원
3등급	1,920,000원
4등급	2,110,000원
5등급	2,310,000원

2. 보험료율

○ 현재 고용보험료율의 최대치는 30/1000

- **보험료징수법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30/100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3%**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0.85%
- **자영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

<글상자 4-8> 보험료징수법의 고용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3.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 **현재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 **이러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2013년에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1.1%이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로 0.2%포인트 상향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경험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경험요율(experience rate)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재의 1.3%와 달리 적용할 타당성은 없음.**

○ 다만 특례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예술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프랑스 엥떼르미땅 사례에서 보듯, 예술인의 실업보험료율(12.8%)은 일반 근로자의 실업보험료율(6.4%)의 2배 수준**

※ 프랑스 사례 (예술인) 12.8% = 사용주 8% + 예술인 4.8%
(근로자) 6.4% = 사용주 4% + 근로자 2.4%

- 예술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배, 즉 2.6%로 설정할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을 30/1000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0.25~0.85%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4% 이하로 설정되어야 함.
- 예술인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보험료율의 설정을 위한 대안적 방안은
  1. 예술인 실업급여 재정 수지: 이전 3개년도
  2.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 계산
  3. 익년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반영

  하는 방식을 도입

○ 실업급여 재정추계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로 설정하여 기본추계를 실시

- 대안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에 해당하는 2.6%로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재정추계를 추가로 실시할 것임.
- 또한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나리오별 실업급여의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할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

-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예술인의 보수총액은 예술인이 체결한 (하나 이상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합
- 사업주(예술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상대방)는 예술인의 실업급여 보험료 중 예술인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분담금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와 함께 납부
- 예술인의 보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급별 기준보수액(현재는 5개 등급)을 설정하여 가입자가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서 서면계약이 필수요건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보수에 가름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 이러한 논의의 저변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이 분명하게 드러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예술인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

○ 다만 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부터의 보수총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를 기준보수로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안은 고려 가능

- 예를 들면, 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부터의 보수총액이 최저임금(2015년 월 116.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이러한 예술인의 기준보수를 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 이의 1.3%에 해당하는 월 15,158원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분담

제3절 구직급여

1 사업적용범위

○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 사업으로 구성

- 고용보험법 제19조에서 제36조까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규정
- 실업급여 사업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사업으로 구분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사업 등을 포함

<글상자 4-9> 고용보험사업: 실업급여사업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적용의 핵심은 구직급여 사업

- **취업촉진수당이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사업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초기에는 사업적용을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 예를 들어, 현재 교육훈련시장에 존재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정 시점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운영**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조직 및 기관을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체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실업 상태 및 실업의 인정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문화예술활동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이러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

-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문화예술활동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 **복수의 문화예술활동 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이들 모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시점을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 보는 것이 타당**
-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면서 실업상태에 들어가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함.**

<글상자 4-10>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7.21.>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7.21.>

<글상자 4-11> 이직, 실업, 실업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글상자 4-12>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글상자 4-13>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요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3. 구직급여 수급요건

○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실업상태, 이직 사유의 적절성, 적극적 재취업노력**

-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실업 상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이직사유가 피보험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
- **적극적 재취업노력은 실업의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며, 실업의 인정을 통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글상자 4-13>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글상자 4-14>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 **예술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예술인 노동의 간헐적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업 상태, 즉 문화예술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문화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의 적절성에서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자(계약의 상대방)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예술인 일방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
- 적극적 재취업노력은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도 필요한 요건. 다만 '일자리를 찾는 노력'에서 이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적용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국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일자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구직급여 수급의 종료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일자리를 재취업 노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설정에서는 예술인 노동의 특성, 작품 중심의 간헐적 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이직 전 18개월 간 6개월 이상 가입	폐업 전 24개월 간 1년 이상 가입	**이직 전 18개월 간 6개월 이상 가입**

※ 프랑스 사례

○ **(예술인)** 304일(기술직)~319일(예술인) 간 507시간 이상 근로

○ **(근로자)** 28개월 혹은 36개월 간(연령에 따라) 122일(610시간) 이상 근로

- (제1안) 현행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 (제2안) 기준기간 대비 피보험단위기간이 1/3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기간을 12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로 설정하는 방안

  * 예술인 중 예술활동 기간이 연간 6개월 미만인 자가 58.2%

- 현행 고용보험제도와의 통합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1안을 채택하는 것도 무방할 듯.

5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 = 평균임금(일)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총액은 예술인의 모든 문화예술활동 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합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

-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적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일자리를 포함한 복수의 일자리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최저액으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1일 근로시간은 8시간)
- 예술인 중 74%가 문화예술활동 이외의 부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업으로부터의 연간소득(458만 원)은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연간소득(520만 원)의 88%에 이르는 수준
- (제1안)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실업에 대하여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일자리(부업)으로부터의 소득과 무관하게, 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는 방안
- (제2안) 문화예술활동와 부업을 포함한 모든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
- 제1안은 최저구직기초일액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함과 동시에 예술인 상당수가 부업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부업 여부와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없고, 부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가지지 않음.
- 반면 제2안은 온전한 실업상태만 인정하고, 이에 따라 최저구직기초일액이 가지는 의미에 치중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 일자리를 상실하였을 때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제공하는 부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면에서 부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현상은 복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부분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

<글상자 4-15>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절 재정추계

○ **재정추계의 기본 설정**

- **적용대상 예술인은 5만 명, 재정추계 기간은 10년**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여기서는 6개월로 간주)**
-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50%,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3개월**

1. 기본 재정추계

○ **예술인을 실업 빈도에 따라 6개 집단으로 설정**

- **집단 1. 거의 실업하지 않는 예술인: 10년 중 실업 경험하지 않음**
  ※ 일자리를 옮기기는 하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정도 기간은 아니될 정도로 바로 일자리를 옮기는 집단
- **집단 2. 20개월 중 1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5%)**
- **집단 3. 2년에 3개월 실업을 경험하는 집단(실업확률은 12.5%)**
- **집단 4. 9개월 근로하고 3개월 실업을 경험하는 집단(실업확률은 25%)**
- **집단 5. 10개월 근로하고 5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33%)**
- **집단 6. 6개월 근로하고 6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50%)**

○ **예술인 6개 집단에 대해 평균 임금과 구성비를 설정**

- **다음 표에서 보듯, 실업 빈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

○ **예술인 집단의 평균 미취업 비중은 12.1%이며 취업 예술인의 평균 임금은 월 193만 원이며, 실업 확률을 고려하면 월 175만 원**

<표 4-6> 기본 재정추계 설정

(단위: 만 원/월)

집단	실업빈도	실업 확률	임금 수준	구성비
전체		12.1%	193 (175)	1.00
1	거의 실업 없음	0.0%	250	0.30
2	20개월 중 1개월	5.0%	200	0.25
3	24개월 중 3개월	12.5%	175	0.20
4	12개월 중 3개월	25.0%	150	0.10
5	15개월 중 5개월	33.0%	125	0.10
6	12개월 중 6개월	50.0%	100	0.05

○ 기본 재정추계 결과 예술인 실업급여계정은 연평균 283억 원 적자

-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은 136.7억인 반면 연평균 실업급여 지출은 420.0억 원
- 보험료율을 2.6%로 높이면,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이 273.3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재정적자는 146.7억 원으로 감소
- 수지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은 4.00%

○ 온전한 실업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재정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

- 예술인 집단 1과 2는 부업을 전혀 하지 않고, 집단 3 중에서는 30%, 집단 4 중에서는 40%, 집단 5 중에서는 50%, 집단 6 중에서는 60%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설정하고, 문화예술활동에서 실직할 때 부업을 지속한다고 가정
- 이때 연평균 실업급여 지출은 420억 원에서 280.1억 원으로 139.9억 원 감소
-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보험료율이 1.3%일 때 283억 원에서 143.5억 원으로, 2.6%일 때는 146.7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재정추계 2: 다소 높은 실업빈도

○ **기본 재정추계에 비해 예술인의 전반적인 실업빈도를 높은 것으로 설정**

- **집단** 1. **거의 실업하지 않는 예술인**: 10**년 중 실업 경험하지 않음**
- **집단** 2. 18**개월 중** 2**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11.1%)
- **집단** 3. 18**개월 중** 3**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16.7%)
- **집단** 4. 18**개월 중** 6**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33.3%)
- **집단** 5. 18**개월 중** 9**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50.0%)
- **집단** 6. 18**개월 중** 12**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72.2%)

<표 4-7> 재정추계 설정 2

(**단위: 만 원/월**)

집단	실업빈도	실업 확률	임금 수준	구성비
전체		18.1%	193 (166)	1.00
1	**거의 실업 없음**	0.0%	250	0.30
2	18**개월 중** 2**개월**	11.1%	200	0.25
3	18**개월 중** 3**개월**	16.7%	175	0.20
4	18**개월 중** 6**개월**	33.3%	150	0.10
5	18**개월 중** 9**개월**	50.0%	125	0.10
6	18**개월 중** 13**개월**	72.2%	100	0.05

○ **예술인 집단의 평균 미취업 비중은** 18.1%**이며 취업 예술인의 평균 임금은 월** 193**만 원이며, 실업 확률을 고려하면 월** 166**만 원**

○ **기본 재정추계 결과 예술인 실업급여계정은 연평균** 362**억 원 적자**

-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은** 129.9**억인 반면 연평균 실업급여 지출은** 491.9**억 원**
- **보험료율을** 2.6%**로 높이면,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이** 259.8**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재정적자는** 232**억 원으로 감소**
- **수지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은** 4.92%

3. 재정추계 3: 취약층의 구성비 증가

○ **기본 재정추계에 비해 실업확률이 높은 예술인의 비중을 높게 설정**

- **집단 1. 거의 실업하지 않는 예술인: 10년 중 실업 경험하지 않음**
- **집단 2. 20개월 중 1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5.0%)**
- **집단 3. 24개월 중 3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12.5%)**
- **집단 4. 12개월 중 3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25.0%)**
- **집단 5. 15개월 중 5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33.3%)**
- **집단 6. 12개월 중 6개월 실업하는 집단(실업확률은 50.0%)**

<표 4-8> 재정추계 설정 3

(단위: 만 원/월)

집단	실업빈도	실업 확률	임금 수준	구성비
전체		17.8%	178 (155)	1.00
1	거의 실업 없음	0.0%	250	0.25
2	20개월 중 1개월	5.0%	200	0.20
3	24개월 중 3개월	12.5%	175	0.15
4	12개월 중 3개월	25.0%	150	0.10
5	15개월 중 5개월	33.3%	125	0.15
6	12개월 중 6개월	50.0%	100	0.15

○ **예술인 집단의 평균 미취업 비중은 17.8%이며 취업 예술인의 평균 임금은 월 175만 원이며, 실업 확률을 고려하면 월 155만 원**

○ **기본 재정추계 결과 예술인 실업급여계정은 연평균 364억 원 적자**

-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은 120.7억인 반면 연평균 실업급여 지출은 484.7억 원**
- **보험료율을 2.6%로 높이면,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이 241.4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재정적자는 243.3억 원으로 감소**

- **수지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은 5.22%**

제5장 결론

1. 예술인 실태 요약

○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예술인복지재단이 실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의 자료를 통하여 예술인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년)

○ **문화예술산업(영상업, 방송업, 공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46.2천 명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근로자 13,471천 명 중 1.09%를 차지**

- **이 중 영상업이 65천 명, 방송업이 44천 명, 공연업이 36천 명**
- **출판업(중분류 58, 148.7천 명)은 제외**

○ **정규직이 63%(91천 명), 단시간근로가 29%(25천 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수형태종사자는 2천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 영상업에 종사**

- **전문직이 41%(60천 명)를 차지하고 사무종사자가 29%(42만 명), 판매종사자가 15%(21천 명)을 차지**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전문직 만을 문화예술인력으로 한정하면 약 5만 98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 영상업에 2.4만 명, 방송업에 2.4만 명, 공연업에 1.2만 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예술산업의 월평균임금은 240만 원 정도**

- 방송업에서 36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영상업과 공연업에서는 각각 190만 원과 175만 원 정도
-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된 전문직은 289만 원인데 방송업에서 396만 원에 이르고 영상업에서는 226만 원 정도인 반면 공연업에서는 200만 원 정도의 다소 낮은 수준

○ 문화예술산업의 임금분포를 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 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직에서는 5.3%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0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업에서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연업에서는 43개월, 영상업에서는 29개월로 현재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나 간헐적 노동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치되는 결과
- 문화예술인력에 해당하는 전문직에서는 평균 근속기간이 79개월로 짧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방송업 전문직의 근속기간이 138개월에 이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상업에서는 3년이 채 안 되고 공연업에서는 4년을 조금 넘는 수준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률은 85%로 낮지는 않은 편

- 문화예술인력이 주로 포함되는 전문직을 보면, 전체적으로 88.8%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송업에서 99%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영상업에서도 83%에 이르고 있는 반면 공연업에서는 다소 낮아 80% 미만의 수준
-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문화예술인력의 상당수는 이미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는 통상적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

○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최근 1년 이내 실직자 포함)는 58.6천 명이며, 문화예술직종으로

종사하는 자(최근 1년 이내 실직자 포함)는 637천 명

○ 현재(2014년 8월 기준) 문화예술직종으로 문화예술산업(출판업, 영상업, 방송업, 공연업)에 취업 중인 문화예술인력은 176.5천 명(출판업을 제외하면, 130.0천 명)

○ 문화예술인력 중 임금근로자(116천 명)의 평균 임금은 월평균 183만 원

○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71.6개월로 그리 짧지는 않은 편

○ 문화예술인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92천 명으로 문화예술인력 취업자 대비 52%, 임금근로자 대비 8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6월)

○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5일~7월 4일(1개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를 실시

○ 계약 없이 일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한 낮은 수준

- 대부분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나 서면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8% 정도로 여전히 구두계약의 비중이 44%로 적지는 않은 편

○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중은 21% 정도에 불과

- 11%는 용역계약을, 10%는 위탁 또는 위촉계약을, 4%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42%가 계약의 유형을 잘 모르겠다고 나타나 구두계약의 상당 부분에서 계약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파악됨

○ 1년 간(2013년) 예술활동을 한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

- 12개월 예술활동을 한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고 전혀 하지 않은 예술가도 3% 정도

○ 문화예술인력의 연간 총소득은 1천만 원을 다소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며, 이 중 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은 52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이 458만 원 정도

- 예술활동 기간이 6.5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예술활동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은 8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 문화예술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이 없는 비중은 13%에 이르고 있으며, 2천 만 원 이상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

○ 문화예술인력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중은 37%

-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과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각각 38%와 31%로 나타나 '강제가입'이 아닌 듯한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인력의 81%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26%를 차지하여 현재의 미가입 사유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의향을 밝힌 예술인 중 고용보험료 부담 의향은 월 1만 원 미만이 25%, 1~2만 원이 35%, 2~3만 원이 24%

2. 프랑스 엥테르미탕의 시사점

○ 엥테르미탕의 활동 양상에 따라 적합한 실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예술 활동 분야에서 명시적으로 용역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활동에 대해서는 실업 보험 등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명시적 용역계약의 경우는 독립 노동자(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체계를 적용하지 않음
- 우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한기간 계약으로 활동을 하는 예술인력(관리직, 비관리직, 기술직 모두 포함)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실업보험 체계에 가입되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음
- 기간을 정한 유한기간 계약에 대해서는 실업보험관련 노사협정에 부칙을 두어 관례적 유한기간 계약직을 의미하는 엥테르미탕이라는 특별한 체계를 두어 운영
- 엥테르미탕은 부칙 8장의 기술직과 일반 노동자, 부칙 10장의 예술가를 포함하며, 예술가가 이에 해당하는 근거는 예술활동의 노동 추정 원칙

○ 실업보험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실업보험 재원은 유일하고, 일반 실업보험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
- 부칙 8장과 10장을 포함하여 프랑스 실업보험 체계는 재원과 운영 모두 노사간 협상에 의해 운영되는 체계
- 따라서, 기여, 보험료, 가입 조건 등 모든 사항은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손익도 노사가 부담
- 재정적으로 볼 때 엥테르미탕 실업보험 체계도 일반 실업보험 체계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는 직종간 사회연대라는 큰 틀 속에서 지속
- 민간 주도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는 최종 승인단계에서 추인(agrement)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재정적 손실에 빠진 실업보험 기금에 융자를 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보조적 기금(전문화연대 기금)을 통해 보조적 역할을 수행

○ 프랑스 엥테르미탕들은 실업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음

- 엥테르미탕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한 회차의 실업보험 급여가 종료되면 재가입 여부를 확인

- 이를 위한 노동기간이 부족하면 전문화연대 급여 가능성을 검토
- 급여가 종료되면 권리종료후 급여를 검토
- 이외에 교육훈련, 유급휴가, 취업지원, 재해보장보험 등 수급자의 형편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 지원을 두고 운영

○ 프랑스 엥테르미탕 실업보험은 노사는 물론 프랑스 사회가 역사 속에서 오래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물

- 엥테르미탕 제도는 수십년 동안 국가적 의제 설정, 노사간 협상, 사회적 파장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
- 2차대전 후 실업 문제 극복이라는 국가 명제를 노사간 협상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실업보험 제도로 해결
- 공연 및 영상 분야 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정문에 부칙을 달아 운영하였으며 이의 포함범위와 내용들을 재정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개정
- 갈등이 생길 때 마다 관련주체들간 협상의 통해 제도를 변화시켰고, 국가는 이를 조정
-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노조는 파업 등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협상력을 제고
- 국가는 노사간 문제에 대해 추인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개입
- 사회는 문화예술 향유 권리와 재정적 위험이라는 양 측 사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지지

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 기본방향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 중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연·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으로 한정

- 기타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사업(실업부조)을 통해 지원

○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적용방식과 유사하게 설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방식은 아직 미정이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음

□ 적용대상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으로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나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 중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당연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근로감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고용보험법 상 자영업자 중 자영업 특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당연제외
- 고용보험법 상 적용제외자는 예술인고용보험 특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65세 이후에 예술인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공연·영상 분야 예술인 약 95,099명 중 57.6%인 57.7천 명 정도로 추정

□ 적용방식

○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은 엄격히 구분하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강제가입토록 하는 것이 원칙

□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 현재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 이러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2013년에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1.1%이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로 0.2%포인트 상향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경험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경험요율(experience rate)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재의 1.3%와 달리 적용할 타당성은 없음.

○ 다만 특례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를 고려할 때, 예술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프랑스 앵떼르미땅 사례에서 보듯, 예술인의 실업보험료율(12.8%)은 일반 근로자의 실업보험료율(6.4%)의 2배 수준

□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설정에서는 예술인 노동의 특성, 작품 중심의 간헐적 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제1안) 현행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 (제2안) 기준기간 대비 피보험단위기간이 1/3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기간을 12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로 설정하는 방안

□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기초일액 = 평균임금(일)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총액은 예술인의 모든 문화예술활동 계약서 상 계약금액의 합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

-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적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일자리를 포함한 복수의 일자리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 재정추계

○ 재정추계의 기본 설정

- 적용대상 예술인은 5만 명, 재정추계 기간은 10년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여기서는 6개월로 간주)
-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50%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3개월

○ 예술인을 실업 빈도에 따라 6개 집단으로 설정

○ 기본 재정추계 결과 예술인 실업급여계정은 연평균 283억 원 적자

-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은 136.7억인 반면 연평균 실업급여 지출은 420.0억 원
- 보험료율을 2.6%로 높이면, 연평균 실업보험료 수입이 273.3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재정적자는 146.7억 원으로 감소
- 수지균형을 위한 적정 보험료율은 4.00%

4. 주요 법률 개정안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또는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과 같음)
1.~3. (생 략)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아니한 자

○ 고용보험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2조의2(예술인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이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예술인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예술인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4(예술인의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2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재적용 신청 및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예술인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

	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문헌

국제노동브리프, 2003년 7월-8월호, vol1 , N. 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2009), 『문화.예술산업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이승렬외(2013), 『프리랜서 노동과 위험』 , 한국노동연구원

Frédéric Chhum(2013), Les intermittents du spectacle. LexisNexis

Pole Emploi(2014), Intermittents du spectacle – L'essentiel, 프랑스 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

부록 1: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문화예술 관련 직종

1 관 리 자

(Managers)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Professional Services Management Occupations**

134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Culture, Art, Design and Moving Image Related Managers

134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Culture, Art, Design and Moving Image Related Managers

13401 **문화 및 예술 관련 관리자** Culture, Arts Related Manager

. 미술관 관장	. 화랑 관장
. 기록보관 소장	. 발레단 단장
. 사적 관리자	. 무용단 단장
. 도서관장	. 오페라단 단장
. 박물관 관리자	. 극단 관리자
. 출판 운영부서 관리자	

13402 **디자인관련 관리자** Design Related Managers

. 디자인관련 기업 관리자 . 디자인관련 부서 관리자

13403 **영상관련 관리자** Moving Image Related Managers

. 방송 운영부서 관리자 (텔레비전 편성국장, 라디오방송 운영자, 비디오제작사 실장 등) . 신문 운영부서 관리자(편집국장, 취재국장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및 시험원	Engineers and Technicians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Architects and Construction Engineers
23111	건축가	Architects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Education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College Professors and Instructors
2511	대학 교수	College Professors
25117	예.체능계열 교수	Arts and Physical Education Professors
2512	대학 시간강사	College Instructors
25127	예.체능계열 시간강사	College Instructors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252	학교 교사	Teachers
2521	중.고등학교 교사	High and Middle School Teachers
25215	예.체능 교사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Liberal Arts and Sciences, Technical and Arts Instructors
2544	예능 강사	Arts Instructors
25441	음악 강사	Music Instructors
25442	미술 강사	Fine Arts Instructors
25443	무용 강사	Dance Instructors
25449	그 외 예능 강사	Arts Instructors n.e.c.
25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Other Liberal Arts and Sciences, Technical and Arts Instructors
25499	그 외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Liberal Arts and Sciences, Technical and Arts Instructors n.e.c.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Culture, Arts and Sports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Writers, Journalists and Publishing Professionals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Writers and Related Professionals
28111	방송작가	TV Drama Writers

. 드라마 작가	. 구성 작가
. 극작가	. 시나리오 작가
. 코미디 작가	

28112 **작가 및 평론가** Writers and Critics

. 시인 . 소설가
. 평론가 . 수필가

28113 **광고문 작성가** Advertising Copywriters
28114 **스크립터** Scripters
28119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Writers and Related Professionals n.e.c.

. 게임시나리오 작가 . 만화스토리 작가
. 테크니컬라이터

2812 **번역가** Translators
28120 **번역가** Translators
2813 **통역가** Interpreters
28130 **통역가** Interpreters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Journalists and Editorial Writers
28141 **기자** Journalists
28142 **논설위원** Editorial Writers
28143 **칼럼니스트** Columnists

2815 **출판물 전문가** Publishing Professionals
28151 **출판물 기획자** Publishing Planners
28152 **출판물 편집자** Publishing Editors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Curators, Librarians and Archivists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Curators and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Workers
28211 **큐레이터** Curators
28212 **문화재 보존원**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Workers
282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Librarians and Archivists
28221 **사서** Librarians
28222 **기록물관리사** Archivists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Drama, Film and Moving Image Professionals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Directors and Technical Directors
28311 **감독 및 연출가** Directors and Producers

. 영화 감독	. 텔레비전 감독
. 방송 연출자	. 라디오 PD
. 방송 PD	. 편성 PD
. 연극 감독	. CF감독
. AD	. 조연출
. 조감독	

28312 **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s

. 기술 총감독	. 편집감독
. 조명감독	. 미술감독
. 영화촬영감독	. 음향감독
. 텔레비전촬영감독	. 영상감독
. 무대감독	

28319 **그 외 감독 및 연출가** Directors and Producers n.e.c.

2832 **배우 및 모델** Actors and Models

28321 **배우** Actors

. 영화배우	. 연극배우
. 탤런트	

28322 **개그맨 및 코미디언** Comedians

. 코미디언	. 개그맨
. 만담가	

28323 **모델** Models

. 패션모델	. 의류진열모델
. 예술모델	. 광고모델

28324 **성우** Radio Actors

28329 **그 외 배우 및 모델** Actors and Models n.e.c.

. 스턴트맨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Announcers and Reporters

28331 **아나운서** Announcers

28332 **리포터** Reporters

28333 **쇼핑호스트** Shopping Hosts

28334 **비디오자키** Video Jockeies

28335 **디스크자키** Disc Jockeies

28339 **그 외 아나운서 및 리포터** Announcers and Reporters n.e.c.

. **전문 연예사회자**

2834 **촬영기사** Cinematographer

28340 **촬영기사** Cinematographer

. **행사촬영기사** . **비디오카메라맨**

. **촬영기사**(TV, **광고**, **영화**, **비디오**, **특수**)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Sound Equipment Engineers

28350 **음향 및 녹음 기사** Sound Equipment Engineers

. **음향기사**(**음향엔지니어**, **방송음악기사**, **음향효과기사**)

. **녹음기사**(**녹음영사기사**, **테이프녹음기사**, **더빙기사**, **동시녹음기사**, **음반녹음기사**, **테이프녹음기사**)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Moving Image Recording and Editing Engineers

28360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Moving Image Recording and Editing Engineers

. **영상기사** . **편집기사**

. **녹화기사**(**녹음영사기사**, **레코딩 엔지니어**)

283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Lights Operators and Cinema Projection Operators

28371 **조명기사** Lights Operators

. 조명기사	. 판조명원
. 조명탁조정원	

28372 영사기사 Cinema Projection Operators

2839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Other Drama, Film and Moving Image Related Workers

28391 무대의상 관리원 Stage Costume Related Workers

28392 소품 관리원 Property Masters

. 소품 담당자(Grip)

28393 방송.영화연출 보조원 Broadcasting and Film Producer Assistants

. FD	. 캐스팅 매니저

28394 보조 연기자 Extras

. 엑스트라

28399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Drama, Film and Moving Image Related Workers n.e.c.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Painters, Photographers and Performing Artists

2841 화가 및 조각가 Painters and Sculptors

28411 화가 Painters

. 풍경화 화가	. 초상화 화가
. 회화 복원가	. 단청원
. 탱화원	. 거리 초상화가

28412 조각가 Sculptors

. 모형 조각가	. 조각 식각가
. 식각사	

28413 서예가 Calligraphers

. 서예가

28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Photograph Journalists and Photographers

28421 **사진작가** Photograph Journalists

. 사진작가	. 인물 사진작가
. 풍경 사진작가	. 환경 사진작가

28422 **사진기자** Photograph Journalists

. 신문 사진기자	. 잡지 사진기자
. 스포츠 사진기자	

28423 **사진가** Photographers

. 인물 사진가	. 광고 사진가
. 패션 사진가	. 건축 사진가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Cartoonists and Animators

28431 **만화가** Cartoonists

. 만화 배경 맨	. 만화 터치 맨
. 만화 데생 맨	. 만화가

28432 **만화영화 작가** Cartoonists and Animators

. 셀 애니메이터	. 동화원
. 선화원	. 원화원
. 디지털애니메이터	. 클레이애니메이터
. 플래시애니메이터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Korean Classical Musicians and Traditional Artists

28441 **국악인** Korean Classical Music Vocalist

. 국악인	. 판소리꾼

28442 **국악 연주가** Korean Classical Musicians

. 국악기 연주가	. 판소리 연주가

28443 **국악작곡 및 편곡가** Korean Classical Music Composers and Arrangers

. 국악 작곡가	. 국악 편곡가

28444 **전통 예능인** Traditional Artists

. 전통 연극인	. 전통 무용인
. 전통 무예인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Conductors, Composers and Players

28451 **지휘자** Conductors

. 관현악단 지휘자	. 오케스트라 지휘자
. 합창단 지휘자	. 성가대 지휘자

28452 **작곡가 및 편곡가** Composers and Arrangers

. 작곡가	. 편곡가
. 음악 각색가	. 관현악 편곡가

28453 **연주가** Players

. 목관악기 연주자	. 타악기 연주자
. 금관악기 연주자	. 건반악기 연주자
. 현악기 연주자	

2846 **가수 및 성악가** Singers and Vocalists

28461 **가수** Singers

. 대중가요 가수	. 가수

28462 **성악가** Vocalists

. 성악가	. 오페라 가수
. 소프라노	. 테너
. 베이스	. 합창단원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Dancers and Choreographers

28471 **무용가** Dancers

. 순수 무용가	. 한국 무용가
. 발레 무용가	. 현대 무용가
. 대중업소 무용수	. 백댄서

28472 **안무가** Choreographers

285	**디자이너**	Designers
2851	**제품 디자이너**	Product Designers
28511		**자동차 디자이너** Motor Vehicles Designers
28512		**가구 디자이너** Furniture Designers
28519		**그 외 제품 디자이너** Product Designers n.e.c.
2852	**패션 디자이너**	Fashion Designers
28521		**직물 디자이너** Textile Designers
28522		**의상 디자이너** Clothes Designers
28523		**액세서리 디자이너** Accessory Designers
28524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Bag and Shoes Designers
2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s
28531		**인테리어 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s
28532		**디스플레이어** Displayers
28533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Stage and Set Designers
2854	**시각 디자이너**	Graphic Designers
28541		**광고 디자이너** Advertisement Designers
28542		**포장 디자이너** Packing Designers
28543		**북 디자이너** Book Designers
28544		**삽화가** illustrators
28545		**색채 전문가** Colorists
28546		**활자 디자이너** Font Designers
28549		**그 외 시각 디자이너** Graphic Designers n.e.c.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Web and Multimedia Designers
28551		**웹 디자이너** Web Designers
28552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Multimedia Designers
28553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Game Graphic Designers
289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Managers and Other Culture, Art Related Workers
2891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Entertainer and Sports Managers
28911		**연예인 매니저** Entertainer Managers
28912		**스포츠 매니저** Sports Managers
2899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Magicians and Culture, Art Related Workers n.e.c.
28991		**마술사** Magicians
28999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종사원** Culture and Art Related Workers n.e.c.

부록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년)

○ **고용노동부는 3만 여 사업체와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 표본(2013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470.2천 명을 대표하는 765,557개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실시**[26]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사업체조사표는**

① 사업체정보(고용노동청(지청) 작성)[27]

② A. 사업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B. 사업체 인력 현황,

④ 조사관련 사항[28]

으로 구성

○ **개인조사표는**

① 사업체정보(고용노동청(지청) 작성)와 사업체 명칭

⑤ C.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으로 구성

○ **'A. 사업체 전반에 관한 사항'은**

1. 사업체 명칭
2. 사업체 소재지
3.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최대 2 가지)
4. 사업체 형태: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부, 점 등), ③ 지사(점).공장 등
5. 경영의 형태: ① 일반사업체, ② 파견업체, ③ 용역업체, ④ 도급업체
6. 전체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수[29]

---

26) 201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348.4천 명을 대표하는 753,926개의 표본

27) 고용노동청(지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정보에는 지방관서고유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규모, 산업분류번호(소분류), 근로자 추출률(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지역번호가 포함된다.

28) 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관련사항에서 조사표 2-작성자, 사업체 확인자, 지방노동관서 조사담당자와 검토자의 서명과정을 거치고 있다.

29) 전체 근로자 수는 '2013년 6월 급여계산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한 임금근로자(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하며 (외부의 파견.용역업체 소속의 사내하청 근로자수도 포함), 당해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 만 기재토록 하여, 본사, 지사 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하고 '당해 사업체가 파견.용역업체인 경우에는 외부 파견된 근로자를 제외

7. 노동조합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②-1 민주노총, ②-2 한국노총, ②-3상급노조 없음)
8. 6월 급여계산기간[30]
9. 산재보험 가입여부: ① 가입 ② 미가입
10. 주당 정상조업 영업일수: ① 5일 ② 격주 5일 ③ 6일 ④ 7일 ⑤ 기타
11.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4999명 ⑩ 5000명 이상
12. 전년(2012년)도 연간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종류 및 지급기준[31]

으로 구성

○ '**B. 사업체 인력현황**'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② 재택/가내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용역근로자
⑤ 일일근로자
⑥ 단시간근로자
⑦ 기간제 근로자
⑧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⑨ 정규직 근로자

로 구분

- **각 고용형태별로 ① 남성과 ② 여성(및 전체) 근로자 수와 ③ 추출근로자 수를 파악**[32]

한 사내 근로자 수 만 기재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30) **6월 급여계산기간은 '원칙적으로 6.1~30일까지의 기간이며, 급여계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귀 사업체의 급여계산기간을 기재하시되 월력상 2013년의 6월이 16일 이상 포함.'**

31)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은 고정상여금과 변동상여금으로 나뉘는데, 고정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사전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지급한 상여금·성과급(예: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등)이며, 변동상여금은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지급한 상여금·성과급(예: 경영성과급, 생산장려금, 인센티브 등)이다. 이들의 지급기준은 ① 기본급 ② 기본급+통상적수당 ③ 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④ 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연장급여 ⑤ 지급하나 지급기준 없음 ⑥ 지급하지 않음으로 구분한다.**

32) **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등), ② 재택/가내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무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③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④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

- **추가하여 장애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총근로시간과 임금총액을 파악**[33]

○ '**c.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

- 1. 일련번호
- 2. 고용형태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재택/가내 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용역근로자 ⑤ 일일근로자 ⑥ 단시간 근로자 ⑦ 기간제 근로자 ⑧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⑨ 정규직 근로자
- 3. 사번(또는 성명)
- 4.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5.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초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 6. 출생연월 (주민등록상의 출생연월)
- 7. 입사연월 (최초 입사연월)
- 8. 경력연수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 이상 ~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다른 사업체에서 종사한 동일 업무의 경력년수도 모두 포함합니다)
- 9. 근무형태 (전일제와 파트타임, 전일제에 대해서는 교대제 관련 사항)
  전일제(Full time) ① 교대제 하지 않음 ② 2교대제 ③ 3교대제 ④ 격일제,
  단시간제(Part time) ⑥ 단시간제
- 10. 고용계약기간

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⑤ 일일근로자는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이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⑥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⑦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⑧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는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자는 ⑨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

33) **총근로시간은 '총 인원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기재토록 하고,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합계(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연장급여)'를 기대토록 하고 있다.**

① 1개월 이하 ② 1개월 초과~6개월 이하 ③ 6개월 초과~1년 미만
④ 1년 ⑤ 1년 초과~2년 이하 ⑥ 2년 초과
⑦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 11. 직종 (1)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수행하는 업무 중 난이도와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이 가장 높은 내용을 사업체조사표 뒷면의 직업소분류 명칭보다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2) 직업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사업체조사표 뒷면)를참조하여 해당분류코드를 기재합니다(직업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내용만을 상세히 기재).
- 12. 근로일수 (1) 소정실근로일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2) 휴일실근로일수: 소정근로일 이외에 근로한 일수를 기재
- 13. 전년도(2012년) 연월차 휴가일수: 전년도(2012년)에 실제 사용한 연월차 휴가일수를 기재합니다.
- 14. 근로시간수 (1) 소정실근로시간수: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2) 초과실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합계를 기재합니다(*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17-(2)번 문항의 연장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15. 임금산정 기준: ① 시간급 ② 일급 ③ 주급 ④ 월급 ⑤ 연봉제 ⑥ 기타
- 16. 임금기준액: 15항 임금산정기준에 따른 임금기준액(만근기준 기본급)을 기재합니다. "⑥ 기타"의 경우 기재할 수 없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시간급의 경우 시간당 임금액을, 연봉제의 경우 1년간 기본연봉 총액(성과연봉, 수당,퇴직금 제외)을 말합니다.
- 17. 2013년 6월 급여액

(1) 정액급여
1)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기본임금
2) 통상적 수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수당
3) 기타 수당 통상적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연·월차 수당은 포함되나 6월 한 달분만 포함)
(2) 연장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 (연장급여가 있는 경우 14-(2)번 문항의 초과시간을 반드시 확인)

- 18. 전년(2012년)도 연간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2012. 1~12월까지 1년간 지급된 고정상여금(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상여금·성과급)과 변동상여금(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확정되는 상여금·성과급) 합계액

(정액급여(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 수당) 및 연장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9.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① 가입 ② 미가입

(1) 고용보험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산재보험

- 20. 부가급부 적용 여부 ① 적용 ② 미적용

(1) 상여금 (2) 퇴직금

- 21. 노동조합 가입 여부 ① 정규직노조 가입 ② 비정규직노조 가입

③ 통합노조 가입④ 가입 안 함

⑤ 자격 없음 ⑥ 노조 없음

부록 3: 프랑스 실업보험 노사협정 부칙 8장에 명시된 직종

부칙 8 : 부칙 8의 적용에 관련한 세부사항

실업보험의 부칙8은 노동법 L. 5422-13 또는 L. 5424-3에서 규정하거나 아래의 직업분류 코드(NAF)에 나타난 직능을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기술자에 대해 적용된다.

2011년 5월 6일 협약에 부속된 부칙 8

부칙8의 적용에 관련한 목록

2013-10-16 1조에 의해 개정됨

실업보험의 부칙8은 노동법 L. 5422-13 또는 L. 5424-3에서 규정하거나 다음의 직업분류 코드(NAF)에 나타난 직능을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기술자에 대해 적용된다.

1. 시청각물 제작(Production audiovisuelle)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59.11 A –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제작 (애니메이션 제외)**

59.11 B – **교육 또는 홍보 목적의 영화 제작 (애니메이션 제외)**

임금근로자

59.11 B – **교육용, 홍보용 영상의 제작 – 애니메이션 제외**

다음의 직능을 수행하는 임금 근로자

1	**세트디자이너 제1조수**	1er assistant décorateur
2	**특수세트디자이너 제1조수**	1er assistant décorateur spécialisé
3	**촬영기사 제1조수**	1er assistant OPV
4	**특수촬영기사 제1조수**	1er assistant OPV spécialisé
5	**제1 감독보조**	1er assistant réalisateur
6	**특수감독 제1조수**	1erassistant réalisateur spécialisé

7	음향기사 제1조수	1er assistant son
8	세트디자이너 제2조수	2e assistant décorateur
9	특수세트디자이너 제2조수	2e assistant décorateur spécialisé
10	촬영기사 제2조수	2e assistant OPV
11	특수촬영기사 제2조수	2e assistant OPV spécialisé
12	제2 감독보조	2e assistant réalisateur
13	특수감독 제2조수	2e assistant réalisateur spécialisé
14	소품 담당	Accessoiriste
15	특수소품 담당	Accessoiriste spécialisé
16	제작 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
17	특수제작 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 spécialisé
18	무대 지원	Aide de plateau
19	방송 진행자	Animateur d'émission
20	오토마타 예술가	Animatronicien
21	부세트디자이너 조수	Assistant décorateur adjoint
22	방송 조수	Assistant d'émission
23	후작업 담당자 조수	Assistant de postproduction
24	제작 조수	Assistant de production
25	제작담당 조수 조수	Assistant de production adjoint
26	특수제작 조수	Assistant de production spécialisé
27	조명기사 조수	Assistant lumière
28	특수조명기사 조수	Assistant lumière spécialisé
29	편집기사 조수	Assistant monteur
30	부편집기사 조수	Assistant monteur adjoint
31	특수편집기사 조수	Assistant monteur spécialisé
32	보조촬영기사 조수	Assistant OPV adjoint
33	조감독	Assistant réalisateur
34	조감독 조수	Assistant réalisateur adjoint
35	무대감독 조수	Assistant régisseur adjoint
36	음향기사 조수	Assistant son
37	부음향기사 조수	Assistant son adjoint
38	부스트립터 조수	Assistante scripte adjointe
39	리거	Blocker/rigger
40	음향효과 전문가	Bruiteur
41	카메라맨	Cadreur
42	특수 카메라맨/특수 촬영기사	Cadreur spécialisé/OPV spécialisé
43	조사 및 연구 감독	Chargé d'enquête/recherche
44	포스트프로덕션	Chargé de postproduction
45	제작 담당	Chargé de production
46	캐스팅 담당	Chargé de sélection
47	운전사	Chauffeur

48	사전 진행자	Chauffeur de salle
49	제작 감독	Chef constructeur
50	의상 감독	Chef costumier
51	특수의상 감독	Chef costumier spécialisé
52	반장	Chef d'équipe
53	무대감독	Chef de plateau/régisseur de plateau
54	세트 감독	Chef décorateur
55	특수세트 감독	Chef décorateur spécialisé
56	조명감독	Chef éclairagiste
57	전기설비감독	Chef électricien
58	기계감독	Chef machiniste
59	분장감독	Chef maquilleur
60	특수분장감독	Chef maquilleur spécialisé
61	편집감독	Chef monteur
62	특수편집감독	Chef monteur spécialisé
63	제1 녹음기사	Chef OPS
64	제1 녹음기사/특수 음향 엔지니어	Chef OPS spécialisé/ingénieur du son spécialisé
65	제1 카메라 오퍼레이터	Chef OPV
66	헤어담당자	Coiffeur
67	헤어 및 담당자	Coiffeur perruquier
68	특수 헤어 및 가발 담당자 가발	Coiffeur perruquier spécialisé
69	헤어담당자	Coiffeur spécialisé
70	예술분야 전문 협력인력	Collaborateur artistique
71	캐스팅 협력인력	Collaborateur de sélection
72	제작 회계 담당자	Comptable de production
73	회계 전문가	Comptable de production spécialisé
74	작업반 관리자	Conducteur de groupe
75	편집 확인 담당자	Conformateur
76	예술 자문	Conseiller artistique d'émission
77	연출 기술 조언	Conseiller technique réalisation
78	건축가	Constructeur
79	각본 코디네이터 (예.스크립트 에디터)	Coordinateur d'écriture (ex-script éditeur)
80	방송 코디네이터	Coordinateur d'émission
81	무대의상가	Costumier
82	특수 무대의상가	Costumier spécialisé
83	의상 제작자	Créateur de costume
84	특수의상 제작자	Créateur de costume spécialisé
85	세트디자이너	Décorateur
86	세트장식가	Décorateur peintre
87	특수세트 장식가	Décorateur peintre spécialisé

88	특수세트 담당자	Décorateur spécialisé
89	세트 도배 및 바닥 담당자	Décorateur tapissier
90	세트 도배 및 바닥 전문가	Décorateur tapissier spécialisé
91	세트 디자이너	Dessinateur en décor
92	특수세트 디자이너	Dessinateur en décor spécialisé
93	예술감독	Directeur artistique
94	카탈로그 담당자	Directeur de collection
95	게임 디렉터	Directeur de jeux
96	배역할당 감독	Directeur de la distribution
97	배역할당 담당자	Directeur de la distribution spécialisé
98	후반작업 감독	Directeur de postproduction
99	촬영 감독	Directeur de production
100	특수 제작 담당자	Directeur de production spécialisé
101	프로그램 디렉터	Directeur de programmation
102	캐스팅 디렉터	Directeur de sélection
103	대사 담당자	Directeur des dialogues
104	사진 감독	Directeur photo
105	특수 사진 감독	Directeur photo spécialisé
106	다큐멘탈리스트	Documentaliste
107	조명	Doublure lumière
108	조련사	Dresseur
109	조명기사	Eclairagiste
110	전기기사	Electricien
111	세트 전기기사	Electricien déco
112	사전조사 담당자	Enquêteur
113	실내장식가	Ensemblier-décorateur
114	전문 실내장식가	Ensemblier-décorateur spécialisé
115	색채 조정인	Etalonneur
116	의상 담당자	Habilleur
117	특수 의상담당자	Habilleur spécialisé
118	음향 연출자	Illustrateur sonore
119	영상 엔지니어	Ingénieur de la vision
120	영상 보조 엔지니어	Ingénieur de la vision adjoint
121	음향 엔지니어	Ingénieur du son
122	전문 조언가	Intervenant spécialisé
123	무대장치가	Machiniste
124	무대장치 조작 담당	Machiniste décorateur
125	벽돌공	Maçon
126	특수 분장 및 헤어 담당자	Maquillage et coiffure spéciaux
127	분장사	Maquilleur
128	특수분장사	Maquilleur spécialisé

129	기계	Mécanicien
130	소목 담당자	Menuisier-traceur
131	철물 담당자	Métallier
132	믹싱기사	Mixeur
133	믹싱기사 (연출)	Mixeur (directs)
134	편집감독	Monteur
135	트랙 기사	Opérateur de voies
136	동시 효과 기사	Opérateur effets temps réel
137	녹화 담당 기사	Opérateur magnétoscope
138	슬로우 녹화 담당기사	Opérateur magnéto ralenti
139	플레이백 기사	Opérateur playback
140	조정기사	Opérateur régie vidéo
141	스테디캠 전문가	Opérateur spécial (Steadicamer)
142	특수 스테디캠 전문가	Opérateur spécial (Steadicamer) spécialisé
143	싱크로 기사	Opérateur synthétiseur
144	녹음기사	OPS
145	카메라 오퍼레이터	OPV
146	도색 담당자	Peintre
147	캘리그래퍼	Peintre en lettres/en faux bois
148	마이크 담당자	Perchiste
149	특수 마이크 /특수음향 조수	Perchiste spécialisé/1er assistant son spécialisé
150	무대 사진작가	Photographe de plateau
151	특수 무대 사진작가	Photographe de plateau spécialisé
152	포인터	Pointeur
153	특수 포인터	Pointeur spécialisé
154	주문 담당자	Préparateur de questions
155	예술 제작자	Producteur artistique
156	이그제큐티브 제작자	Producteur exécutif
157	방송 예술 제작자	Programmateur artistique d'émission
158	콘솔 담당자	Prothésiste
159	조명 콘솔 담당자	Pupitreur lumière
160	감독	Réalisateur
161	조사 담당자	Recherchiste
162	장소섭외 담당자	Régisseur/responsable repérages
163	무대 조감독	Régisseur adjoint
164	특수 무대 조감독	Régisseur adjoint spécialisé
165	외부 무대 연출자	Régisseur d'extérieurs
166	외부 전문 무대 연출자	Régisseur d'extérieurs spécialisé
167	무대 총감독	Régisseur général
168	특수 무대 총감독	Régisseur général spécialisé

169	**특수 장소섭외 담당자**	Régisseur spécialisé/resp. repérages spécialisé
170	**주차 담당자**	Régulateur de stationnement
171	**대본연습 담당자**	Répétiteur
172	**조사 담당자**	Responsable d'enquête
173	**문제 담당자**	Responsable de questions
174	**연구 담당자**	Responsable de recherche
175	**아역 담당자**	Responsable des enfants
176	**장소섭외 담당자**	Responsable repérages
177	**리퍼**	Rippeur
178	**스크립터**	Scripte
179	**전문 스크립터**	Scripte spécialisée
180	**제작 비서**	Secrétaire de production
181	**전문 제작비서**	Secrétaire de production spécialisée
182	**철물 담당자**	Serrurier
183	**보조스태프**	Staffeur
184	**스토리보더**	Storyboarder
185	**스타일리스트**	Styliste
186	**특수효과 감수자**	Superviseur effets spéciaux
187	**도배 담당자**	Tapissier
188	**백라이너 전문가**	Technicien instrument/backliner
189	**전문가특수효과 담당자**	Technicien truquiste
190	**영상전문가**	Technicien vidéo
191	**목수**	Toupilleur
192	**특수효과 담당자**	Truquiste
193	**비디오그래픽아티스트**	Vidéographiste

2. 영화제작(Production cinématographique)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59.11 C - **영화 제작 (스튜디오 촬영 및 애니메이션 제외).**

임금근로자

다음의 직능을 수행하는 임금 근로자

- 연출 분야 (Branche réalisation)

1	영화감독	Réalisateur cinéma
2	CF 감독	Réalisateur de films publicitaires
3	2팀 전문감독	Technicien réalisateur deuxième équipe cinéma
4	영화 연출 기술 조언	Conseiller technique à la réalisation cinéma
5	제1조감독	Premier assistant réalisateur cinéma
6	제2조감독	Second assistant réalisateur cinéma
7	조감독	Auxiliaire à la réalisation cinéma
8	영화스크립터	Scripte cinéma
9	보조스크립터	Assistant scripte cinéma
10	영화 이미지 전문가	Technicien retour image cinéma
11	역할분배 제1조수	Premier assistant à la distribution des rôles cinéma
12	단역 담당자	Chargé de la figuration cinéma
13	단역 담당자 조수	Assistant au chargé de la figuration cinéma
14	연습 담당자	Répétiteur cinéma
15	아역 관리자	Responsable des enfants cinéma

- 행정 분야(Branche administration)

16	제작 감독	
17	영화 제작 관리자	Directeur de production cinéma
18	영화 제작 관리 보조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 cinéma
19	회계 보조관리자	Administrateur adjoint comptable cinéma
20	영화제작 비서	Assistant comptable de production cinéma

- 제작진행 분야(Branche régie)

21	제작 진행 총감독	Régisseur général cinéma
22	제작 진행 부감독	Régisseur adjoint cinéma
23	제작 진행 보조	Auxiliaire à la régie cinéma

- **이미지 분야**(Branche image)

24	**촬영 감독**	Directeur de la photographie cinéma
25	**촬영기사**	Cadreur cinéma
26	**특수 촬영기사**	Cadreur spécialisé cinéma
27	**제1 촬영조수**	Premier assistant opérateur cinéma
28	**제2 촬영조수**	Deuxième assistant opérateur cinéma
29	**원격촬영장치 전문가**	Technicien d'appareils télécommandés (prise de vues) cinéma
30	**세트 사진작가**	Photographe de plateau cinéma

- **음향 분야**(Branche son)

31	**제1 음향기사**	Chef opérateur de son cinéma
32	**보조 음향기사**	Assistant opérateur du son cinéma

- **의상 분야**(Branche costumes)

33	**영화의상 디자이너**	Créateur de costume cinéma
34	**무대의상감독**	Chef costumier cinéma
35	**영화의상 제작자**	Costumier cinéma
36	**의상담당자**	Habilleur cinéma
37	**의상 염색 담당자**	Teinturier patineur costumes cinéma
38	**의상 제작실장**	Chef d'atelier costumes cinéma
39	**의상 재단사**	Couturier costumes cinéma

- **분장 분야**(Branche maquillage)

40	**분장감독**	Chef maquilleur cinéma
41	**분장사**	Maquilleur cinéma

- **헤어 분야**(Branche coiffure)

42	**수석헤어담당자**	Chef coiffeur cinéma
43	**헤어담당자**	Coiffeur cinéma

- 영화미술 분야(Branche décoration)

44	세트 디자이너	Chef décorateur cinéma
45	영화 세트장식가	Ensemblier décorateur cinéma
46	세트장식가 제1조수	Premier assistant décorateur cinéma
47	세트장식가 제2조수	Deuxième assistant décorateur cinéma
48	세트장식가 제3보조	Troisième assistant décorateur cinéma
49	영화 실내장식가	Ensemblier cinéma
50	외부 영화미술 관리자	Régisseur d'extérieurs cinéma
51	세트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de plateau cinéma
52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de décor cinéma
53	세트 도색 담당자	Peintre d'art de décor cinéma
54	세트장식 그래픽아티스트	Infographiste de décor cinéma
55	세트 일러스트레이터	Illustrateur de décor cinéma
56	도배사	Chef tapissier de décor cinéma
57	영화세트 도배사	Tapissier de décor cinéma

- 편집 분야(Branche montage)

58	영화 편집감독	Chef monteur cinéma
59	편집담당자 제1조수	Premier assistant monteur cinéma
60	편집담당자 제2조수	Deuxième assistant monteur cinéma
61	음향 편집담당자	Chef monteur son cinéma
62	음향효과전문가	Bruiteur
63	음향효과 보조담당자	Assistant bruiteur
64	포스트프로덕션 코디네이터	Coordinateur de post-production cinéma

- 믹싱 분야(Branche mixage)

65	영화 믹싱기사	Mixeur cinéma
66	보조 영화 믹싱기사	Assistant mixeur cinéma

- 전문 기술 협력 분야(Branche collaborateurs techniques spécialisés)

67	물리적효과 담당자	Superviseur d'effets physiques cinéma
68	물리적효과 보조자	Assistant effets physiques cinéma
69	음향 연출자	Animatronicien cinéma

- **촬영 담당**(Branche machinistes de prises de vues)

70	**촬영 담당자**	Chef machiniste prise de vues cinéma
71	**촬영 보조담당자**	Sous-chef machiniste de prise de vues cinéma
72	**영화 촬영기사**	Machiniste de prise de vues cinéma

- **촬영 전기기사**(Branche électriciens de prise de vues)

73	**촬영 전기기사**	Chef électricien prise de vues cinéma
74	**촬영 전기기사 보조**	Sous-chef électricien prise de vues cinéma
75	**촬영 전기기사**	Electricien prise de vues cinéma
76	**전기기사 관리감독**	Conducteur de groupe cinéma

- **세트 건축 분야**(Branche construction de décors)

77	**건축가**	Chef constructeur cinéma
78	**건축 기계부문 담당자**	Chef machiniste de construction cinéma
79	**건축 기계부문 부조수**	Sous-chef machiniste de construction cinéma
80	**영화 건축 기계부문 담당**	Machiniste de construction cinéma
81	**세트 건축 담당 전기기사**	Chef électricien de construction cinéma
82	**세트건축 전기기사 보조**	Sous-chef électricien de construction cinéma
83	**건축 전기기사**	Electricien de construction cinéma
84	**소목 담당자**	Chef menuisier de décor cinéma
85	**소목 부담당자**	Sous-chef menuisier de décor cinéma
86	**제도공**	Menuisier traceur de décor cinéma
87	**영화 소목장이**	Menuisier de décor cinéma
88	**세트 목수**	Toupilleur de décor cinéma
89	**마케트 전문가**	Maquettiste de décor cinéma
90	**세트 벽돌공**	Maçon de décor cinéma
91	**철물공**	Chef serrurier de décor cinéma
92	**철물 담당자**	Serrurier de décor cinéma
93	**세트조각가**	Chef sculpteur de décor cinéma
94	**세트조각가**	Sculpteur de décor cinéma
95	**세트 제작 스태프**	Chef staffeur de décor cinéma
96	**세트 제작 스태프**	Staffeur de décor cinéma
97	**세트 도색 제1담당자**	Chef peintre de décor cinéma
98	**세트 도색 부제1**	Sous-chef peintre de décor cinéma

99	**영화 세트 도색**	Peintre de décor cinéma
100	**캘리그래퍼**	Peintre en lettres de décor cinéma
101	**세트용 모조 목재 및 석재 제작자**	Peintre faux bois et patine décor cinéma

3. 음향 분야(Edition phonographique)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59.20 Z – 음향 및 음악의 녹음 – 음반이나 녹음 스튜디오 및 라디오 스튜디오 제외.

임금근로자

다음의 직능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

- **음향**(Son)

1	**녹음 엔지니어**	Ingénieur du son
2	**믹싱기사**	Mixeur
3	**음악 프로그래머**	Programmeur musical
4	**음향효과전문가**	Bruiteur
5	**음향기사**	Sonorisateur
6	**악기전문가**	Technicien des instruments/technicien backliner
7	**음향편집담당자**	Monteur son
8	**마이크 담당자**	Perchman-perchiste
9	**음향기사 제1 조수**	1erassistant son
10	**녹음 기사**	Preneur de son/opérateur du son
11	**음향 일러스트레이터**	Illustrateur sonore
12	**전문 음향감독**	Régisseur son/technicien son
13	**음향 보조기사**	Assistant son
14	**음향기사 조수**	2e assistant son

- 영상 및 이미지(Image graphisme)

1	촬영감독/제1 카메라 오퍼레이터	Directeur de la photo/chef OPV
2	촬영기사/카메라맨/카메라 오퍼레이터	Cadreur/cameraman/OPV
3	촬영 보조/카메라맨/카메라 오퍼레이터	Assistant cadreur/cameraman/OPV
4	애니메이터	Animateur (vidéogramme d'animation)
5	현장 진행자	Chauffeur de salle
6	일러스트레이터	Illustrateur
7	사진작가	Photographe
8	진행자	Présentateur
9	영상 엔지니어	Ingénieur de la vision
10	영상전문가	Technicien vidéo
11	촬영 제1조수/카메라맨/카메라 오퍼레이터	1er assistant : cadreur/cameraman/OPV
12	촬영 제2조수/카메라맨/카메라 오퍼레이터	2e assistant : cadreur/cameraman/OPV
13	문서 담당자	Rédacteur
14	녹음 기사	Opérateur magnétoscope
15	슬로우모션 녹음기사	Opérateur magnétoscope ralenti
16	영사기사	Opérateur projectionniste
17	프롬프터기사	Opérateur prompteur
18	영상 편집기사	Opérateur régie vidéo
19	합성 담당자	Opérateur synthétiseur

- 연출(Réalisation)

1	감독	Réalisateur
2	예술감독	Réalisateur artistique
3	연출 기술자문	Conseiller technique à la réalisation
4	스크립트	Script
5	감독 제1조수	1er assistant réalisateur
6	보조감독	Assistant réalisateur
7	제2 보조감독	2e assistant réalisateur

- 제작진행(Régie)

1	제작진행감독	Régisseur général
2	제작진행 보조감독	Régisseur/régisseur adjoint
3	오케스트라 감독	Régisseur d'orchestre
4	무대 진행감독	Régisseur de plateau/chef de plateau
5	무대진행 어시스턴트	Aide de plateau/assistant de plateau

- **후반작업**(Production-postproduction)

1	**후반작업 감독**	Directeur de production
2	**후반작업 감독/후반작업 감당자**	Directeur de postproduction/chargé de postproduction
3	**편집담당자 특수효과 담당자/특수효과 담당자**	Monteur truquiste/truquiste
4	**예술감독**	Directeur artistique de production
5	**연습 담당자**	Répétiteur
6	**제작 담당자**	Chargé de production
7	**예술부문 담당자**	Directeur de la distribution artistique
8	**제작 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
9	**제작 예술 조언**	Conseiller artistique de production
10	**스크립트 에디터**	Coordinateur d'écriture (script éditeur)
11	**다큐멘탈리스트**	Documentaliste/iconographe
12	**편집담당자/제1편집담당자**	Monteur/chef monteur
13	**보조 편집자/편집담당자 조수**	Assistant monteur/monteur adjoint
14	**예술조감독**	Assistant du directeur de la distribution artistique
15	**예술 제작 보조감독**	Assistant du directeur de la production artistique
16	**제작 보조**	Assistant de production
17	**후반작업 조수**	Assistant de postproduction
18	**제작비서**	Secrétaire de production
19	**통번역가**	Traducteur/interprète

- **분장-헤어**(Maquillage-coiffure)

1	**가발 및 헤어담당자**	Coiffeur perruquier/chef coiffeur perruquier
2	**스타일리스트**	Styliste
3	**가발제작자/제1분장사**	Maquilleur/maquilleur posticheur/chef maquilleur/chef maquilleur posticheur
4	**무대의상가/제1무대의상가**	Costumier/chef costumier
5	**헤어담당자/제1헤어담당자**	Coiffeur/chef coiffeur
6	**의상담당자**	Habilleur
7	**보조스타일리스트**	Assistant du styliste
8	**보조헤어담당자**	Assistant du coiffeur
9	**보조분장사**	Assistant du maquilleur

- **조명**(Lumière)

1	**조명기사**	Eclairagiste
2	**전기기사/제1전기기사**	Electricien/chef électricien
3	**조명전문가**	Technicien lumière

- **무대디자이너-무대장치가**(Décoration-machiniste)

1	**도배 담당자**	Tapissier décorateur
2	**무대디자이너/무대장식가/장식건축가/장식 조수**	Décorateur/chef décorateur/architecte décorateur/assistant décorateur
3	**건축가**	Constructeur/chef constructeur
4	**중장비기사**	Conducteur de groupe/groupman
5	**실내장식가/실내장식 조수**	Ensemblier/assistant ensemblier
6	**무대장치가**	Machiniste/chef machiniste
7	**마케트 보조스태프**	Maquettiste staffeur
8	**스태프**	Staffeur/chef staffeur
9	**소목 담당자**	Menuisier/chef menuisier
10	**도색담당자**	Chef peintre
11	**세트도색/세트도색담당자**	Peintre décorateur/chef peintre décorateur
12	**무대장식조각가/무대장식 수석조각가**	Sculpteur décorateur/chef sculpteur décorateur
13	**도배 담당자**	Tapissier
14	**무대 설치 기술자**	Accrocheur rigger
15	**무대 기술자**	Technicien plateau
16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4. 제작과 행사 진행을 위한 기술 지원

(Prestations techniques au service de la création et de l'événement)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59.11 C – **영화를 위한 영상 제작 (세트 촬영만 해당)**

59.12 Z – **영화, 영상, TV 프로그램의 후반작업 (애니메이션 제외).**

59.20 Z – **녹음과 음반 제작 (스튜디오 작업만 해당)**

90.02 Z – **공연의 진행을 돕는 용역 업체**

임금근로자

목록 A : 시청각물 - 영화

NAF 59.11 C, 59.12 Z et 59.20 Z**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능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

- 이미지(Image)

1	**전문 기자**	Technicien de reportage
2	**포인터**	Pointeur AV
3	**카메라맨**	Cadreur AV
4	**촬영기사**	Opérateur de prises de vue
5	**수석촬영기사**	Chef opérateur de prises de vue AV

- 음향(Son)

1	**보조 녹음기사**	Assistant son
2	**녹음기사**	Opérateur du son
3	**전문 녹음기사**	Opérateur supérieur du son
4	**수석녹음기사**	Chef opérateur du son
5	**녹음엔지니어**	Ingénieur du son
6	**음향전송전문가**	Technicien transfert son
7	**더빙기사**	Opérateur repiquage
8	**네거티브 필름 현상 담당자**	Opérateur report optique
9	**더빙 전문가**	Technicien repiquage
10	**네거티브 필름 제작 전문가**	Technicien report optique
11	**음향효과 담당자**	Créateurs d'effets sonores
12	**음향복원 전문가**	Technicien rénovation son

- 무대(Plateaux)

1	**영상부문 무대 보조스태프**	Assistant de plateau AV
2	**리거**	Riggers
3	**무대장치 설치 담당**	Machinistes AV
4	**무대장치 담당자**	Chef machiniste AV
5	**촬영부분 전기기사**	Electricien prise de vue
6	**조정부분 전기기사**	Electricien pupitreur

7	조명설치기사	Poursuiteur
8	수석조명기사	Chef poursuiteur AV
9	블로커	Blocker
10	중장비 담당자	Groupiste flux AV
11	촬영부분 전기기사	Chef électricien prise de vue
12	조명 담당자	Chef d'atelier lumière
13	무대 담당자	Chef de plateau AV
14	헤어담당자	Coiffeur
15	분장사	Maquilleur
16	제1분장사	Chef maquilleur
17	의상담당자	Habilleur
18	무대의상가	Costumier
19	무대 의상 제작자	Chef costumier

- 감독(Réalisation)

1	캐스팅 디렉터	Directeur casting
2	연출 제2조수	2e assistant de réalisation AV
3	연출 제1조수	1er assistant de réalisation AV
4	스크립터 AV	Scripte AV
5	감독 AV	Réalisateur AV

- 개발, 편집 및 유지보수(Exploitation, régie et maintenance) -

1	유지보수 전문가	Technicien de maintenance N1
2	유지보수 전문가	Technicien de maintenance N2
3	유지보수 엔지니어	Ingénieur de maintenance
4	합성 담당자	Opérateur synthétiseur
5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Infographiste AV
6	수석 그래픽디자이너	Chef graphiste AV
7	특수효과 담당자 AV	Truquiste AV
8	녹화기사	Opérateur magnétoscope
9	저속촬영 기사	Opérateur « ralenti »
10	영상 서버기사	Opérateur serveur vidéo
11	영화 상영 담당자	Assistant d'exploitation AV
12	상영 전문가	Technicien d'exploitation AV
13	상영 고급 기술자	Technicien supérieur d'exploitation AV
14	영상 엔지니어	Ingénieur de la vision
15	영상 장비 담당자	Chef d'équipement AV
16	운송수단 운전자	Conducteur de moyens mobiles
17	안테나 코디네이터	Coordinateur d'antenne
18	안테나 관리자	Chef d'antenne

- **제작 관리**(Gestion de production)

1	**제작 보조**	Assistant de production AV
2	**촬영 운영 관리 보조**	Assistant d'exploitation en production
3	**프로덕션 담당자**	Chargé de production AV
4	**프로덕션 디렉터**	Directeur de production AV
5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Coordinateur de production
6	**제작 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
7	**편집자**	Régisseur

- **무대 미술**(Décoration et accessoires)

1	**무대장식감독**	Régisseur décors
2	**무대장식 보조인력**	Aide décors
3	**무대장치가**	Machiniste décors
4	**무대장치 조각가**	Sculpteur décors
5	**철물 담당자**	Serrurier métallier
6	**도배 담당자**	Tapissier décors
7	**도장공**	Peintre
8	**실내장식가**	Peintre décors
9	**도색가**	Chef peintre
10	**소목 담당자**	Menuisier décors
11	**무대장치건축가**	Chef constructeur décors
12	**무대장식 제2조수**	2nd assistant décors
13	**무대장식 제1조수**	1er assistant décors
14	**무대장식담당자**	Chef décorateur
15	**제작실 관리자**	Chef d'atelier décors
16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17	**실내장식가**	Ensemblier

- **후반작업, 더빙 및 자막**(Postproduction, doublage et sous-titrage)

1	**저작 전문가**	Technicien authoring
2	PAD **기사**	Opérateur de PAD/bandes antenne
3	**영상 복제**	Agent de duplication AV
4	**영상 복제담당**	Opérateur de duplication AV
5	**이미지스캔담당자**	Opérateur scanner imageur
6	**디지털복원기사**	Opérateur en restauration numérique

7	**디지털복원전문가**	Technicien restauration numérique
8	**영사기사** AV	Projectionniste AV
9	**대사기록원**	Releveur de dialogue
10	**탐지가**	Repéreur
11	**검출원**	Détecteur
12	**캘리그라퍼**	Calligraphe
13	**번역.각색가**	Traducteur-adaptateur
14	**번역가**	Traducteur
15	**각색가**	Adaptateur
16	**타이피스트 - 입력기사**	Dactylographe de bande ¯ opérateur de saisie
17	**시뮬레이션 기사**	Opérateur de repérage/simulation
18	**오디오 기술자**	Audio descripteur
19	**예술감독**	Directeur artistique
20	**자막 편집자**	Monteur sous-titres
21	**편집 싱크로 담당자**	Monteur synchro
22	**커팅머신 담당자**	Opérateur graveur
23	**예술 책임**	Responsable artistique
24	**예술 보조**	Assistant artistique
25	**언어 코디네이터**	Coordinateur linguistique
26	**보조 언어 코디네이터**	Assistant coordinateur linguistique
27	**영상 편집 보조**	Assistant monteur AV
28	**편집담당자**	Monteur flux
29	**편집담당자**	Chef monteur flux
30	**편집담당자 특수효과 담당자** AV	Monteur truquiste AV
31	**텔레비전영화 감독**	Opérateur télécinéma
32	**색조정인**	Etalonneur
33	**제작진행 감독**	Chef opérateur-étalonneur
34	**음향효과전문가**	Bruiteur
35	**보충 음향효과전문가**	Bruiteur de complément
36	**후반작업 조수**	Assistant de postproduction
37	**후반작업 담당자**	Chargé de postproduction

-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영상효과(Animation et effets visuels numériques)

1	**멀티미디어 담당자**	Chef de projet multimédia
2	**멀티미디어 기술담당자**	Responsable technique multimédia

이 분야의 직능들은 애니메이션 영화의 직업군과 대응한다. (하단의 9항과 비교)

목록 B : 실연

NAF 90.02 Z에서 명기한 것처럼 임금 노동자의 직능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 **전반적 연출**(Régie générale)

1	**총무대감독**	Régisseur général
2	**기술감독**	Directeur technique
3	**지원 감독**	Directeur logistique
4	**로지스틱스 전문가**	Logisticien
5	**기술감독 보조**	Assistant directeur technique
6	**로지스틱스 보조**	Assistant logisticien
7	**무대 전문가**	Technicien de scène/plateau
8	**무대 보조**	Assistant technicien de scène/plateau

- **무대**(Plateau)

1	**무대감독**	Régisseur/régisseur de scène/de salle
2	**공사 담당자**	Responsable de chantier
3	**제1 백라이너**	Chef backliner
4	**전문 백라이너**	Technicien instrument de musique/backliner
5	**무대 보조**	Aide de scène/plateau
6	**로드**	Road

- **음향**(Son)

1	**음향 기획자**	Concepteur son
2	**무대음향감독**	Régisseur son
3	**음향 엔지니어**	Ingénieur de sonorisation
4	**시스템전문가**	Technicien système
5	**음향전문가**	Technicien son
6	**음향기사**	Sonorisateur
7	**보조 음향기사**	Assistant sonorisateur
8	**컴퓨터**	Pupitreur son SV
9	**녹음 기사**	Opérateur son SV
10	**음향 부분 보조스태프**	Aide son

- **조명**(Lumière)

1	**조명 연출/조명기사**	Concepteur lumière/éclairagiste
2	**조명감독**	Régisseur lumière
3	**전문가조명**	Technicien lumière
4	**조명 조정**	Pupitreur lumière SV
5	**조명 보조**	Assistant lumière
6	**핀조명 담당자**	Poursuiteur
7	**조명 스태프**	Aide lumière

- **기계 및 설비**(Structure-machinerie)

1	**구조설계 엔지니어**	Ingénieur structure
2	**구조설계 엔지니어 조수**	Assistant ingénieur structure
3	**구조설계 관리인**	Régisseur structure
4	**리거감독**	Chef rigger
5	**무대장치가**	Chef machiniste de scène
6	**편집담당자**	Chef monteur de structure
7	**촬영 및 행사 전문 정비사**	Chef technicien de maintenance en tournée/festival
8	**구조설계 전문가**	Technicien de structure/constructeur
9	**리깅 담당자**	Rigger/accrocheur
10	**무대장치가**	Machiniste de scène
11	**촬영장 및 행사 정비 담당자**	Technicien de maintenance en tournée/festival
12	**무대장치가 조수/리거 조수**	Assistant machiniste scène/assistant rigger
13	**설비 전문가**	Technicien de structure
14	**스카폴더**	Echafaudagiste/scaffoldeur
15	**구조설비 조립공**	Monteur de structures

- **비디오 이미지**(Vidéo-image)

1	**감독**	Réalisateur de SV
2	**제작 담당자**	Chargé de production SV
3	**디지털 그래픽디자이너**	Infographiste audiovisuel
4	**프로그래머/디지털 인코더**	Programmeur/encodeur multimédia
5	**야외용 LED 스크린담당자**	Technicien écran plein jour
6	**이미지 보정 전문가**	Pupitreur images monumentales
7	**영상 송출 전문가**	Technicien vidéoprojection

8	**영상전문가**	Technicien de la vision SV
9	**스크립터**	Scripte de SV
10	**야외용 LED스크린 조수**	Assistant écran plein jour
11	**송출용 이미지 전문가**	Technicien images monumentales
12	**촬영기사**	Opérateur de caméra
13	**촬영보조**	Assistant vidéo SV
14	**녹음기사**	Opérateur magnéto SV

- **불꽃놀이**(Pyrotechnie)

1	**불꽃놀이 기획자**	Concepteur de pyrotechnie
2	**발사 담당자**	Chef de tir
3	**화약 전문가**	Technicien de pyrotechnie K4
4	**불꽃 제조업자**	Artificier

- **전기**(Electricité)

1	**전기기사**	Chef électricien
2	**전기기사**	Electricien
3	**블로커**	Blockeur
4	**기계공**	Mécanicien groupman
5	**보조 전기기사**	Assistant électricien

- **장식 및 소품**(Décors-accessoires)

1	**무대장식가**	Chef décorateur
2	**설비 및 무대 장치 기술자**	Concepteur technique machinerie/décor
3	**무대장식가 보조**	Assistant chef décorateur
4	**세트건축가**	Chef constructeur de décor/machinerie
5	**소목 담당자**	Chef menuisiers de décors
6	**도색담당자**	Chef peintre décorateur
7	**철물 담당자/철물 담당자**	Chef serrurier/serrurier métallier de théâtre
8	**무대 조각가**	Chef sculpteur de théâtre
9	**도배 담당자**	Chef tapissier de théâtre
10	**무대스태프 감독**	Chef staffeur de théâtre (mouleur/matériaux de synthèse)
11	**설비 설치 담당자**	Constructeur de machinerie/de décors
12	**소목 담당자**	Menuisier de décors

13	도색담당자	Peintre décorateur
14	도색담당자	Peintre patineur
15	철물 담당자/철물 담당자	Serrurier/serrurier métallier de théâtre
16	무대 조각가	Sculpteur de théâtre
17	도배 담당자	Tapissier de théâtre
18	극단 스태프	Staffeur de théâtre
19	보조 무대 설비 설치 및 건축	Assistant constructeur de machinerie/décors
20	보조 소목 담당자	Assistant menuisier de décors
21	보조 도색담당자	Assistant peintre décorateur
22	보조 철물 담당자	Assistant serrurier/métallier de théâtre
23	보조 도배 담당자	Assistant tapissier de théâtre
24	보조 스태프	Assistant staffeur de théâtre
25	무대장식 보조	Aide décors

- 의상-액세서리-분장-헤어(Costume-accessoire-maquillage-coiffure)

1	의상 기획자/무대의상가	Concepteur de costume/costumier
2	의상 감독	Réalisateur de costume
3	재단사	Chef tailleur couturier
4	염색사	Chef teinturier
5	컬러리스트	Chef coloriste
6	모자제작자	Chef chapelier
7	마스크 제작자	Chef réalisateur masques
8	분장사	Chef maquilleur
9	소품담당자	Chef accessoiriste
10	모자제작자 (여성용)	Chef modiste
11	디자이너	Couturier/tailleur couturier
12	헤어 및 가발담당자	Coiffeur/posticheur
13	특수 분장사	Maquilleur/maquilleur effets spéciaux
14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15	가발제작자	Modiste
16	의상 조감독	Assistant réalisateur de costume
17	재단사 조수	Assistant couturier/assistant couturier tailleur
18	보조염색사	Assistant teinturier
19	보조컬러리스트	Assistant coloriste
20	보조모자제작자	Assistant chapelier
21	보조 헤어담당자	Assistant coiffeur
22	보조 분장사	Assistant maquilleur
23	보조 소품담당자	Assistant accessoiriste
24	보조 모자제작자 (여성용)	Assistant modiste
25	무대의상제작자 조수	Aide costumière

5. 라디오방송(Radiodiffusion)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59.20 Z – **녹음** (**라디오 스튜디오만 해당**) ;

60.10 Z – **라디오방송 – 기록욕은 제외**

임금근로자

임금노동자는 아래에 명시된 직능을 수행한다 :

1	**부제작자**	Adjoint au producteur
2	**진행자**	Animateur
3	**진행기술연출**	Animateur technicien réalisateur
4	**보조 기술감독**	Assistant technicien réalisateur
5	**전문 외부 협력인사**	Collaborateur spécialisé d'émission
6	**프로그램 상담역**	Conseiller de programme
7	**전문 게스트**	Intervenant spécialisé
8	**대본 리더**	Lecteur de texte
9	**음악 각색**	Musicien copiste radio
10	**사회자**	Présentateur
11	**대표코디네이터**	Producteur coordinateur délégué
12	**라디오 감독**	Producteur délégué d'émission radio
13	**라디오 연출**	Réalisateur radio
14	**오퍼레이팅 전문가**	Technicien d'exploitation
15	**전문가감독**	Technicien réalisateur
16	**번역자**	Traducteur

6 **및** 7. **사설 공연 및 보조혜택을 받는 공연**(Spectacle vivant privé et spectacle vivant subventionné)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첫 번째 분류 :

공연에 참여하는 자로서, 90.01 Z NAF 코드의 예술 및 공연에 등장하는 직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분류 :

공연 주체의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연유급휴가제도에 가입한 자.

세 번째 분류 :

1943-10-13일 행정명령 10조와 1999-03-18법 99조 198항에서 정의한 것처럼 사전에 신고한 비정기적 공연을 여는 주체

임금 근로자

다음의 직능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 (보조나 조수의 역할도 상위 업무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1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2	제작 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
3	촬영 관리자	Administrateur de tournée
4	세트 건축가	Architecte décorateur
5	무기제조자	Armurier
6	불꽃놀이제조자/화약전문가	Artificier/technicien de pyrotechnie
7	제작 담당자	Attaché de production/chargé de production
8	장화제조업자	Bottier
9	무대용 모자제작자	Chapelier/modiste de spectacles
10	천장 담당자	Cintrier
11	헤어 및 가발 담당자	Coiffeur/posticheur
12	미술/안무/음악 연출 조언	Collaborateur artistique du metteur en scène/du chorégraphe/du directeur musical
13	조명연출/조명기사	Concepteur des éclairages/éclairagiste
14	음향 기획/녹음엔지니어	Concepteur du son/ingénieur du son
15	기술 조언	Conseiller technique
16	의상제작자	Costumier
17	세트장식가	Décorateur
18	프로듀서	Directeur de production
19	기술감독	Directeur technique
20	극작가	Dramaturge
21	전기기사	Electricien

22	무대 장식가	Ensemblier de spectacle
23	의상담당자	Habilleur
24	다림질 및 의상 손질 담당	Lingère/repasseuse/retoucheuse
25	무대장치가/무대 설비 담당	Machiniste/constructeur de décors et structures
26	분장사	Maquilleur
27	소목 담당자	Menuisier de décors
28	플로어 설치담당자 (서커스)	Metteur en piste (cirques)
29	음향편집담당자	Monteur son
30	조명 기사/조정	Opérateur lumière/pupitreur/technicien CAO-PAO
31	녹음기사	Opérateur son/preneur de son
32	도색담당자	Peintre de décors
33	세트도색담당자	Peintre décorateur
34	가발담당자	Perruquier
35	깃털세공담당자	Plumassier de spectacles
36	핀조명담당자	Poursuiteur
37	프롬프터	Prompteur
38	감독 헤어, 가발	Réalisateur coiffure, perruques
39	의상감독	Réalisateur costumes
40	조명감독	Réalisateur lumière
41	마스크 제작 및 분장 감독	Réalisateur maquillages, masque
42	음향 감독	Réalisateur son
43	제작진행감독	Régisseur/régisseur de production
44	오케스트라 감독	Régisseur d'orchestre
45	무대현장감독 (축제일 경우에 한함)	Régisseur de salle et de site (dans le cadre d'un festival exclusivement)
46	무대감독/무대설비 감독	Régisseur de scène/régisseur d'équipement scénique
47	무대총감독	Régisseur général
48	무대조명감독	Régisseur lumière
49	무대음향진행감독	Régisseur plateau son (retours)
50	무대음향감독	Régisseur son
51	프롬프터	Répétiteur/souffleur
52	장비담당자	Rigger (accrocheur)
53	무대설계자	Scénographe
54	무대 조각가	Sculpteur de théâtre
55	무대 철물 담당자	Serrurier/serrurier métallier de théâtre
56	스태프	Staffeur
57	재단사/디자이너	Tailleur/couturier
58	무대 도배 담당자	Tapissier de théâtre

59	**콘솔 전문가**	Technicien console
60	**유지보수 전문가 (축제와 공연의 경우에 한함)**	Technicien de maintenance (dans le cadre d'une tournée et d'un festival exclusivement)
61	**무대 전문가**	Technicien de plateau
62	**특수효과전문가**	Technicien effets spéciaux
63	**악기 전문가 (백라인)**	Technicien instruments de musique (backline)
64	**조명 전문가**	Technicien lumière
65	**음향전문가/HF전문가**	Technicien son/technicien HF
66	**안전담당자 (서커스)**	Technicien de sécurité (cirques)
67	**발전기 담당자**	Technicien groupe électrogène (groupman)
68	**공연 색채 조정**	Teinturier coloriste de spectacles

- **비상업적 목적의 혼합 형식의 공연에서의 영상**(Audiovisuel dans les spectacles mixtes et/ou captations à but non commercial)

69	**촬영기사**	Cadreur
70	**제1기사**	Chef opérateur
71	**편집담당자**	Monteur
72	**이미지기사**	Opérateur image/pupitreur
73	**비디오 기사**	Opérateur vidéo
74	**영사기사**	Projectionniste
75	**영상 조정가**	Régisseur audiovisuel
76	**영상전문가**	Technicien vidéo

8. 텔레비전방송(Télédiffusion)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60.20 A – **종합편성채널 – 데이터뱅크 제외** ;

60.20 B – **장르 채널 – 데이터뱅크 제외**

임금근로자

다음의 직능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 :

기획/제작(CONCEPTION/PROGRAMME)

- 기획 및 제작(Conception-programme)

1	예술 조감독	Adjoint au producteur artistique
2	문학적 조언	Collaborateur littéraire
3	프로그램 조언	Conseiller de programme
4	작가 관리	Coordinateur d'écriture
5	예술부문 연출자/캐스팅 담당자	Directeur de la distribution artistique/resp. casting
6	다큐멘탈리스트	Documentaliste
7	대본 검수자	Lecteur de textes
8	예술프로듀서	Producteur artistique
9	음악 프로그래머	Programmateur musical

- 방송(Antenne directe)

10	사회자	Animateur
11	진행자	Présentateur
12	발표자	Annonceur
13	프롬프터 담당자	Opérateur prompteur

제작-제작진행(PRODUCTION-REGIE)

- 제작(Production)

14	제작 보조	Assistant de production
15	방송 전문 조언가	Collaborateur spécialisé d'émission
16	사전진행자	Chauffeur de production
17	촬영 감독	Chef de production
18	촬영 담당자	Chargé de production
19	제작 진행 담당자	Chargé d'encadrement de production
20	프로듀서	Directeur de production
21	특별 출연자	Intervenant spécialisé
22	방송 출연자	Intervenant d'émission
23	방송 전화교환원	Téléphoniste d'émission
24	현장탐방 전문가	Technicien de reportage

- **제작진행**(Régie)

25	**감독/외부감독**	Régisseur/régisseur d'extérieur
26	**조감독**	Régisseur adjoint
27	**총감독**	Régisseur général

- **연출**(RÉALISATION)

28	**감독**	Réalisateur
29	**제1조감독**	1er assistant réalisateur
30	**조감독**	Assistant réalisateur
31	**제2 보조 감독**	2e assistant réalisateur
32	**스크립터**	Scripte

제작(FABRICATION)

- **무대제작(스튜디오 및 야외)**(plateau (studio ou extérieur))-

33	**무대 스태프**	Aide de plateau
34	**무대연출자**	Chef de plateau
35	**조명기사/전기기사**	Chef éclairagiste/chef électricien
36	**그룹맨**	Conducteur de groupe
37	**조명/전기기사**	Eclairagiste/électricien
38	**보조 조명**	Assistant lumière

- **도색**(Peinture) -

39	**도색담당자**	Peintre
40	**도색담당자 세트장식가**	Peintre décorateur
41	**세트장식가 도색담당자**	Décorateur peintre

- **도배**(Tapisserie)

42	**도배 담당자**	Tapissier
43	**도배 담당자 세트장식가**	Tapissier décorateur
44	**세트장식가 도배 담당자**	Décorateur tapissier

- **세트 장식**(Construction décors) -

45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46	**무대장식가**	Chef machiniste
47	**무대장식 건축가**	Constructeur en décors
48	**무대장치설치 담당자**	Machiniste
49	**소목 및 제도 담당자**	Menuisier traceur
50	**소목 담당자**	Menuisier

- **이미지 (비디오)**(IMAGE (dont vidéo))

51	**보조 카메라 오퍼레이터**	Assistant OPV
52	**카메라 오퍼레이터**	OPV
53	**제1카메라 오퍼레이터/제1카메라맨**	Chef OPV/chef cameraman
54	**촬영감독**	Directeur de la photo
55	**비디오엔지니어**	Ingénieur de la vision
56	**슬로우모션 기사**	Opérateur ralenti
57	**사진작가**	Photographe
58	**영상전문가**	Technicien vidéo
59	**특수효과 담당자**	Truquiste

- **음향**(SON)

60	**녹음보조**	Assistant à la prise de son
61	**음향효과전문가**	Bruiteur
62	**녹음기사/녹음엔지니어**	Chef opérateur du son/ingénieur du son
63	**음향일러스트레이터**	Illustrateur sonore
64	**믹싱기사**	Mixeur
65	**동시녹음기사**	Preneur de son/opérateur du son

분장·헤어·의상(MAQUILLAGE-COIFFURE-COSTUME)

- 분장(Maquillage)

66	수석 분장 및 가발 담당자	Chef maquilleur/chef maquilleur posticheur
67	분장사	Maquilleur/maquilleur posticheur

- 헤어(Coiffure)

68	헤어 및 가발 담당자	Chef coiffeur perruquier
69	헤어 및 가발 담당자	Coiffeur/coiffeur perruquier

- 의상(Costume)

70	무대의상디자이너	Chef costumier
71	무대 의상가	Costumier
72	의상 제작자/스타일리스트	Créateur de costume/styliste
73	의상담당자	Habilleur

- 무대장치(DECORATION)

74	보조 세트장식가	Assistant décorateur
75	세트장식가	Chef décorateur
76	세트장식가/실내장식가	Décorateur/décorateur ensemblier
77	세트디자이너	Dessinateur en décor

편집-후반작업-그래픽(MONTAGE-POSTPRODUCTION-GRAPHISME)

- **편집**(Montage)

78	**편집감독**	Chef monteur
79	**편집담당자**	Monteur
80	**특수효과 담당자**	Chef monteur truquiste
81	**싱크로기사**	Opérateur synthétiseur

- **그래픽**(Graphisme)

82	**그래픽/컴퓨터그래픽/비디오그래픽**	Graphiste/infographiste/vidéographiste
83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Dessinateur d'animation/dessinateur en générique

- **기타**(AUTRES FONCTIONS)

84	**통번역가**	Traducteur interprète
85	**예술 기획**	Dessinateur artistique
86	**평론가**	Chroniqueur
87	**편성책임자**	Chef de file
88	**대역**	Doublure lumière

9.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Production de films d'animation)

고용인

고용인의 직능활동은 다음의 직업분류코드(NAF)에서 명기되어야 한다 :

59.11 A –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제작** (**애니메이션 형식만 해당**)

59.11 B – **교육 또는 홍보 목적의 영화 – 애니메이션 형식만 해당** ;

59.11 C –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촬영** (**애니메이션 형식만 해당**) ;

59.12 Z – **영화관 상영용 영화, 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후반작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만 해당**).

임금근로자
다음의 직능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자

- 연출 분야(Filière réalisation)

1	감독	Réalisateur/réalisatrice
2	예술감독	Directeur artistique/directrice artistique
3	작가감독	Directeur d'écriture/directrice d'écriture
4	수석스토리보더	Chef storyboarder/chef storyboardeuse
5	스토리보더	Storyboarder/Storyboardeuse
6	조감독	1er assistant réalisateur/1re assistante réalisatrice
7	스크립터	Scripte/scripte
8	제2조감독	2e assistant réalisateur/2e assistante réalisatrice
9	작가 관리자	Coordinateur d'écriture/coordinatrice d'écriture
10	예술조감독	Assistant directeur artistique/assistante directrice artistique
11	보조 스토리보더	Assistant storyboarder/assistante storyboardeuse

- 기획 분야(Filière conception)

12	모델링 디렉터	Directeur de modélisation/directrice de modélisation
13	애니메이션 작화가	Chef dessinateur d'animation/chef dessinatrice d'animation
14	모델링 감수자	Superviseur de modélisation/superviseuse de modélisation
15	컬러리스트	Chef modèles couleur/chef modèles couleur
16	애니메이션 작화가	Dessinateur d'animation/dessinatrice d'animation
17	모델링그래픽아티스트	Infographiste de modélisation/infographiste de modélisation
18	모델 채색 담당자	Coloriste modèle/coloriste modèle
19	애니메이션 작화 보조	Assistant dessinateur d'animation/assistante dessinatrice d'animation
20	모델링 그래픽아티스트 조수	Assistant infographiste de

		modélisation/assistante infographiste de modélisation
21	디지털화 담당자	Opérateur digitalisation/opératrice digitalisation

- 레이아웃 분야(Filière lay-out)

22	레이아웃 감독	Directeur lay-out/directrice lay-out
23	노출지 담당자	Chef feuille d'exposition/chef feuille d'exposition
24	애니메이션 촬영담당자	Chef cadreur d'animation/chef cadreuse d'animation
25	레이아웃 담당자	Chef lay-out/chef lay-out
26	애니메이션 촬영기사	Cadreur d'animation/cadreuse d'animation
27	노출지 애니메이터	Animateur feuille d'exposition/animatrice feuille d'exposition
28	레이아웃 작화가	Dessinateur lay-out/dessinatrice lay-out
29	레이아웃 컴퓨터그래픽아티스트	Infographiste lay-out/infographiste lay-out
30	애니메이션 검수자	Détecteur d'animation/détectrice d'animation
31	레이아웃 작화가 조수	Assistant dessinateur lay-out/assistante dessinatrice lay-out
32	컴퓨터그래픽 레이아웃 조수	Assistant infographiste lay-out/assistante infographiste lay-out

- 애니메이션 분야(Filière animation)

33	애니메이션 감독	Directeur animation/directrice animation
34	수석 애니메이터	Chef animateur/chef animatrice
35	2D 컴퓨터그래픽아티스트	Chef infographiste 2 D/chef infographiste 2 D
36	제1조수	Chef assistant/chef assistante
37	애니메이터	Animateur/animatrice
38	모션캡쳐 담당자	Figurant mocap/figurante mocap
39	2D 그래픽아티스트	Infographiste 2 D/infographiste 2 D
40	애니메이터 조수	Assistant animateur/assistante animatrice
41	모션캡쳐 기사	Opérateur capture de mouvement/opératrice capture de mouvement
42	현장 리터치 기사	Opérateur retouche temps réel/opératrice retouche temps réel
43	동화원	Intervalliste/intervalliste
44	2D 그래픽아티스트 조수	Assistant infographiste 2 D/assistante infographiste 2 D

- **장식, 배경 및 조명**(Filière décors, rendu et éclairage)

45	**장식 감독**	Directeur décor/directrice décor
46	**배경 및 조명 감독**	Directeur rendu et éclairage/directrice rendu et éclairage
47	**세트장식가**	Chef décorateur/chef décoratrice
48	**배경 및 조명 감수자**	Superviseur rendu et éclairage/superviseuse rendu et éclairage
49	**세트장식가**	Décorateur/décoratrice
50	**배경 및 조명 그래픽아티스트**	Infographiste rendu et éclairage/infographiste rendu et éclairage
51	**매트 페인터**	Matt painter/matt painter
52	**보조 세트장식가**	Assistant décorateur/assistante décoratrice
53	**배경 및 조명 그래픽아티스트 조수**	Assistant infographiste rendu et éclairage/assistante infographiste rendu et éclairage

- **트레이싱, 스캔 및 채색**(Filière traçage, scan et colorisation)

54	**검수자**	Chef vérificateur d'animation/chef vérificatrice d'animation
55	**트레이싱 및 채색 책임자**	Chef trace-colorisation/chef trace-colorisation
56	**애니메이션 검수자**	Vérificateur d'animation/vérificatrice d'animation
57	**트레이싱 및 채색 검열자**	Vérificateur trace-colorisation/vérificatrice trace-colorisation
58	**스캔 담당자**	Responsable scan/responsable scan
59	**트레이싱 담당자**	Traceur/traceuse
60	**수채화 애니메이터**	Gouacheur/gouacheuse
61	**스캔 담당자**	Opérateur scan/opératrice scan

- **컴퍼지팅 분야**(Filière compositing)

62	**컴퍼지팅 감독**	Directeur compositing/directrice compositing
63	**수석 컴퍼지터**	Chef compositing/chef compositing
64	**컴퍼지팅 기사**	Opérateur compositing/opératrice compositing

65	**보조 컴퍼지터**	Assistant opérateur compositing/assistante opératrice compositing

- **스톱모션 분야**(Filière volume)

66	**스톱모션애니메이터**	Chef animateur volume/chef animatrice volume
67	**스톱모션 배경 애니메이터**	Chef décorateur volume/chef décoratrice volume
68	**스톱모션기사**	Chef opérateur volume/chef opératrice volume
69	**조형물 스톱모션**	Chef plasticien volume/chef plasticienne volume
70	**스톱모션 소품 담당자**	Chef accessoiriste volume/chef accessoiriste volume
71	**사출 담당자**	Chef moulage/chef moulage
72	**스톱모션 애니메이터**	Animateur volume/animatrice volume
73	**스톱모션 배경 애니메이터**	Décorateur volume/décoratrice volume
74	**스톱모션 기사**	Opérateur volume/opératrice volume
75	**스톱모션 조형물 제작자**	Plasticien volume/plasticienne volume
76	**스톱모션 소품담당자**	Accessoiriste volume/accessoiriste volume
77	**스톱모션 특수효과 전문가**	Technicien effets spéciaux volume/technicienne effets spéciaux volume
78	**스톱모션 사출 담당자**	Mouleur volume/mouleuse volume
79	**스톱모션 보조 애니메이터**	Assistant animateur volume/assistante animatrice volume
80	**보조 세트장식가**	Assistant décorateur volume/assistante décoratrice volume
81	**스톱모션 보조기사**	Assistant opérateur volume/assistante opératrice volume
82	**스톱모션 조형물 보조제작자**	Assistant plasticien volume/assistante plasticienne volume
83	**보조 소품담당자**	Assistant accessoiriste volume/assistante accessoiriste volume
84	**사출 보조**	Assistant moulage/assistante moulage
85	**스톱모션 정비사**	Mécanicien volume/mécanicienne volume

- **디지털 영상효과 분야**(Filière effets visuels numériques)

86	**디지털 영상효과 감독**	Directeur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directrice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
87	**디지털 영상효과 감수자**	Superviseur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superviseuse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
88	**디지털 영상효과 그래픽담당자**	Infographiste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infographiste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
89	**디지털 영상효과 그래피스트 어시스턴트**	Assistant infographiste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assistante infographiste des effets visuels numériques

- **후반작업 분야**(Filière postproduction)

90	**후반작업 기술감독**	Directeur technique de postproduction/directrice technique de postproduction
91	**편집담당자**	Chef monteur/chef monteuse
92	**디지털 감수자**	Chef étalonneur numérique/chef étalonneuse numérique
93	**후반작업 기술담당자**	Responsable technique de postproduction/responsable technique de postproduction
94	**음향효과전문가**	Bruiteur/bruiteuse
95	**편집담당자**	Monteur/monteuse
96	**디지털 감수 보조**	Etalonneur numérique/étalonneuse numérique
97	**편집 보조**	Assistant monteur/assistante monteuse
98	**디지털 감수**	Assistant étalonneur numérique/assistante étalonneuse numérique

- **데이터 전송, 개발 및 유지보수**(Filière exploitation, maintenance et transfert de données)

99	**개발 담당자**	Responsable d'exploitation/responsable d'exploitation
100	**시스템 및 네크워크 관리자**	Administrateur système et réseau/administratrice système et réseau
101	**데이터 전송 관리자**	Superviseur transfert de données/superviseuse transfert de données
102	**회계 담당 및 감수자**	Superviseur de calcul/superviseuse de calcul
103	**네트워크 시스템 전문가**	Technicien système et réseau/technicienne système et réseau
104	**스크립트 그래픽아티스트**	Infographiste scripteur/infographiste scripteuse
105	**유지보수 전문가**	Technicien de maintenance/technicienne de maintenance
106	**데이터 전송 기사**	Opérateur transferts de données/opératrice transferts de données
107	**회계 담당자**	Gestionnaire de calculs/gestionnaire de calculs
108	**데이터 전송 보조 기사**	Assistant opérateur transferts de données/assistante opératrice transferts de données

- **연출 분야**(Filière production)

109	**프로듀서**	Directeur de production/directrice de production
110	**기술감독**	Directeur technique de production/directrice technique de production
111	**감수자**	Superviseur/superviseuse
112	**제작 관리자**	Administrateur de production/administratrice de production
113	**제작 담당자**	Chargé de production/chargée de production
114	**제작 회계 담당자**	Comptable de production/comptable de production
115	**제작 코디네이터**	Coordinateur de production/coordinatrice de production
116	**보조 제작자**	Assistant de production/assistante de production

부록 4-1: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12136**호 공포일** 2013.12.30 **시행일** 2014.03.31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2.30.]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

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12.30. >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089호, 2011.11.17.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36호, 2013.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80호 공포일 2014.03.28 **시행일** 2014.03.31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삭제 <2014.3.28.>
4. 삭제 <2014.3.28.>
5. 삭제 <2014.3.28.>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8.]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범위,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8.]

제3조의3(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3.28.]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부칙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80호, 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3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부록 4-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공포일 2014.03.31 **시행일** 2014.03.31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2-3704-9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별표] <개정 2014.3.3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

	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만화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비고

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및 예술품 판매대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부록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4.3.31.] [법률 제12134호, 2013.12.30.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 2013.7.16.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5. >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

제4조 삭제 <2014.1.28. > [시행일 : 2014.7.29] 제4조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25. >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4.1.28. > [시행일 : 2014.7.29] 제8조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

[제목개정 2011.5.25.]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삭제 <2013.12.30. >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 2014.1.28.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시행일 : 2014.7.29] 제18조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14.1.28. >

[시행일 : 2014.7.29] 제19조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2008.2.29.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2011.5.2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1.5.25.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1.5.25.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 <개정 2011.5.25. >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

③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

제35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시행일 : 2014.7.29] 제36조

제37조(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6장 보칙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0.3.17. , 2012.2.17.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부칙 <법률 제8345호, 2007.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 및 제2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모금대상시설 운영자 및 그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 모금한 금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대관 받은 자로부터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모금액 및 그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액 및 관련 자료를 납부·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제3조(문화지구 안 시설의 설치 또는 영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과 문화지구로 지정할 당시 문화지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운영 중인 영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663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예술의 전당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은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예술의 전당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예술의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6조(한국문학번역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은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46호, 2008.1.1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

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08호, 2010.3.17.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725호, 2011.5.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313호, 2012.2.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12134호, 2013.12.30. > (문화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